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건의과제

2017. 4.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20년의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2할 자치'에 머물러 있으며,

1% 기득권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99%의 국민이 소외되었고,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으며

국민의 삶과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99%의 국민 중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함께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가 수년간 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했던 정책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제안배경

□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 지나친 중앙집권이 최근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
 -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는 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해서는 정부 형태 개편과 함께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필요
 - 중앙부처에 집중된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시민의식에 기반한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저해
-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사회적 권한은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및 불평등 심화
 -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45%)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
 - ※ '13년 기준 싱가포르(42%), 일본(41%), 호주(31%)
 -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 부채로 인한 내수 위축 등 서민경제 위협
- 국민들은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위협에 노출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이한 대처, 메르스 확산 부실대응, 경주 지진 느장 대응 등으로 국가 재난·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 팽배
 - 송과 세모녀 사건, 월세 미납을 비관한 관악구 일용직 노동자 자살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지속발생으로 사회안전망 부실 논란

□ 하지만, 우리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습니다.

- 평화적인 도심집회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은 새로운 정치와 행정혁신 욕구 표출
- 서울시는 3불 타파, 99대 1의 사회 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우수한 성공모델 창출로 국내외 도시에서 벤치마킹 중

⇒ **중앙정부-서울시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 추진이 절실함**

목 차

I . 내용 요약	1
II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21
① 자치조직권 확대	23
② 자치재원 확대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25
③ 불합리한 재정제도(국고보조율) 개선	30
④ 자치입법권 강화	33
⑤ 중앙-지방의 정책결정 협의체 구성	36
⑥ 중앙정부 지도·감독, 통제권한 조정	38
⑦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41
⑧ 분권형 헌법 개정	45
⑨ 대도시권 단위 분권형 관리정책 도입	50
⑩ 용도지역 제도운영의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52
III . 경제민주화 (Weconomics : 모두를 위한 경제)	55
①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57
②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64
③ 대규모점포 규제의 실효성 강화	71
④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75
⑤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77
⑥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79

IV.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83

- ① 생활임금제 전국 확산 85
- ② 근로자이사제 전국적 확대 시행 90
- ③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확충 92
-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96
- ⑤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98

V. 국민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101

- ①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국비지원 제도 개선 103
- ②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규정 신설 107
- ③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법 제정 110

VI.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보편적 복지 실현 113

- ① 청년활동지원사업 등 청년정책 전국 확대 115
-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국가책임보육 117
- ③ 보편적 간병서비스 제공(보호자 없는 환자인심병원) 119
- ④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122
- 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읍면동 적용 125
- ⑥ 50+세대 지원 강화 128
- ⑦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130
- ⑧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134
- ⑨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사무 역할 재정립 137
- ⑩ 장애인 자립·돌봄 보장체계 도입 139

VII.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 141

- ① 원전하나줄이기 전국화 143
- ② 수도권 외 지역 대기오염 영향권역 지정 145
-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148

VIII.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 151

- ① 공공임대주택을 OECD 이상(재고비율 8%)으로 확충 153
- ② 지방정부 협업 강화를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156
- ③ 지방공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실현체계 구축 159

IX. 도시재생으로 도심활력 제고 163

- 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마련 165
- ② 도시재생 민간 참여 지원 정책 강화 167
- ③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민지원체계 구축 170
- ④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제도 마련 173
- ⑤ 도시재생에서 지방공사의 적극적 역할 강화 175
- 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177
- ⑦ 중소 유희토지 활용을 통한 지역 중심지 육성 179
- ⑧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181

X. 지역개발 현안과제

183

- ① 국가개혁공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프로젝트 185
- ② 온전한 용산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도입 187
- ③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88
- ④ 잠실운동장 일대 MICE 복합공간 조성 191
- 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193
- ⑥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194
- ⑦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197
- ⑧ 도시철도 경전철 및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200
- 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203

XI. 정책 협조 및 정부 건의

205

- ①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207
- ②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214
- ③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기 및 경영평가 개선 216
- ④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정부 추진 220
- 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224
- ⑥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226
- ⑦ 대도시권 간선도로 개선 지원 확대 229
- ⑧ 서울대공원 동물원 국립화 232
- ⑨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불량공중선 정비제도 개선 234

내 용 요 약

10대 과제

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 지방정부의 조직·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의 세원 지방 이관, 국가사무 지방 이양시 재정지원 의무화
-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

② 경제민주화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광역지자체 조사권·고발 요청권 부여
-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을 법상 보호대상으로 포함
-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 증액 한도 설정권 부여

③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 생활임금제 전국적 확산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
-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에 근로자 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 마련

④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국비지원기준 마련,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 지원책 수립
-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 보조근거 마련 및 국비지원

5 보편적 복지 실현

- 해외·지자체 청년정책을 바탕으로 한국형 청년기본정책(청년수당 포함) 수립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까지 환자안심병원 확대 의무화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범위·금액 등에 대한 전국 통일 기준 마련 및 국비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읍면동 적용, 동별 필요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

6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 광화문광장을 광장민주주의 상징공간, 보행중심 공간으로 재구조화

7 온전한 용산국가공원 조성

- 서울시를 철차이행 협조대상에서 '주체적 참여대상'으로 격상
- 중앙정부-서울시-시민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8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

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
-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추진절차 완화

10 공공임대주택을 OECD 이상(재고비율 8%)으로 확충

-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확충
-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시 기금·보조금 지원 현실화
- 규제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임대주택 공급

I.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예산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2할 자치’ 현실을 극복하고, 지방정부가 고유의 철학과 현장을 바탕으로 지역르네상스를 열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조직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조직에 대한 정부와 지방의회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실·본부·국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조직권한을 이중적으로 통제 - 자치기구·정원 자율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행정자치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재원 확대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지방세 비중 및 중앙정부 편향적 세원구조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예측성 심화되고 법률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통제·관여 지속 -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원을 확대하고 자치재정권에 반하는 부당한 통제 폐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재정제도(국고보조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 교부로 타 지자체와 재정여건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입법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여 자율적 조례 제정 제약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규칙 제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행정자치부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의 정책결정 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대정부 정책 과제의 수용률이 41.6%에 불과한 실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적·정례적으로 업무·역할·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운영 	행정자치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도·감독, 통제권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청년수당 등) 협의·조정,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지자체 사업을 통제 - 위임·자치사무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권한 폐지, 중앙정부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반환하는 제재 조항 등 삭제 	행정자치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와 별개로 국가경찰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들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곤란 -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민생치안 범죄를 시·군·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자치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권형 헌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으나, 법률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지방자치의 제도화 노력은 중앙집권적 헌법원리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됨 -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전문에 명시,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조문 신설 등 	법제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 단위 분권형 관리정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 차원 경쟁력 강화, 이슈 공동대응을 위한 관리정책과 이를 실행할 거버넌스 행정기구 부재 - 전국적 균형발전 실현, 대도시권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권형 대도시권계획 수립 및 광역행정기구 설치 	국무조정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제도운영의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따른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 용도지역 종류를 법령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용도지역 체계 운영 제약 - 공업지역의 지자체별 자율적 운용, 신규 용도지역을 조례로 신설 필요 	국토교통부

II . 경제민주화(Weconomics : 모두를 위한 경제)

재벌 등 1% 기득권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불평등 사회를 타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체제로 전환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행정공백 발생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 경쟁입찰제 도입, 광역자치단체에 조사·조정·고발요청권 위임 등 	공정거래위원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임차인이 법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기구 부재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현행 5년→10년),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을 지자체에 부여 등 규정 	법무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규제의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상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현실적 규제수단 미흡으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권영향분석 제도화·보호방안 등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업종제도의 민간합의 방식, 권고적 효력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 이후의 업종 보호 방안 부재 -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의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 법률에 명시 등 	중소기업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에 공헌한 소상공인 등 원주민이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자본에 의해 쫓겨나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현상 발생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구역 내 상가임대차법 적용 특례 등 마련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대 99', 'N포 세대' 등으로 대표되는 불공정과 불평등한 현 상황을 타개할 종합적·체계적인 범정부적 방향성 부재 -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역할 명시, 실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권한·책무 등 규정 	국무총리실

Ⅲ.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저임금 근로자 비율, 1인당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노동환경을 노동문화 확산과 전면적 권리보장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으로 전환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제 전국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 곤란 - 생활임금 전국적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이사제 전국적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사갈등이며, 이를 타계할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필요 -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5개국 중 두번째로 길며, 이는 삶의 질 하락, 일·가정 양립 저해, 근무의욕 감소 등 생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모델 공공+민간 확산 	고용노동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높은 전환 기준 등으로 인해 정책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에 한계 존재 -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관리대상 중 무기계약직 제외, 국고보조사업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분담 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 부재로 노동권 침해 해소에 한계 - 근로 감독기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이외에 시·도로 확대 	고용노동부

Ⅳ. 국민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로 시민 위험이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노후기반시설 중장기 투자를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 필요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국비지원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비 투자가 부족하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미흡 - 지속적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법령상 국비 지원기준 및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 제도 마련 	국민안전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 함몰사고가 빈발하여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여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독자적 재원 확보 곤란 -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 보조 근거 마련·지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사후적 보수·보강 중심으로,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급증 예상 -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조사·평가 및 실태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등 근거법 마련 	국토교통부

V.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보편적 복지 실현

낮은 사회·복지지출 구조, 왜곡된 복지 구조로 인해 건강, 주거,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동지원사업 등 청년정책 전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높은 실업률, 경제적 어려움 심화로 인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필요 - 해외 및 지자체 청년정책을 바탕으로 한국형 청년기본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정비 	고용노동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국가책임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전국 7.0%, 서울 16.8%)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66%('13), 스웨덴 83%('13), 일본 41%('14)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고지원 확대 및 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보건복지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건강서비스 제공(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13년 전국 최초로 '환자안심병원'을 도입하여 환자 간병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부문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 '환자안심병원'을 병원급 이상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 의무화 필요 	보건복지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별로 재정여력에 따라 지원범위·지원금액에 편차가 있어 시·도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전국적 공통기준을 마련, 국비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등 전 학년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 	교육부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읍면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대상자 및 소요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인력 충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요자 신청 기반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지속 노출 - 전국 동주민센터별 실질적 복지인력 증원 및 예산 국비 지원 	보건복지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대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환경 변화와 기존 노인과는 차별화된 특성과 욕구를 보유한 50+ 세대 등장 - 50+ 세대의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정책 시행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불평등 심화, 경제적 불확실성 확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고용·경제적 불안정이 전 세대로 확대 - 생애주기별(아동·청년·실업·장애·노인 등) 소득·수당 형태의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마련 및 지원 실시 	보건복지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확대 및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였으나, 인하폭이 2~3% 수준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미흡 - 전국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사립대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 	교육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사무 역할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이나, 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재정 부담 지자체에 전가 - 복지사무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및 '05년 지방이양 복지사업 67개 중앙 환원 	보건복지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립·돌봄 보장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로 다른 수요를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여, 장애인 복지 예산의 총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불만 누적 - 국가 차원의 종합적 장애인 자립·돌봄 보장 체계 도입 	보건복지부

Ⅵ.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

원자력·화력발전에 의존하는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2차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연번	정책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하나줄이기」 전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정책을 추진중이나, 실질적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한 효율적 정책수단 미흡 - 정부-지자체 간 에너지정책협의체 구성 및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매뉴얼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외 지역 대기오염 영향권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제한되어있어,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규정 없는 상황 - 충청남도 등의 발전소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 총량관리, 석탄화력발전 배출 감축 규제 기준 마련 	환경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설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조치를 이행하는 규정만 있고,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의 저공해화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의무 이행하도록 강제 	환경부

Ⅶ.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

심화되는 서민·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예산적 지원 강화

연번	건의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을 OECD이상(재고비율 8%)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나,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공급량의 확대 곤란 -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위한 용적률 완화, 매입 임대주택 정부지원 현실화 등 필요 	국토교통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협업 강화를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필요 - 지역맞춤형 전월세 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 지역밀착형 지원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기금·보조금 지원 등 추진 	국토교통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실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각종 지방세 부담 등에 대해 국가공기업인 LH 보다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 기존주택 매입 및 현물출자시 재산세 부담 차별, 경영평가 지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대상 등 관련 법령·규정 개선 	국토교통부

Ⅷ. 도시재생으로 도심활력 제고

성장위주 개발·저성장시대 진입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

연번	건의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비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로 인한 매몰비용이 막대하여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 발생 -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 지원규모·범위 확대,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국비 지원 등 추진 	국토교통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민간 참여 지원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공예산으로 추진됨 - 지역특성과 재생사업 유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규제완화 필요 	국토교통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민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민 공감대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 활성화구역 지정전 주민 대상으로 사전 공동체역량 강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한 규정 및 국가적 지원체계 필요 	국토교통부

연번	건의과제	소관부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확장에 대한 지역주민과 갈등, 대학가 고유 문화 실종 등 각종 사회 문제 발생 - 대학이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에 참여하도록 교육부 평가제도 개선 및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 	교육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에서 지방공사의 적극적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재생사업의 실행주체로 지방공사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하나, 현행 제도적 한계로 역할 미비 - 지역 재생회사 육성을 위한 중개기관 도입, 지방공기업에 토지신탁권한 부여,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공사 위탁개발 참여 허용 등 추진 	국토교통부 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법령 상 공공기여의 제공범위가 해당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 심화 야기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타 자치구에도 공공기여 활용 가능토록 국토계획법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유휴토지 활용을 통한 지역 중심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m²}이상 유휴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개발(투자) 적용 대상지가 미미하며, 1만^{m²}미만 유휴토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발기회 상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한 면적 확대 (1만^{m²}이상→5천^{m²}이상) 	국토교통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내 기존 공장의 업종 첨단화·집적화가 필요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인해 서울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 - 첨단지식산업 전문인력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필요 	국무조정실

IX. 지역개발 현안과제

도심 내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협조 필요

연번	건의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개혁공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프로젝트 - '09.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보행환경, 역사성 차원에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시민 중심의 광장민주주의 공간으로 의미 확대 - 광화문광장을 '광장민주주의' 상징 공간, 시민 중심의 보행중심 공간으로 전면 재구조화 	청와대 경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전한 용산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도입 - '기존 특별법' 과 '국토부 단독추진' 체계에서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근본적 개선 불가능 - 용산공원 조성에 서울시 및 시민참여 법제화, 공원조성 방향과 추진일정 등 전면 수정 	국무조정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서울, 경기 동남권의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의 허브 조성을 위해 사업의 적기 추진 필요 - 국가 철도사업(GTX-A·C) 계획 확정 및 국비 분담분 확보, 행정절차 이행 협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운동장 일대 MICE 복합공간 조성 - 서울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잠실운동장 일대를 MICE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조속한 시행 필요 - 민자적격성조사(PIMAC) '17년 중 조기완료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에 업무시설을 포함하도록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연번	건의과제	소관부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수도권 동북부 8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하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사업 추진중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경찰청 주관 추진 필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마련을 위한 양재 R&CD 혁신지구 조성 중 - 양재 R&CD 혁신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우수 대학·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토지 임대기간 확대, 대·중소 R&D 기업 지원시설 건립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 홍릉 내 농촌경제연구원 지방 이전('15년도) 후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서울시에서 서울바이오허브(R&D 앵커)를 조성 중 - 기관별 기업 집적시설 개발계획 지원, 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형 펀드 조성·운영, 정부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 지원 등 필요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경전철 및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 서울시와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경전철·광역철도 건설이 필요하나, 막대한 소요예산에 비해 국비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경전철 관련 국비분담비율 상향 조정(40%→60%) 및 광역철도 사업 국가 주도 건설·운영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 등으로 교통문제를 발생시키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중 - '18년 착공을 위해 '중랑천 홍수방지·생태복원 계획'(국토부-서울시-경기도) 조속한 수립 및 협력체계 유지 필요 	국토교통부

X. 정책 협조 및 정부 건의

국가적 정책은 아니나, 서울시의 권한과 재정만으로 해결·추진할 수 없는 시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 필요

연번	건의 과제	소관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임수송 손실 등 재정악화로 지하철 운영 지자체와 운영사의 노후시설 안전투자가 축소·지연되어, 추후 대형재난 발생 우려 -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 국고보조 및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상호 동질성 회복과 통합을 위해서는 도시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규정·제약 - 지방정부도 자율적·독자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통일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기 및 경영평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강행에 따른 근로자 집단 반발로 사회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자치권 침해 - 위헌 소지가 있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정부에 이관 	행정자치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정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에 걸맞는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필요함 - 전국가·전국민적 참여를 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중앙정부 주도 조속 추진 	국가보훈처

연번	건의과제	소관부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민간에서 건립하고, 운영비는 국가와 서울시가 50%씩 부담한다는 입장임 - 임시정부의 위상을 고려, 기념관 건립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적극 추진 	국가보훈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세계화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중요성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 간선도로 개선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개선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전무한 상황 -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있는 도로 	국토교통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공원 동물원 국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규모 및 동물 보유 현황 등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종보전·연구 기능 수행 한계 -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국가운영을 통한 종보전, 연구, 교육기능 등 공공성, 전문성 강화 	환경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불량공중선 정비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의 소극적인 정비와 사후관리 부재로 도심내 공중선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 - 공중선 시정명령권한 지방자치단체 부여, 공중선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미래창조과학부 국토해양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1 자치조직권 확대

(행정자치부)

□ 현황 및 실태

- 천만 대도시 서울의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부시장 3명으로는 통솔의 범위가 과다하여 행정수요, 주민민원, 도시외교 등에 대응이 어려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단체장의 수, 3급 이상 기구 수·직급 등 세부 규정
- 또한, 헌법상 보장된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령상 규정된 조직규모로는 사실상 정책수행이 곤란한 상황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15.8)으로 대부업·다단계, 자동차관리 등 민생 관련 업무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침해사업 근절을 위한 전담국을 만들 수 없음(행자부 승인사항)
- 이는 정부의 기준인건비와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실·국·본부 수를 대통령령에서 제한하여 지방정부를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임
 - ※ 일 본 :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토록 자치조직권 부여(’03년)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방대한 서울시 업무와 증가되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각 분야별 부시장이 책임지고 실현하는 부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꼭 필요
 - 중앙정부의 경우 18명의 장관이 맡은 분야에 대해 책임행정을 하고 있음
 - ※ 해외도시 부시장 수 : 북경 9명, 런던 9명, 뉴욕 4명, 동경 4명

작성 자 | 조직담당관 : 김정호 ☎2133-6720 | 조직관리팀장 : 안현민 ☎6733 | 담당 : 오미영 ☎6734

○ 시민의 건강·안전상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필요

-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재난안전 전담조직 신설하는데 10개월 이상 소요

※ 국민안전처 출범('14.11.)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출범('15. 8.)

○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준 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필요

건의사항

○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도모를 위해 지방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u>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u>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u>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인건비 기준을 따라야 한다.</u>

〈 관련 입법 동향 〉

▷ 부시장 정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서 조직자율권을 확대 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개정안(노철래의원 발의, '15.9.10.) 및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개정안(유대운의원 발의, '12.10.24.)은 자동폐기 됨

2 자치재원 확대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현황 및 실태

-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 대한 본원적 고려 없는 **세원구조 비대칭**
 - 중앙정부의 세출 규모는 전체의 40%에 불과하나, 세수는 중앙:지방 80:20(79:21)로 불합리한 자원 배분
 - ※ 지방세 비중('14) : 한국 21%, 일본 43%, 미국 47%, 캐나다 51%, 독일 48%
 - 낮은 지방세 비중 및 중앙정부 편향적 세원구조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예측성 심화
 - ※ 민선 20년간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 69.6%('92) → 59.4%('00) → 46.6%('16)
- **재정지원 없는 국가사무 지방 이양**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심화
 - '00년부터 '12년까지 지방 이양 사무 1,967건 중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소요비용 2조 4550억(추정)에 달함
 - ※ 국비매칭 시도 복지예산 규모 변동 추이 : 6조 9,870억('08년) → 14조 2,560억('15년) ⇒ 7년간 7조 2,690억원(204%) 증가
- **법률상 과도한 통제 및 법률상 근거 없는 지자체 자치재정권 통제·관여**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에서 법률상 근거 없는 지자체 재정에 대한 통제
 - 재정주의단체 지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시 투자심사 대상을 행자부 지침에 임의로 과도하게 확대 규정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주민접점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여력 확대**가 절실
 - 일선 주민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치역량의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 **지방에 사무이양시 재정보전을 병행**하여 자치재정의 책임성 및 반응성 제고
 - 전국적·일률적 시행 국가적 복지업무에 대한 국가차원의 자원대책 마련 필요
-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결권 행사 존중**
 - 행자부 자의적 법 해석에 따른 지자체 자치재정권 통제 개선 필요

작성 자 재정관리담당관 : 박영현 ☎2133-6860 재정총괄팀장 : 이진구 ☎6862 담당 : 전양례 ☎6875

□ 건의사항

① 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원 확대

-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세 이양 증대를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 취득세 인하에 따라 '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세 5%)후, '13년 취득세 영구 인하되었음에도,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약속(11→16%)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 인상시 시 세입증가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세수 증가 예상액	
	전 국	서울시
16%로 인상 (5%p ↑)	34,570	4,784
20%로 인상 (9%p ↑)	62,227	8,612

- 이와 관련,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의 세원을 지방 이관하여 자주재원 확보
 - 음식업, 부동산중개업 등 지방행정 서비스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부가가치세 지방 이관
 -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와 지자체 인·허가 시설의 개별소비세 지방 이관
 - ▶ 부가가치세 지방세 전환시 현재 79:21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55:45로 조정 예상
 - ※ 국세-지방세 세원·지출 현황 및 세목 전환시 변화 전망 : [첨부]

② 자치재정권에 반하는 부당한 통제 금지

-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임의적 지방재정 통제권한 폐지
 -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 폐지
 - ▶ 사회보장기본법 상 규정없이 중앙정부와의 협의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지방교부세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 지방보조금사업, 지방재정공시 등 지자체 재정운용에 대한 과도한 침해 조항 삭제
 - 재정주의단체 지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 행자부 규정 삭제
-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시 재정적 지원 의무화
 - 사무이양 확정 전, 사무에 소요되는 인력·비용 등 사전계상을 반영한 「사무이양 행·재정적 지원계획」 의무화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행정체계 가편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주요내용

-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상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상향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행·재정 지원 계획 명시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법률적 근거없는 교부세 감액 근거 삭제

○ 신구조문대비표

① 지방소비세율 상향 관련

- 「지방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략)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p>	<p>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략)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의 20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p>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9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p>	<p>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0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20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p>

② 권한-재원 이양 의무화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p> <p>① ,② (생략)</p> <p>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p>	<p>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p> <p>① ,② (생략)</p> <p>③ <u>국가는 사무의 이양결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단위사무별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u></p>

③ 자의적 교부세 감액근거 삭제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① 1~8(생략)</p> <p>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산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p>	<p>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① 1~8(생략)</p> <p><u>9. 삭 제</u></p>

첨 부

국세-지방세 세원·지출 및 세목 전환시 변화 전망

□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및 중앙-지방 지출 비교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세 입	국세	1,777,180 (78.3)	1,923,810 (78.6)	2,030,150 (79.0)	2,019,070 (79.0)	2,055,200 (78.8)	2,178,850 (78.8)
	지방세	500,800 (21.7)	523,000 (21.4)	539,380 (21.0)	537,790 (21.0)	581,840 (21.2)	594,520 (21.2)
세 출	중앙정부	1,362,660 (43.7)	1,373,860 (42.8)	1,460,920 (42.8)	1,525,710 (42.6)	1,579,910 (42.3)	1,669,020 (42.5)
	지방정부	1,756,790 (56.3)	1,838,660 (57.2)	1,949,860 (57.2)	2,059,300 (57.4)	2,159,110 (57.7)	2,258,090 (57.5)
	지자체	1,335,580 (42.8)	1,364,800 (42.5)	1,440,070 (42.2)	1,509,670 (42.1)	1,600,230 (42.8)	1,694,590 (43.1)
	지방교육	421,210 (13.5)	473,860 (14.7)	509,790 (15.0)	549,630 (15.3)	558,880 (14.9)	563,500 (14.4)

※ 2015년 기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국가 110조, 지방 20조)을 제외한 국세-지방세 수입만을 계상함

□ 세목 전환에 따른 국세·지방세 비중 변화 전망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세		1,923,810	2,030,150	2,019,070	2,055,200	2,178,850
지방세		523,000	539,380	537,790	581,840	594,520
이양 대상 (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국세중비율)	546,390 (28.4)	585,980 (28.8)	589,080 (29.2)	642,010 (31.2)	608,530 (27.9)
	양도소득세 (국세중비율)	73,894 (3.8)	74,552 (3.7)	66,571 (3.3)	80,474 (3.9)	118,561 (5.4)
	개별소비세 (국세중비율)	3,424 (0.2)	3,393 (0.2)	3,406 (0.2)	3,488 (0.2)	3,460 (0.2)
지방세 전환시 전망	국세	1,300,102	1,366,225	1,360,013	1,329,228	1,448,299
	지방세	1,146,708	1,203,305	1,196,847	1,307,812	1,325,071
	국세:지방세	53:47	53:47	53:47	50:50	52:48

※ 국세 중 개별소비세는 주요품목 13개 항목 중 지자체 인·허가업종인 6개 항목(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경정장, 과세유희장소)이 포함된 금액임

3 불합리한 재정제도(국고보조율) 개선

(기획재정부)

□ 현황 및 실태

-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 복지정책 등으로 **의무적 시비지출 부담 증가**
 - 2017년 매칭시비는 '13년 대비 1조 3,754억원(61.6%) 증가
 - ▶ 서울시 시비 매칭예산 : 2조 2,297억원('13) → 3조 6,051억원('17)
- **보통교부세 교부로 시·도간 재정여건 차이가 없음에도 서울시만 차등보조율 적용**
 - 복지사업 차등보조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대상에서 서울시 보조제외

구분(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초기준)
전체	추가 부담액	9,303	12,121	13,690	12,651	14,354	12,304
	증가액	-	2,818	1,569	1,039	1,703	△2,050
사회 복지 분야	추가 부담액	8,767	10,772	13,067	12,982	13,450	11,705
	증가액	-	2,005	2,295	△85	468	△1,745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에 대한 이중차별 적용 폐지**
 - 지방교부세 교부로 타 지자체와의 재정여건 차이는 없고, 급증하는 중앙 정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예산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여건 지속 악화
- **영유아보육, 기초생활수급 등 전국적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서울시 자체적 안전분야 투자재원 확보 필요**
 - 전국적·일률적 복지사업에 대한 차별적 보조율 적용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적기 투자 재원 확보가 저해됨

□ 건의사항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타 시·도 대비 서울시에 대한 **차별적 국고보조율 폐지**
 - 전국적 복지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

작성 자 재정관리담당관 : 박영현 ☎2133-6860 재정총괄팀장 : 이진구 ☎6862 담당 : 전양태 ☎6875

② 도시 기반시설 안전확보 투자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 신설

－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하철 노후시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서울시 차등보조율 현황 및 10대 개선 요청항목]

연번	사업명	국비 보조율		요청사항	
		서울시	타 시·도		
1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35	65	서울시 대상 국고보조율 상향 (타 시·도 동일)	
2	보육돌봄 및 어린이집 지원	20	50		
3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50	80		
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주거 등)	50	80		
5	도시철도 건설	40	60		
6	하수관로 정비사업	-	30~50		
7	지하철 전기설비 등 노후시설 개선	-	-	서울시 국고보조 근거 신설	40
8	지진발생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개선	-	-		40~60
9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	-		50
10	하수처리장 확충	-	-		30/50 (일반/총인)

□ 관련 법령 개정(안)

① 하수처리시설 사업 관련 보조대상에 특별시 추가

○ 법령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특별시 항목 추가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현 행		개 정 (안)	
사 업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31. 하수처리장 확충	광역시 : 10 광역시(총인처리시설) : 50 시지역(읍 이상) : 50 군지역(면 이하) : 70	31. 하수처리장 확충	특·광역시: 30 특·광역시(총인처리시설): 50 시지역(읍 이상) : 50 군지역(면 이하) : 70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특·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② 영유아보육 등 복지사업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보조율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

○ 법령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조율 조정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현 행		개 정 (안)	
사 업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 40 지방 : 60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 <u>60</u> 지방 : 60
35.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서울 : 35 지방 : 65	35.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서울 : <u>65</u> 지방 : 65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 20 지방 : 5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 <u>50</u> 지방 : 50
8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 50 지방 : 80	8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 <u>80</u> 지방 : 80
8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 50 지방 : 80	8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 <u>80</u> 지방 : 80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 50 지방 : 80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 <u>80</u> 지방 : 80

③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추가

○ 법령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조율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현 행		개 정 안	
사 업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1.~121.	<생략>	1.~121. 12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신설) 123.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신설)	<생략> 도시철도 : 40 도로시설물 : 60 공공건축물 : 60 하수처리시설 : 50 40

4 자치입법권 강화

(행정자치부)

□ 현황 및 실태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단서는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여 **자율적 조례 제정을 제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청년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 어려움
 - 법률의 명시적·구체적 위임이 없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생

헌 법	지방자치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u>법령의 범위 안에서</u>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u>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u>

-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해석·적용하고 있으나, 판례는 법령과 달리 일반적 적용이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함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지방자치 시행 20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역량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폭넓은 자치입법권 강화 필요
- 자치입법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는 판례 태도를 입법화할 필요 있음
 - 대법원 판결로 국가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①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 추가조례, ②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는 초과조례가 가능함을 판시

작성 자 법무담당관 : 서상범 ☎2133-6680 법제심사팀장 : 박희원 ☎6690 담당 : 이재영 ☎6691

《 참조 판례 》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 되는 때”에는 [이른바 ‘National Minimum’],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나{추가조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초과조례}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96추 244, 2000추29, 2006추38 판결 등)

- 미국, 일본에서도 지방에 포괄적 자치입법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여 분권과 자치의 존중을 헌법원리로 규정

Amendment X (수정헌법 제10조)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

- 우리와 법체계 유사한 일본은 「지방자치법」으로 포괄적 자치입법권을 보장

[일본 헌법]

제94조 지방 공공 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지니며,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건의사항

-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및 단서 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제정권 범위 확대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 명시적·구체적 법률의 위임에 한정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u>법령의 범위 안에서</u>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u>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u></p>	<p>제22조(조례) ----- <u>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u>----- ----- . <u><단서 삭제></u></p>

— < 관련 입법 동향 > —

- ▶ 같은 취지의 개정안 발의('16.8.기동민의원)되어 국회 안행위 계류중

5 중앙-지방의 정책결정 협의체 구성

(행정자치부)

현황 및 실태

- 지자체 관련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앙-지방 상호협력체계 미비
 -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지방재정과 지방세제와 관한 사항 등 지자체 관련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수평·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정부 부처의 지자체 의견수용 미흡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수용률 최근 3년간 약 11.7%로 미흡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 중앙-지방 상호협력체계를 법제화·제도화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 중앙-지방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중앙-지방 간 수평적·협력적 동반자 관계 설정 및 지방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건의사항

- ① 중앙-지방 정책결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마련
 - 중앙-지방 정책결정 협의체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근거법령 마련
- ② 중앙-지방 간 상시 정책결정 협의체 설치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적·정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중앙-지방 간 업무·역할·재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권한 부여

작성 자 대외협력담당관 : 윤희천 ☎2133-6650 남북교류협력팀장 : 심혁보 ☎6652 담당 : 석도은 ☎6661

□ 관련 법령 제정(안)

- 법령명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결정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취지 및 목적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지방의 협력체계를 제도화·법제화
 -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중앙-지방 정책결정 협의체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내용 규정
 - 협의체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각 지방협의체별 4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지방협의체 대표자 중 1명을 부의장으로 위촉
 - 협의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정책·사회복지정책·교육정책·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가정책 중 지방자치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심의
 - 협의체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과 지방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는 국무회의에 통보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관련 입법 동향 〉

- ▷ 같은 취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16.8. 김두관 의원)되어 안행위 법안소위에 회부 중
- ▷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이 발의('16.7. 곽대훈 의원)되어 안행위 법안소위에 회부 중

□ 현황 및 실태

- 지방자치단체 복리에 관한 사무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보장되어 있음**
 -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등)를 처리한다**
- 지방정부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통해 사실상 ‘승인권’으로 악용
 - 서울시 청년활동비 지원·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협의 요구, 서울시 안심의료비지원 사업 협의 지연,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불수용 사례
- 위임사무는 물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의 시정명령 및 직권 취소가 가능하여 자치권을 훼손하는 사전 통제장치로 기능
 - 위법성의 판단이 전적으로 주무부처에 있어 위법성 판단에 대한 이견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 단체장의 불복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69조)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지원관계’로 명시하고,
- 지방자치법 제168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설정하였으나
- 지원·협력관계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사후적 시정이나 협의·조정을 넘어서 사실상 사전적으로 강제하고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앙정부의 권한 조정 필요

□ 건의사항

①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권한 조정

- 자치사무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위임사무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도·감독관계'를 '협력·지원관계'로 재규정
-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의 시정명령, 직권취소 권한 폐지

※ 지방자치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p>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u>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u>적극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p> <p>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협력·지원)</p> <p>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주무장관은 시·도를, 시·도는 시·군 및 자치구를 적극 협력·지원하여야 한다.</p>
<p>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삭제></p>

② 복리사무의 협의·조정 권한 조정

- 실질적 승인으로 악용되고 있는 개별 법령 상 의무 협의 조항 삭제
 - ※ 사회보장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 중앙정부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반환하는 제재조항 삭제
 -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p>제20조(사회보장위원회)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p> <p>제26조(협의 및 조정)</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p>	<p>제20조(사회보장위원회)④ 삭제</p> <p>제26조(협의 및 조정)</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u></p> <p>③ 삭제</p>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p>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p> <p>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p>	<p>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p> <p>9. 삭제</p>

□ 현황 및 실태

-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전면 실시되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경찰업무는 현재까지 ‘국가경찰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 규정들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곤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하여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그 시행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표류 상태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06. 7. 1.부터 제주자치경찰 출범 시행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자치경찰제 도입은 **헌법상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시대적 과제**
- 특히,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3. 5. 28.) 제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지방분권법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④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 수행 가능**

- ▶ 지역 단위의 교통·생활안전·치안 및 일반범죄수사 등을 밀착 담당
- ▶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찰관련 제도 신속히 마련, 적시 시행가능
- ▶ 특별사법경찰의 민생범죄수사 제도 활용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시행 용이

□ 건의사항

-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민생치안 범죄를 시·군·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는 광역 치안 수요에 효과적 대처 곤란
 - 시·도지사가 일선 현장을 직접 관할함으로써 지역의 민생치안 행정수요에 탄력적·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예방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
 - ※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광역자치경찰제 채택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배분
 - 국가경찰은 국가치안, 정보, 수사, 외사 등을 중심으로 업무 수행
 - 자치경찰은 지역 단위의 교통·생활안전·치안 등 주민생활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범죄수사 등 담당
 - 국가경찰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생활안전 등 치안행정 분야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 검토
(단, 수사활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 추진을 병행)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 **취지 및 목적**
 - 자치행정의 집행력 제고 및 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
 - ▶ 치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 배분
 - ▶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공
 -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 강화
 - ▶ 국가 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발생하는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경찰법

①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

- 자치경찰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로 분류

②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 설치

- 관할구역의 민생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대를 둠
- 자치경찰본부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광역적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조정·응원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대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적 민생치안을 담당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배분

- 국가경찰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전국적인 교통의 단속 등
- 자치경찰 : 관할구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지역교통의 단속 등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 협조체계

-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력 운영 계획 및 상황을 상호 통보하도록 함

경찰공무원법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

-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은 자치치안정감, 자치치안감, 자치경무관,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함

②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승진·징계 등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기관으로 시·도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③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 및 계급정년

- 국가경찰공무원에 맞추어 규정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 간 인사교류

- 경찰청장과 시·도지사는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관련 입법 동향 〉

- ▷ 같은 취지의 경찰법('13. 7. 이철우 의원) 및 경찰공무원법('13. 7. 이철우 의원)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자동 폐기됨

□ 현황 및 실태

- **현행 지방자치 관련 헌법규정은 지방분권 실현에 미흡**
 -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법률에 위임 또는 유보**(제117조 제2항)
 - ▶ 지방자치단체의 존폐문제가 국회의 입법재량 하에 있음
 -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로 실질적 자치권 확충 차단**(제59조)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기존 개헌논의는 중앙권력 재편 위주로 ‘지방분권 원리의 헌정화’ 라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개헌의제는 도외시**
 - 그동안 제기된 개헌논의는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 등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권력 재편 논의에 집중**
 - 법률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지방자치의 제도화 노력은 중앙집권적 헌법 원리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필요
 - 승자독점의 다수결 민주주의가 야기하는 지역할거주의를 예방하고 지역갈등 해소에 기여
 -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구조 체제 구축
 - 창의성과 다양성에 바탕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시대적 요청 반영
 -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한국의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은 필수적 요소

□ 건의사항

-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헌법 개정
 - 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전문)
 - ② 입법권 배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 원칙 명시 조문 신설
 - 헌법에 국가사무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대상
 - ③ 자치조직권 규정 신설
 - 자치조직 조례주의
 - ④ 자치재정권 명시 조문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에 부합하는 자주재원 확보
 - ⑤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결합
 - 주민발의, 주민투표

붙임 : 헌법 개정안(조문) 1부.

헌법 개정안(조문)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 자율·지방분권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국가 천명]

제59조 국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법률주의]

제117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처리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과 권한행사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승인하고 보장한다. [지방분권국가 천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
[보충성 원칙 명시]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며, 지방의회의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선임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성은 조례로 정한다. [자치조직권 명시]
- ④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에 부합하는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치재정권 명시 및 지방과세권 확보]
- ⑤ 국가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 [지방재정권 보장]

제119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는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 결합]

※ 헌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지방분권 국가 천명	<p style="text-align: center;">전 문</p> <p>-----<u>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u>-----</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문</p> <p>-----<u>자율·지방분권과 조화를 바탕으로</u>-----</p> <p>-----</p> <p>-----.</p>
국세법률주의 명시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국회</p> <p>제59조 <u>조세</u>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국회</p> <p>제59조 <u>국세</u>-----</p> <p>-----.</p>
지방분권 국가 천명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지방자치</p> <p>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u>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u></p> <p>②지방자치단체의 <u>종류는 법률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p> <p>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u>자기 책임하에 처리한다.</u></p> <p>②지방자치단체의 <u>조직구성과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승인하고 보장한다.</u></p>
보충성 원칙 명시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p>	<p>③.<u>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u></p> <p>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u>두며, 지방의회의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선임방법은 법률로 정한다.</u></p>

<p>자치입법권 범위 확대</p>	<p><u>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u></p>	<p><u>②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u></p>
<p>자치조직권 명시</p>	<p><신 설></p>	<p><u>③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성은 조례로 정한다.</u></p>
<p>자치재정권 명시 및 지방과세권 확보</p>	<p><신 설></p>	<p><u>④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에 부합하는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u></p>
<p>지방재정권 보장</p>	<p><신 설></p>	<p><u>⑤ 국가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u></p> <p><u>제119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는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u></p>
<p>참여민주주의 결합</p>	<p><신 설></p>	<p><u>제119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는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u></p>

□ 현황 및 실태

- 해외에서는 대도시권을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하는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대도시권 정책 시행 중
 - 영국 8개 City Region, 프랑스 그랑파리, 일본 3개 대도시권, 중국 징진지 등
- 우리나라는 대도시권 차원 경쟁력 강화, 이슈 공동대응을 가능케하는 관리정책과 이를 실행할 거버넌스 행정기구 미흡
 - 광역도시계획은 선언적 참고도서 역할, 교통, 환경 등 광역조정가능 부채로 갈등 빈발
-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와 광역적 행정 효율화는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제도 하에서 그 한계가 명확
 - 그간 정부주도의 행복생활권 등 대도시권 정책은 실효성에 한계
 - 중앙정부 주도 계획으로 지방정부 참여 결여, 실행력 약화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전국적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대도시권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분권형 대도시권계획 필요
- 新정부의 국토·대도시권 정책 재검토 시, 새로운 대도시권 정책 도입
 - 기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권 정책의 한계를 극복, 새로운 대도시권 정책 도입 필요

□ 건의사항

-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광역 차원의 행정기구 설치
 - 광역교통, 토지이용, 산업·경제, 환경 등 부문별 광역이슈 통합 조정
 -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 대도시권 현안사업 정부협의 및 실행 모니터링
- 중앙정부 차원의 대도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대도시권 협력사업 발굴, 정부재원 연계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전국 대도시권 단위의 분권형 대도시권 관리제도로 전환

<대도시권 관리제도 개선방향>

구분	현행 광역도시계획	새로운 대도시권 관리정책
계획범위	• 행정구역 단위로 범위 설정	• 생활권, 경제권에 기반한 범위 설정
수립주체	•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중심	• 참여 지자체간 합의 중심
내용/기능	• 실질적 광역 조정기능 부재	• 시도/시군구 기본계획, 광역시설계획 조정
거버넌스	• 계획 수립 관리 기구 부재	• 협의체와 계획기구 설립, 계획운영 관리
정부지원	• 별도의 정부지원 내용 없음	• 행정권한 이양 등 정부지원 병행

10 용도지역 제도 운영의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국토교통부)

□ 현황 및 실태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제도 관련)

-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 등 지역에 공업지역 추가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관리방식의 경직성으로 인해 지자체 도시계획 적시운영에 한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요구
-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 관리방식 관련)

- 용도지역 종류가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만 한정돼 전국의 모든 도시가 똑같은 용도지역 체계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1천만 서울 vs. 5만 도시)
- 용도지역의 신설, 명칭변경 등 불가
-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도 대부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운용에 한계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재정과 함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

-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정책을 존중하되, **지자체의 공업지역 운용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
 - 도시내 산업단지 조성 등 수요에 적시 대응 여건 마련
- 국토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골격을 유지하되, 지자체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역도 운용할 수 있도록하여 **지자체별 새로운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건의사항

- 공업지역의 총량(상한)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다른 용도지역처럼 공업지역도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운용
 -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자체별 운용
- 용도지역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별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용도지역을 조례로 운용
 - (사례)시급한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한 고밀주거지역 신설
 - ▶ 현재 법령상 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은 500%
 - ▶ 서울시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불가피 용적률이 800%에 이르는 상업지역 제도로 운용
 - (사례)해당 용도지역의 변화된 역할과 비전에 부합하는 ‘준공업지역’의 명칭 변경 → 복합산업지역 등
 - ▶ ‘공업지역’ 명칭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감이 커 지속적인 민원 제기 상황

□ 관련법령 개정(안)

- 「수도권 정비 계획법」

현행	개정안
<p>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p> <p>① (생략)</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 등을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신 설〉</p>	<p>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p> <p>〈일부 삭제〉</p> <p>3. 제2호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기준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안
<p>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1. 주거지역</p> <p>가. 전용주거지역</p> <p>(1) 제1종전용주거지역</p> <p>(2) 제2종전용주거지역</p> <p>나. 일반주거지역</p> <p>(1) 제1종일반주거지역</p> <p>(2) 제2종일반주거지역</p> <p>(3) 제3종일반주거지역</p> <p>다. 준주거지역</p> <p>2.~4.(생략)</p> <p>〈신 설〉</p>	<p>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1.~4.(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경제민주화
**(Weconomics :
모두를 위한 경제)**

□ 현황 및 실태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건 **신고일부터 처분일까지 평균 327일 소요**(`13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고발권 독점**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인 인력·예산의 한계**로 인한 형식적 조사
 - ▶ 공정위 가맹거래과 7명이 3,933개 가맹본부, 20여만개 가맹점 관리·감독
 - `14년 법 개정으로 고발요청권이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으로 확대되었으나 조사권이 없어 **현재까지 총 13건 행사**되는 등 실효성 부족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사법기관의 인지 곤란
 - 본사의 계약해지 등 보복 불안감에 기인한 **가맹점주의 소극적 신고** 및 **가맹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 직권조사**로 불공정 행위 적발에의 한계 노출
 - ⇒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와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시장감시 필요**
 - ※ 가맹대리점주 대상의 실태조사 실시 기관은 서울시(총7회) 이외에는 전무
-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 공정위 업무 중 당사자 간 분쟁해결, 실태조사 등 **시민생활과 밀착한 행정 필요 업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이관**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 공정위 : 반독점 경쟁촉진(담합), 경제력집중억제(재벌 규제) 등 거시적 규제 집중
 - ▶ 지자체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등 현장행정 집중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및 정책 필요
 - 서울은 프랜차이즈, 타 지역은 제조하도급 등 **지역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상이**
 - ※ 3,933개 가맹본부 중 서울에 1,657개(42.1%)의 가맹본부 소재(`16년 정보공개서)

□ 건의사항

1]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및 고발 요청권 부여
 -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 및 고발요청권 광역자치단체에 위임
 - 의무고발요청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발요청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 필요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및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통한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강화 및 등록, 취소, 공개 등에 관한 업무 광역자치단체에 위임
 - 등록업무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형식적 심사로 인한 피해 발생 (ex. 불법 마사지 가맹본사 등록 등), 지자체 업무분산을 통한 실질적 심사로 정확한 가맹정보 제공

2] 식자재·인테리어 거래강제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 필수물품 요건 강화 및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및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 구매강요 금지
 -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에게 제공
-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시 경쟁입찰제도 도입
 -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사업자 점포에 대한 최초 인테리어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방식 도입

〈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15.6.) 〉

- 가맹본사 또는 본사지정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 시 3.3㎡당 평균 공사비용은 약 309만원,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가 약 174만원

〈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16.9.) 〉

- 원·부자재 등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의 시중구입가능 : 74.7%
- 필수구입물품을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월 평균 구매비용 감소액 : 1,104천원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취지 및 목적

– 공정위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한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광역자치단체에의 조사권, 고발요청권 등 업무 위임 등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1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1. ~ 12. (현행과 같음) <u>13. "필수물품"이란 원재료 또는 부재료·용역·설비 등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u> <u>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u> <u>나. 물품을 제조·생산함에 있어서 특허기술·노하우 등 고유한 제조 및 가공 기술을 필요로 할 것</u> <u>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구입이 불가능할 것</u>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신설〉 〈신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u>10의2. 필수물품 내역과 특정 거래상대방</u> <u>제12조의7(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금지)</u> <u>①가맹본부는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필수물품의 구매강요행위로 본다.</u>

현행	개정안
<p>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u>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u>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2조(조정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신설></p> <p>제23조(조정 등) ① ~ ⑥ (생략)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u>공정거래위원회</u>가 이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u></p> <p>2. <u>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단순 첨가, 소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u></p> <p>③ <u>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p> <p>④ <u>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필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p>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 설치) ----- ----- -----<u>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u>-----.</p> <p>제22조(조정 신청 등) ① ----- ----- -----<u>다만,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제32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u></p> <p>② <u>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가맹지역본부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u></p> <p>제23조(조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u>-----.</p>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단서 신설〉</p> <p>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신 설〉</p>	<p>제32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 ----- ----- 실태조사를 ----- -----.</p> <p>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 - 실태조사를 ----- ----- ----- ----- .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 ----- ----- -----.</p> <p>제32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p>	<p>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p>

□ 현황 및 실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태를 고려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임차인은 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빈번**
 -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의 22.3%가 환산보증금 4억을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15년 서울시 실태조사)
 - ▶ 상임법 및 시행령 상 환산보증금 4억 초과 시 임대료 증액한도(9%)가 적용되지 않아 상권 활성화 지역의 경우 상당한 임대료 인상으로 귀결
 - 상임법 상 임대료 증액 한도가 9%로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임대료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서울시에서는 상당한 금액 인상으로 이어짐
- 임대기간·영업환경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법조항에 의해 **소규모 영세상인이 장기적으로 영업하기 어려운 환경**
 - 서울시내 평균 임대차기간은 6.1년('15년 서울시 실태조사)이나 5년이 경과된 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장기적인 영업에 애로발생
 -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5년으로, 5년이 경과된 임대차계약은 보호받지 못함.
 -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내 독립임대매장 등이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
 - ▶ '대규모 점포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15.5, 상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일부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독립 임대매장도 제외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게 부담 증가 및 사회적 비용 발생**
 - 분쟁으로 인한 긴 소송기간과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영세상인의 부담 증가
 - 소액임차인의 경우 소송실익이 크지 않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 대다수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경제 실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필요**
 - 일률적인 기준(임대료 증액 한도 9%규정 등)으로는 각 지역별, 상권별 상이한 경제 실정을 반영할 수 없어 법과 현실의 괴리 존재
 -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법상 보호되는 임차상인 범위 확대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지역,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일조
- **임차인의 영업환경, 각 영업장소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의 사각지대 해소**
 - 임차상인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업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요구권을 임대차 계약 실행에 맞게 연장하는 등 현실 경제 흐름을 반영할 필요
- **실효적 분쟁조정 기능 확보를 통한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 소송 이전 단계의 분쟁 조정을 통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에 기여

□ 건의사항

① 모든 상가임대차 거래를 법상 보호대상으로 포괄하고 보호제도 강화

- **환산보증금 폐지**를 통한 모든 상가임대차 거래 보호
 - ‘환산보증금’의 개념 삭제 또는 자치단체에의 환산보증금 설정에의 자율권 부여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확대
- **임차인의 퇴거료 보상 조항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 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퇴거료 지급을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장 이전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

② 지역실정에 맞는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 부여

- **임대료증액한도 설정권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실정 반영 보장
 - 각 지역별 경제상황이 상이하므로 물가상승률 2배내 시·도지사가 임대료 증액한도를 설정

-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통해 분쟁 조정의 효과성 제고
 -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차임, 보증금 증감, 권리금 관련 분쟁 조정
 -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자 참여 의무화 및 실효성 확보
 -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하에 시·도에서 위임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분쟁조정 수행

3] 소상공인 점포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
 - (현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 최장 5년 → (건의안) 최장 10년
-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내의 독립 임대매장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내 독립 임대매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규정 신설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취지 및 목적** :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 **주요내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확대(환산보증금 폐지)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5년 → 10년)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을 삭제하고, 시·도지사가 임대료증액한도를 물가상승률 내 조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중 분양 점포, 대규모점포 내 독립 임대매장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차상인의 퇴거료 보장 조항 신설
 -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 신구조문대비표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확대

현행법	개정안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p>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조항 삭제></p> <p>② ~ ③ <삭제></p>

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현행법	개정안
<p>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생략></p> <p>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p>	<p>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10년을----- -----.</p>

마. 임차인의 퇴거료 보장

현행법	개정안
제9조의2 <신설>	제9조의2(퇴거료 보장)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으로 제10조1항 단서의 계약갱신거절을 할 경우, 제10조의4의 제3항의 손해배상액을 퇴거료로 지급해야 한다.

바.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현행법	개정안
제20조 <신설>	<p>제20조(분쟁조정위원회) ① <u>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u></p> <p>② <u>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10조의2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u> 2. <u>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에 관한 사항</u> 3. <u>기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관련된 사항</u> <p>③ <u>조정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u></p> <p>④ <u>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⑤ <u>법무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정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 관련 입법 동향 〉

◆ 정부 입법추진 경위 및 동향

- 서울시,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15.6.9 및 '15.11.26)
- 제 20대 국회에서 서울시의 건의내용(보호대상 확대, 실효적 분쟁 조정기능확보)이 포함된 8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백재현 의원 '16.5.30 등)되어, '17.3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

◆ 관련 입법동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확대

-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 ('16.06.09발의, 홍익표 의원등 11인), ('16.07.21발의, 박주민 의원등 19인)
-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100분의 70 이상이 적용되도록 확대 ('16.07.07발의, 홍익락 의원등 10인)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16.06.09발의, 홍익표 의원등 11인), ('16.07.21 발의, 윤호중 의원등 11인,), ('17.02.07발의, 강창일 의원등 11인,)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제한 없이 연장 ('16.07.21발의, 박주민 의원등 19인)

▷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전년도 물가상승률 2배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

- 임대료 증액 한도를 소비자물가변동률 2배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16.06.09발의, 홍익표 의원등 11인), ('16.07.21발의, 박주민 의원등 19인)

▷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중 분양 점포, 대규모점포 내 독립 임대매장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될 수 있도록 제외 대상 축소

- 전통시장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될 수 있도록 제외 대상 축소('16.05.30발의, 백재현 의원등 12인), ('16.06.27발의, 곽상도 의원등 21인), ('16.07.21발의, 박주민 의원등 19인)
- 전통시장 및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될 수 있도록 제외 대상 축소 ('16.06.09발의, 홍익표 의원등 11인)

▷ 임차인의 퇴거료 보장

- 임대인이 철거·재건축할 때 임차인이 보상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16.06.09발의, 홍익표 의원등 11인), ('16.07.21발의, 박주민 의원등 19인)

▷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 ('16.06.27발의, 곽상도 의원등 21인), ('16.07.21발의, 박주민 의원등 19인), ('17.02.07발의, 강창일 의원등 11인)

3 대규모점포 규제의 실효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및 실태

- 유통트렌드 변화(대형마트 → 복합쇼핑몰)에 따른 복합쇼핑몰 증가
 - 경기부진, 소비자구매패턴 변화, 시장과밀 등으로 대형마트 수 증가율 하락세
 - ▶ 대형마트 신규출점(전국 기준) : '12년(27건), '13년(12건), '14년(6건)
 - 쇼핑, 문화, 놀이 등 복합 체류형 공간인 초대형 복합쇼핑몰 확산 및 수요 증가
 - ▶ 복합쇼핑몰 전국 31곳 신설('11~'15년) 및 17곳('16~'18년) 추가 신설
-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광범위한 영향력 불구, 관련 법령의 허점 존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단계 입지규제 부재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매장면적 3,000㎡이상' 등으로 일률적, 획일적 규제
 - ⇒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 고려한 규제 조항 부재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골목상권 보호 기능 미흡
 - ▶ (주체측면) 업체 측이 작성·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객관성 논란
 - ▶ (시기측면) 영업 개시 전 제출함에 따라 복합쇼핑몰의 착공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해 '형식적' 절차라는 비판 존재
 - ▶ (범위측면) 상권영향평가 범위의 비현실성(유통산업발전법상 반경3km)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보호
 - 대규모점포의 확산으로 사라져가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시장 기능 외 도시의 공동체 형성과 지역의 문화 창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보호할 필요
- 대형화·복합화 추세에 있는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진출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실질적인 상생 도모

작성 자 공정경제과장 : 천명철 ☎2133-5360 상생협력팀장 : 홍은미 ☎5155 담당 : 김광원 ☎5159

- 대규모점포 입점 이후의 상생 방안 도출은 '적시성' 측면에서의 한계 존재
- 선제적인 입점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생계 보장 및 경쟁력 강화 기회를 마련하고, 대규모점포와 골목상권의 실효적인 상생방안 도출 노력 유인

○ **인접 기초지자체간 갈등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에 기여**

- 인접 지자체의 골목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확산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입점 시 기초지자체간 갈등 소지 존재
- 광역지자체의 개입을 통한 객관적인 상권영향평가 실시 및 갈등 예방 필요

□ **건의사항**

①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규모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규제기준 세분화**

- 현재의 일률적인 상권영향조사 기준인 '매장면적 3,000㎡이상(반경3km)'을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면적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반영하여 기준 상세화(세분화) 추진

(현행)	→	(건의안)
매장면적 3,000㎡ 이상(반경3km)		매장면적 15,000㎡ 이상(반경10km) 매장면적 15,000㎡ 미만(반경5km)

② **건축 허가 전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골목상권과의 실질적인 상생 도모**

- 영업개시 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제출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대규모점포의 허가 이전에 상권영향평가 추진, 실효적인 진출 규제 도모

※ 서울시, 「초대규모점포 진출규제방안 연구용역」 실시 예정('17.4~10월)

③ **광역지자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협의 절차 구비를 통한 규제의 객관성 확보**

- 여러 기초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복합쇼핑몰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광역지자체의 상권영향평가 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여 기초지자체, 복합쇼핑몰 및 골목상권의 상이한 이해관계 조정 및 중립적인 영향 평가 도모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유통산업발전법

○ 취지 및 목적 :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의 실효성 강화

○ 주요내용

- 건축허가 전 광역지자체장의 협의를 거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 대규모점포 규모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범위구분 및 확대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법	개정안
<p>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u>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u>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신 설></p>	<p>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 <u>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u> ----- <u>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매장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u>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u></p> <p>2. 매장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규모점포: <u>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u></p> <p>3.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 <u>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u></p> <p>4.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 <u>점포의 경계로부터 500미터</u></p>

〈 관련 입법 동향 〉

▷ 상권영향평가서 등 사전검토

-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실시('16.09.23발의, 유동수 의원등 18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신청서'('17.02.08발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 규모별 상권영향평가 대상지역범위 확대규정('17.02.08발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5,000 m^2 이상 : 반경 10km, 매장면적 15,000 m^2 미만 : 반경 5km)
- 준대규모점포(매장면적 330 m^2 이상 : 반경 1km, 매장면적 330 m^2 미만 : 반경 500m)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상권영향평가위원회 설치('16.09.23발의, 김경수의원 등 13인)

▷ 도시계획단계 입지규제 및 초대규모점포 규제

('17.1.12발의, 노회찬의원 등 11인)

-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청취
- 매장면적 1만 m^2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17.02.15발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 초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계없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함

4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지정하는 제도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율 합의를 거쳐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 대기업에 권고

□ 현황 및 실태

-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및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
 - 전통적으로 소상공인이 영위한 사업 영역에서의 재벌그룹 계열사 증가
 - ▶ '09~'14년에 증가한 재벌그룹 계열사 477개 중 387개가 생계형 소상공인 영위 분야
- **적합업종제도의 민간합의 방식, 권고적 효력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제기
 - 대기업 진출에 의한 피해 발생 이후 적합업종 신청·지정이 가능하나, 신청 이후 **합의도출이 장기간 지연**되어 중소상인 피해 확대
 - ▶ 문구소매업('16.2월 지정) 2년 6개월 합의기간 동안 약 2,000여개 소매점 폐업
 - 적합업종 미합의 또는 권고사항 불이행 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조정 신청 사례 전무**
-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재지정 포함 6년) 만료 이후의 업종 보호 방안 부재**
 - '17년 연내 74개 중 49개 업종이 적합업종 해제 예정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 영세 소상공인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
 - 적합업종보호의 적시성 확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대응 권한 신설을 통해 중소상인·기업의 자생력, 경쟁력 강화 기회 보장 필요
- **중소기업·상인 사업영역 보호를 통한 시장의 다양성 및 경쟁력 제고**
 - 대기업 위주의 시장구조 개편은 독과점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 다양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약 및 편익 저해

작성 자 | 소상공인지원과장 : 박종빈 ☎2133-5530 | 소상공인정책팀장 : 이창현 ☎5532 | 담당 : 이형림 ☎5190

□ 건의사항

- ① **정부 주도의 적합업종 지정·고시**를 통한 적합업종 보호에의 적시성 확보
 - 민간합의 방식의 적합업종 제도는 합의기한 및 합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합업종 지정에 장기간 소요
 -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중소기업, 중소기업 보호 필요분야 지원
- ② **대기업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 이행력 강화
 - 적합업종 사업영위 대기업에 사업이양 권고, 기업분할 등 조치 규정 마련
- ③ **적합업종 지정 이후 지원정책 마련**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적합업종 지정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에 역부족
 - 정부와 지자체의 적합업종 지원·육성 책무를 마련하여 지정업종 지원

□ 관련 법령 제정(안)

- **법령명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지정에 관한 특별법**
- **취지 및 목적**
 - 정부의 권한으로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주요내용**
 - 적합업종 보호·육성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둠**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소상공인의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영역을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중소기업청장은**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징수**

〈 관련 입법 동향 〉

-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발의(16.6.2. 우원식 의원 등 11인)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발의(17.1.2. 이훈 의원 등 13인)

□ 현황 및 실태

- 최근 지역을 기반으로 소규모 영업을 하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거나 유사한 업종간의 공동협력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에 공헌한 소상공인 등의 원주민이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자본에 의해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음

－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자산가치의 상승은 임대료 상승도 야기

▶ 임대료 상승 : 홍대('09년~'14년간 20~40%상승)

경리단길('12년~'14년간 6.7~650%상승)

－ 이러한 임대료 인상으로 지역의 활성화, 개발 이익이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닌 상업 자본에 귀속

－ 거대 자본이 장악한 지역은 상권획일화로 지역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에 따른 상권 쇠퇴로 임대인 등 지역 공동체의 생존 위협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상권붕괴라는 위협에 처해있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은 상가임대차 보호라는 소극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므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선정하여 업종제한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
 - － 특히, 상생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방법을 명시

□ 건의사항

①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특례**를 통한 적극적인 지역정체성 보호

-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적용 특례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 관련 법령 제정(안)

○ 법령명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취지 및 목적

- 지역공동체를 위한 협력적 이해관계 규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완

○ 주요내용

-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
-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 마련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발전구역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 시·도지사는 체인사업, 단란주점 등 일정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조건을 붙이는 등 제한 가능

〈 관련 입법 동향 〉

- ▷ 지역상생발전법 제정건의('16.2.4,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국회)
-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개최('16. 6. 29.)
-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발의(홍익표 의원 '16. 10. 5.)

6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국무총리실)

□ 현황 및 실태

- ‘1 대 99 사회’, ‘N포 세대’ 등으로 대표되는 불공정과 불평등한 현 상황을 타개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정부적 방향성 부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관련 개별법은 존재하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율하는 기본법 부재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마련하여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권한상 한계로 인한 어려움 존재**
 - **자치입법권의 한계**로 인해 개별 중앙부처에 시정조치·조사의뢰 등을 건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불공정 관행 근절 등에의 효과성 부족
 - 상위 법률 부재로 향후 지자체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법성 논란 및 냉소적 시각 제기될 가능성 존재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기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인 ‘경제민주화 제도화’ 의지 표명 필요**
 - 경제민주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정권 변화에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및 정책 환경 조성
- 중앙-지자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중앙정부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에의 일관된 방향성 설정에 기여

□ 건의사항

- ① **경제민주화 기본법 마련을 통한 범국가적 경제민주화 추진 체계 마련**
 -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개념 정립과 범위 규정
 - 안정적인 경제민주화 실현과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국민의 권한과 책무 규정
 -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소통채널로서 경제민주화 위원회 설치·운영
-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추진력 확보**
 - 국가단위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앙, 지방정부의 정책의 방향성 일치 및 이를 통한 정책의 효과 극대화
 - 지역실정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균형있고 조화로운 경제민주화 추진

□ 관련 법령 제정(안)

- **법령명 : 경제민주화기본법**
- **취지 및 목적**
 -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 **주요내용**
 - 국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방정부는 국가의 수립된 시책과 지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민주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그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함

〈 관련 입법 동향 〉

▷ 경제민주화기본법안 발의

- 국가의 책무, 국가·지자체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등
(‘14.01.05발의, 더민주 추미애 의원 등 104인 발의, 19대 국회 입법만료 폐기)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

-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등
(‘16.10.11발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15인, 20대 국회 기획재정위 계류 중)
(‘16.08.17발의, 더민주 윤호중 의원 등 27인, 20대 국회 기획재정위 계류 중)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1 생활임금제 전국 확산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 현황 및 실태

- 근로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증가하였으나, **소득불평등의 지속적 심화**
 -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평균소득 비율은 증가('95년 3.68 → '15년 4.22)
-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 곤란**
 - '16년 최저임금(월1,260천원)은 1인 가구 월 가계지출(1,396천원) 수준에도 미달(통계청)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각 지역의 물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보장 중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전국 지자체 243개 중 생활임금제를 도입 및 도입예정 지자체는 73개(약 30%)로 **생활임금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근거법령 필요**
 - ▶ '17년 현재 생활임금제 도입 및 도입예정 지자체 : 광역 10, 기초 63
-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한계 존재**
 -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직접고용 근로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간접고용(민간위탁), 용역 등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으로 확산이 어려움

〈서울시 생활임금 ('17년 8,197원) 적용 현황〉

- ▶ ('15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 근로자
- ▶ ('16년) 민간위탁분야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예산100%지원 사업 대상 단계적 시행)
- ▶ ('17년)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 서울시 용역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소속 근로자 17%가 생활임금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간접고용분야 임금실태조사, 서울연구원, 2016)로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필요

작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강 석 ☎2133-5410 노동정책팀장 : 김동완 ☎5412 담당 : 김용환 ☎5416

□ 건의사항

①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필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간에 어려운 경우 생활임금의 전국적 공공성이 있는 분야로 생활임금을 확대·적용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최저임금법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활임금제도)규정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
- ②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위탁한 기관 및 법인·단체의 소속 근로자
- ③ 기타 보조사업자,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시행 기관으로 확대

-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예외규정 신설

-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과의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확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②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환노위, 안행위)에

계류 증으로 ‘최저임금법’ 및 ‘지방계약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요청

※ 단,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전 분야로 확대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안) 보완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최저임금법

○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

○ 주요내용

-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u>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u></p> <p>① <u>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자출연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②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이나 법인·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 관련 입법 동향 〉

- ▷ 박완주 위원 대표발의(2016.6.29.)되어 환경노동위원회 회부(2016.6.30.) 계류중
- ▷ 제346회 국회 제6차 전체회의 상정(2016.11.21.)되어 소위원회 심의중

○ 법령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어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해소

○ 주요내용

- 공공계약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위탁 및 도급 등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안 제6조의2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계약의 원칙)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6조(계약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 법에 따른 계약이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관련 입법 동향 〉

- ▷ 진선미 위원 대표발의(2016.6.29.)되어 안전행정위원회 회부(2016.6.30.) 계류중
- ▷ 제346회 국회 제10차 전체회의 상정(2016.11.7.)되어 소위원회 심의중

2

근로자이사제 전국적 확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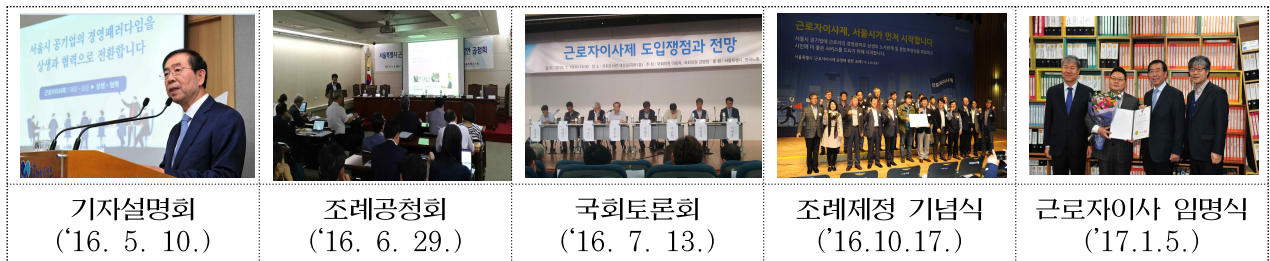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갈등 세계 최상위권,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사갈등 해소 시급
- 갈등수준 OECD 27개국 중 2위, 갈등비용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필요

□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추진경과

- 근로자이사제 도입 기자설명회(시장발표) : '16. 5. 10.
- 조례제정 공청회(서울시의회 공동개최) : '16. 6. 29.
-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 '16. 7. 13.
-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6. 9. 29.
-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기념식 : '16.10. 17.
- 국내 최초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 임명 : '17. 1. 5.



※ 근로자 이사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도입대상	- 근로자 100명 이상기관 도입 의무
이사정수	- 1~2명(300명 이상 2명, 300명 미만 1명)
자격/임기	- 소속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3년
임 명	-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 현행법령 절차 준수
권한/책임	-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책임과 권한 부여
보 수	- 무보수, 안전 및 자료검토수당 지급
교 육	- 근로자이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기회 및 편의 제공

작성 자 | 공기업담당관 : 박진영 ☎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 김숙희 ☎6771 담당 : 임덕영 ☎6773

□ **건의사항 : 근로자이사제 단계적 법제화 추진**

제1단계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147개
○ 지방출자·출연기관 : 645개
○ 정부 공공기관 : 321개



제2단계 : 민간기업 - 회사법인중심
○ 총 사업체수 : 3,205천개 - 종사자수 15백만 명
○ 회사법인 사업체수 : 275천개 - 종사자수 6백만 명

〈출처 : 통계청 kosis.kr〉

〈 **법제화 주요내용** 〉

- 일정 규모이상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에 근로자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
- 근로자이사 선임시 소속 근로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로자 참여 보장
- 근로자이사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 부여
- 근로자이사가 시민의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하도록 노력 의무 규정

① **지방공기업법 제58조**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u>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u> ②~⑧(생략)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 <u>비상임이사중 반드시 근로자이사를 별도 정수로 확보하여야 한다.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u> ②~⑧(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u>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u> ②~⑤(생략)	제9조(임원) ① ----- -----, <u>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중 반드시 근로자이사를 별도 정수로 확보하여야 한다.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u> ②~⑤(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임원) ①(생략) <u>②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u>	제24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u>비상임이사 중 1명 이상 근로자이사를 두어야 한다.</u> ②~⑤(현행과 같음)

3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 현황 및 실태

- '15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총 2,113시간으로 OECD 35개국(OECD 평균 1,766시간) 중 2번째 장시간 노동
 - ※ OECD 평균보다 347시간 많으며, 1일 8시간 근무 기준 평균 43일 더 근무
-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최대 68시간까지 시간 연장(확대)
 - 주 40시간 + 주중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특히, 운수·금융·광고·의료 등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주5일 근무제도 조차도 미적용
-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 및 일가정 양립 저해, 직장만족도·근무의욕 저하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장시간 노동은 사망률, 심혈관질환, 당뇨병, 육체적 피로 등 야기
 - 일-생활 균형지표 5점, 시간당 노동 생산성 31.6\$로 OECD 최하위권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 ▶ 과도한 초과근로 감축 및 미사용 연차 소진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도 준수를 통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진입
- ▶ 2017년부터 서울의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2개 서울시 출연기관에 시범 적용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정원대비 약13%) 창출
 - ※ 향후,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산
- ▶ 신규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절감액으로 일부 상쇄
- ▶ 노-사-정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안 도출

작성 자 | 노동정책담당관: 강 석 ☎2133-5410 노동보호팀장: 유승현 ☎5417 담당: 허 준 ☎5421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조직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확대
- 고용절벽에 놓여 있는 현 상황 극복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여 고용 창출 가능
 - 2016년 서울시 2개 출연기관 대상 1,800시간대 노동시간 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결과 노동시간 단축시 약 13%의 정규일자리 창출 가능
 -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시 전국적으로 최대 44만개, 주 8시간 제한 시 최대 77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서울연구원)

□ 건의사항

- 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지 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 내에 포함하여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의무화**
 - 근로기준법 제50조 개정하여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
 - 장기적으로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축소하여 주40시간 근무제 준수
- ② 주5일제 미적용 사업장 단계별 축소·폐지를 위한 특례업종 관련법 개정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개정 및 업종 축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연장근로를 1주의 근로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보건업
9.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10. 사회복지서비스업

- ③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현 행	개 정(안)
<p>3. 의료 및 위생 사업,接客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p> <p>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3. <u>항공운송업</u></p> <p>4. <u>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u></p> <p>5. <u>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u></p> <p>6. <u>방송업</u></p> <p>7. <u>전기통신업</u></p> <p>8. <u>보건업</u></p> <p>9. <u>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u></p> <p>10. <u>사회복지서비스업</u></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대상업무(부서)</u></p> <p>2. <u>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u></p> <p>3. <u>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u></p> <p>4. <u>그 밖에 필요한 사항</u></p>

〈 관련 입법 동향 〉

-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 대표발의(2016.7.27.)
 - 1주를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 명시
 - 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
- ▷ 바른정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2016.7.11.)
 - 1주를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 명시하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 현행 보상휴가제도를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로 확대 개편
 - 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

4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고용노동부)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사례

- 추진실적 : 비정규직 8,687명 정규직 전환 완료('12~'16년)
 - 직접고용 근로자 1,637명 정규직화 완료(시 715, 투자출연 922)
 - 간접고용 근로자 7,050명 정규직화 완료(시 1,234, 투자출연 5,816)
- ※ 생명안전 782명, 상수도 검침 427명 등 신규발굴을 통해 추가 전환
 ⇒ 목표인원 7,296명 대비 1,391명 초과 달성 (달성률 119%)

○ 서울시 정규직화 특징

① 정부기준보다 정규직화 전환 기준을 완화

구 분	서울시	정 부
상시지속 업무 기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연중 계속되는 업무 기준	연간 9~11개월은 기간제가 담당하고, 1~3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업무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업무
연령 기준	만 60세 미만 근로자 전환	만 55세 미만 근로자 전환
평가 방식	- 근무성적·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한해 전환 배제(네거티브 방식 평가)	대상자에 대해 실적·직무능력·태도 등에 대해 개인별 평가하여 전환

② 간접고용(용역) 근로자에 대한 선도적인 정규직화 추진

- 간접고용 근로자 7,050명 전환으로 전체 인원 중 81.2% 점유
- 직종별 : 청소 4,245명 / 시설·경비 1,192명 / 기타(주차, 운전 등) 1,613명

③ 「고용안정」 과 함께 「고용의 질」 개선 등 체계적 지원

- 임금개선 : 최초 전환시 월30만원 인상 및 임금협약 체결(장기근속 우대)
-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건강진단금, 유급병가 및 질병휴직 등
- 고용연장 : 청소·경비 등 고령자 적합 직종은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고용

작성 자 | 일자리정책담당관 : 정진우 ☎2133-5445 공공일자리혁신팀장 : 노재운 ☎5456 담당 : 노춘열 ☎5475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사람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및 투자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근간 강화
- 사람에 대한 투자는 창조적 부가가치의 원동력으로 작용

□ **건의사항**

① **기준인건비 적용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제외 (행정자치부)**

〈현 황〉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관리대상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산을 저해

〈건의사항〉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관리대상’ 중 ‘무기계약직’이 제외되도록 건의

현 행	⇒	건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인건비 관리대상 : 4개 직종 - 일반직, 소방직, 기타직(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인건비 관리대상 : 3개 직종 - 일반직, 소방직, 기타직(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② **국고보조사업의 중앙부처 자원 분담 기준 마련 (기획재정부)**

〈현 황〉

- 국고보조사업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국비 추가 부담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

〈건의사항〉

-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분담 기준 마련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12.1월)” 법제화 (고용노동부)**

- 비정규직 정규직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침을 법률로 제정
- 내용 : ①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②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③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④ 비정규직 경력 인정 ⑤ 기관별 비정규직 전담부서 지정 등 기능 강화

5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고용노동부)

□ 현황 및 실태

-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 2008년 289천건 → 2012년 320천건 → 2015년 341천건(전국통계)
- 근로감독관 절대적 인력부족으로 인한 실질적·상시적 감독의 어려움 상존
 -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 영세·취약 사업장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노출
 - ※ 근로감독관 총 인원은 1,458명(정원 대비 87.9%)으로 담당해야 하는 사업장 1,711개(전국통계, 2014년 기준)
- '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 부재로 노동권 침해 해소에는 한계 존재
 - 민간부분에 있어 불법부당한 노동현장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은 한계로 인하여 교육,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컨설팅 등 역할에만 국한

【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 개요 】

- 전담조직 : '12년 노동정책과 및 '16년 일자리노동국 신설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월 제정)」에 의거 노동정책 기본계획(총 55개 단위사업) 수립·추진 중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근로기준법 준수 등 좋은 일자리 마련으로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 필요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상호 역할분담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 해당지역의 특성과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시 지역 밀착형 노동정책 수행 가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인력규모상 개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기여 가능

작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강 석 ☎2133-5410 노동정책팀장 : 김동완 ☎5412 담당 : 조성민 ☎5413

- 현재 특별사법경찰제도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위생, 대부업 등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를 기 수행 중으로 기반 인프라가 구축됨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현황 】

- 추진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직무법
- 운영조직 : 1단 2반 8팀 / 122명(시 61, 자치구 61)
- 운영분야 : 식품위생·원산지표시·공중위생·의약·청소년·대부업 및 방문판매 등

□ 건의사항

- 근로 감독기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이외에 시·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101조 개정
 - ※ 권한 확대가 아닌 시·도지사에게 ‘위임’ 형식도 가능
 - ※ 권한 확대 또는 위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로 근로감독관 파견 요망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근로기준법
- 취지 및 목적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밀착형 노동정책 수행 및 노동권 침해 해소
- 주요내용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1조(감독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생략)	제101조(감독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시·도) 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생략)

〈 관련 입법 동향 〉

- ▷ 자유한국당 문진국의원 대표발의(2016.8.16.)
 - 근로감독관의 절대적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장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 근로감독관 업무지원
 - 명예근로감독관 위촉 대상 및 업무범위, 처우 등 규정

**국민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1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국비지원 제도개선 (국민안전처)

□ 현황 및 실태

- 지진 위험인식 부족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내진설비 투자 부족**
 - 최근 40년간 1,212회 지진 발생 및 증가추세에 있으며, '16. 9월 관측사상 최강(진도 5.8)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한 바 있음
 -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의무화 지연(6층 이상 '88년, 3층 이상 '05년)으로 전국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45%에 불과(민간건축물은 6.7%)
 - ▶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48.5%(2016. 12월 기준)
- 사회기반시설 내진설비 투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미흡**
 -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물재생시설 등 내진 보강에 대한 시설 유형별 구체적 지원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포괄적 국고보조 근거〉

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광범위한 지진 피해 및 사전예방의 긴급성 대비 **선제적 재정 투자 필수**
 - 국가적 재난 상황인 지진 피해는 특정 지자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기능 붕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내진 투자가 필수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대규모 선제적 예방투자를 위한 명확한 국가 책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정부 차원의 임의적 지원결정에 따라 국비보조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법정사항으로 규정하여 국가 책임 명백화 및 보조율도 상향
 - ▶ '17년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내진 보강 관련 국비 편성 : 772억원 중 362억원

작성 자 재정관리담당관 : 박영현 ☎2133-6860 재정협력팀장 : 엄기숙 ☎6879 담당 : 김민환 ☎6880

□ 건의사항

① 지속적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세부시설 유형별 국비 지원 기준을 법령상 명시

- 현재 포괄적·임의적으로 규정된 국비지원 근거를 각 시설물별로 구체화하여 지속적 지원 가능토록 보조금 관련 법령에 명시

▶ 내진보강 지원 : 도시철도 40%, 도로시설물·공공건축물 60%, 하수처리시설 50%

※ 2018년 서울시 기준 총 소요액 741억 중 국비 지원신청액은 378억원

②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 6.7%에 불과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

▶ 현재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시 지방세 및 보험료율 차등적용 혜택만 제공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촉진은 미흡한 상황임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 국비지원 비율 규정 추가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현 행		개 정 안	
사 업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1.~121.	<생략>	1.~121. 12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신설)	<생략> 도시철도 : 40 도로시설물 : 60 공공건축물 : 60 하수처리시설 : 50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
- 사업대상 : 주요시설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공공시설물 4종
- 공공건축물,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하수처리시설
- 사업기간 : 2016년 ~2020년
-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및 개선
- 총사업비 : 3,09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2016년	'17년	'18년	'19년이후
계	309,655	32,623	77,286	74,117	125,629
국 비	148,432	12,366	36,198	37,777	62,091
시 비	107,108	10,983	26,142	26,375	43,608
서울메트로	54,115	9,274	14,946	9,965	19,930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

('15.12.31.기준)

구 분(단위)	대 상	확 보	미확보	내진비율
도 시 철 도 (개 소)	604	456	148	75.5%
도 로 시 설 물 (개 소)	560	460	100	82.1%
하 수 처 리 시 설 (만 톤)	498	107	391	21.5%
공 공 건 축 물 (개 소)	1,523	738	785	48.5%

※ 수도시설(177), 공동구(6), 시립병원(13), 수문(3) : 내진성능 100% 확보

□ 추진계획

① 도시철도 : 152개소

- 지하철 5~8호선 내진성능 100%확보, 1~4호선 내진보강 필요
- 내진성능 평가 시행 후 내진보강 필요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추진
- 1단계('15~'17, 83.1% 내진성능) : 50개소(교량, 터널, 건축물 등)
- 2단계('18~'20, 100% 내진성능) : 102개소

② 도로시설물 : 102개소

- 내진성능 개선공사 추진계획 수립 후 보강
 - '17~'18년 : 1~2종 주요구조물과 주요노선 우선 보강
 - '18~'19년 : 법정외 구조물 보강

○ 내진보강 계획

(단위: 개소)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102	2 (양재천교, 두모교 시행완료)	30	29	41

③ 하수처리시설 : 물재생센터 총 4개소 (중랑, 서남, 난지, 탄천)

-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 내진설계 반영한 시설 현대화사업 진행중
- 난지·탄천 물재생센터 : 내진성능평가 후 필요시 내진보강 추진

④ 공공건축물 : 251개소 ※ 자치구 건축물 446개소 자치구별 계획수립 추진

- 내진성능 평가 시행 후 내진보강 필요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추진
 - 1단계('16~'20) 100개소, 2단계('21년 이후) 151개소 추진
- 251개소 모든 내진 보강 시 약 1천억원 소요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중앙 부처	사업명	구 분	총 사업비	연도별				
				'16	'17	'18	'19	'20
	합계	계	309,655	32,623	77,286	74,117	82,413	43,216
		국 비	148,471	12,366	36,198	37,817	42,804	19,286
		시 비	107,069	10,983	26,142	26,335	29,644	13,965
		운영기관	54,115	9,274	14,946	9,965	9,965	9,965
국토 교통부	도시철도 152개소	계	180,384	30,914	49,820	33,217	33,217	33,216
		국 비	72,154	12,366	19,928	13,287	13,287	13,286
		시 비	54,115	9,274	14,946	9,965	9,965	9,965
		운영기관	54,115	9,274	14,946	9,965	9,965	9,965
	도로시설물 102개소	계	91,162	700	20,466	30,800	39,196	
		국 비	54,277		12,280	18,480	23,518	
		시 비	36,885	700	8,186	12,320	15,678	
		운영기관						
환경부	하수시설 391만톤	계	1,500	900	500	100	2단계 실시	
		국 비	140		90	50		
		시 비	1,360	900	410	50		
국민 안전처	공공건축물 100개소	계	36,772	272	6,500	10,000	10,000	10,000
		국 비	22,063	0	3,900	6,000	6,000	6,000
		시 비	14,709	272	2,600	4,000	4,000	4,000

※ 난지·탄천 물재생센터 : '30년까지 완료 목표 추진, 공공건축물 : '21년 이후 151개소 추진

2

도로 합몰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규정 신설 (기획재정부/환경부)

□ 현황 및 실태

- 8·90년대 급격한 기반시설 확대로 비약적 증설된 **하수관로의 노후화 심각**
 - 전국 132,664km의 총 하수관로('14년 기준) 중 2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는 50,879km로 전체 연장의 38.4%에 달함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 합몰사고 빈발로 시민안전 위협**
 - '11~'15년 전국 도로합몰사고(3,626건) 중 하수관로로 인한 사고는 2,806건
 - 1km당 약 3개소가 합몰 등 위험 요소 상존하는 것으로 추산('15년, 환경부)
 - ※ 서울시 30년 이상 하수관로 1,393km 조사 결과 42만 개소 결함 확인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급하나, 지방 재정여건상 **독자적 재원 확보 곤란**
 - 도로합몰 발생 주요항목에 대한 긴급정비에 서울시 기준 3,957억원 필요
 - 국가적 정책사업(환경부 지침 등) 법정경비 우선지출로 노후관로 정비예산 부족
 - ▶ 수해방지, 수질기준 강화 등 환경부 지침 개정시 이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출 의무 부과
 - ※ 하수도법 시행규칙상 수질기준 강화(총인방류수질)로 서울시에서만 2천억원의 추가 재원 소요
- 특히 **서울시만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에 대해서만 국고보조 배제(2009년)하여 이중차별

□ 건의사항

- ①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 보조 근거 마련
 - 현재 보통교부세 교부를 통해 시·도간 재정충족도 차이는 없는 상태이므로, 서울시만 타 시·도와 차별적으로 안전예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 시·도와 동일수준으로 하수관로 정비 예산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②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 ‘18년 사업비 1,311억원 중 337억원 국비 지원 요청(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계획(서울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연 도 별				
		'16년	'17년	'18년	'19년	
정비목표(km)	298	23	74	100	101	
사업비	계	395,700	31,500	99,100	131,100	134,000
	국 비	105,400	31,500		33,700	40,200
	시 비	290,300	0	99,100	97,400	93,800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취지 및 목적
 - 타 시·도와 동일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 배제 시정
-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특별시 항목 신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신설(안) : 특별시 항목 신설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현 행		개 정 안	
사 업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31. 하수처리장 확충	광역시 : 10 광역시(충인처리시설) : 50 시지역(읍 이상) : 50 군지역(면 이하) : 70	31. 하수처리장 확충	특·광역시: 30 특·광역시(충인처리시설): 50 시지역(읍 이상) : 50 군지역(면 이하) : 70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특·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 관련 입법 동향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령 상의 기준보조율(별표1)을 법률의 기준보조율로 상향하고 서울시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신설

법 령	현 행 (시행령)		개 정 안 (법 률)	
	기 준 보 조 율	비 고	기 준 보 조 율	비 고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역시: 30%	개량의 경우 광역시: 10%	특별시: 20% 광역시: 30%	개량의 경우 특별시 : 5%, 광역시 : 10%

- 법률 개정 진행사항

의 안 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2004458호). - 한정애 의원 등 10인, (제347회 국회 임시회 발의, '16.12.19).
진 행 상 황	- 17. 1. 16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제안설명. - 17. 1. 17 :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상정.

3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법 제정 (국토교통부)

□ 현황 및 실태

- **현행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사후적 보수·보강 중심**
 - 현행 시설물 관리체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 **서울시의 기반시설 노후화*는 '16년 기준 27% 수준이나, '36년에는 85% 수준까지 상승 예측되며, 타 지자체는 통계관리조차 미비**

* 현재 서울시는 완공 후 30년이 경과한 기반시설을 노후기반시설로 분류

구 분 ('16년 기준)	도로 시설물(개)	지하철 시설물(개)	상수관로(km)	하수관로(km)
노후기반시설(전체)	286(1,137)	224(618)	1,002(13,697)	5,254(10,581)
현재 노후화율	25%	36%	7%	50%
10년 뒤 노후화율	53%	54%	49%	71%
20년 뒤 노후화율	77%	92%	85%	84%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現사후적 보수·보강체계 유지 시, 지자체 재정부담 급증**
 - 전국 기반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으로, 향후 유지관리 소요 급증 전망
 -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서울시도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 **사전적·예방적 대응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시, 예산절감 가능**
 - 서울시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체계를 성능개선, 장수명화 등 사전적·예방적 조치 중심으로 전환 시, 향후 10년 동안 유지관리 비용 13% 절감 예상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전략(2017)'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지방정부 지원, 사전적·예방적 대응 위한 제도 운영**
 - 미국, 독일, 일본은 지방정부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근거법률 마련
 - ※ 일본의 「지방도로양여세법」, 「도로정비 자원 법률」, 독일의 「도로건설재정법」
 - '13년 일본은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수립 등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 건의사항

- ①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과 장수명화 등 **사전적·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②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안정적·지속적 자원 마련**을 위한 **기반시설안전 교부세(가칭) 신설**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법」 주요내용

- 노후기반시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의
 - 경과연수뿐 아니라 시설물 유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 정의 필요
- 전국 단위의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의무화**
 - 국토교통부는 5년 단위로 실태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각 광역지자체에 시달하고, 광역지자체는 지침을 토대로 실태평가 실시 (실태평가는 전액 국비 지원 필요)
 - 실태평가보고서에는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기존의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과 차별화
- **사전적·예방적 조치**를 위한 **기반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각 광역지자체에 실태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종합관리계획에는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소요를 반영·종합한 중장기재정계획 반드시 포함**
- **기반시설안전교부세(가칭) 신설**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
 -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반시설안전교부세(가칭)를 신설·운영**
 - ※ '15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사례 有
 - 현행 국비 보조금의 경우 확정내시까지 불확실성이 높아 **지속적·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교부세 형태의 재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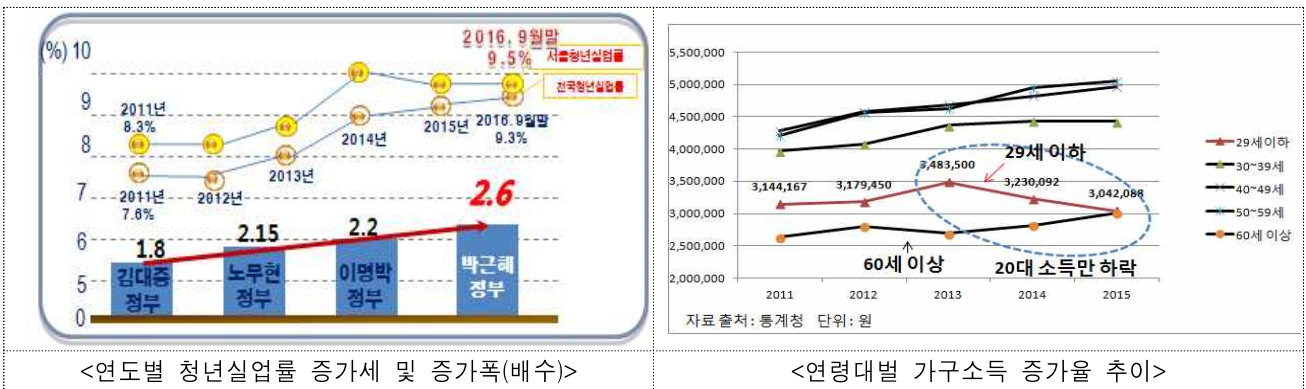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보편적 복지 실현**

1 청년활동지원사업 등 청년정책 전국확대 (고용노동부)

□ 현황 및 실태

○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른 청년층 가구소득 지속적 감소

- '16년 기준 청년(15~29세)실업률(9.3%)은 전체실업률(3.6%) 대비2.7배
- '13년 이후 전 연령대의 가구소득은 증가하나, 29세 이하는 오히려 감소
- *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실질임금은 현저히 감소



○ 대학진학률 하락 및 취업난으로 인한 공무원 쏠림현상 가중

- 졸업 후 취업난 가중과 비싼 학자금으로 인한 대학진학률 감소(10년간 12%)
- 취업준비 중인 청년(15~29세)의 34.9%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29세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청년활동지원금 및 구직 프로그램
- 지원실적 : 2,831명 1회 지급(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기준 선정)
- * '서울시 청년수당' 받아 구직·창업활동에 70%사용 등(한겨레, '17.2.16)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청년들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새로운 청년지원정책 필요

- 단기·비정규직으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기존의 구직정책에 지속적인 참여가 곤란
- *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기간 중 아르바이트가 불가하며, 지원금은 생활비에 비해 적음
- 기존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학, 그룹스터디 등 구직에 필요한 활동 지원

작성 자 청년정책담당관 : 구종원 ☎2133-6575 청년활동지원팀장 : 양호경 ☎6589 담당 : 김지민 ☎6578

- **중앙-지방 협업을 위한 제도마련 및 법제정을 통한 지원토대 마련**
 - 고용노동부의 노동센터와 지자체 단위의 일자리센터 연계를 통한 효율성 확보
 - 청년기본법 등 청년 지원 법안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근거 확보 필요
 - * EU 주요국은 단일법령으로 제도화,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는 헌법에 지원근거 마련

□ **건의사항**

- ① **해외 및 지자체 청년정책을 바탕으로 한국형 청년기본정책 수립**
 - EU, 일본 등 해외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청년문제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 지자체의 청년사업 결과·의견을 검토하여 긍정적인 요소 반영 필요
- ② **효과적 정책이행을 위한 단일 법령 제정 등 지원체계 재정비**
 - 고용 중심에서 주거, 문화, 소득 등을 포괄하는 청년정책 단일법령 제정
 - *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통한 고용·구직 분야만 지원
 - 효과적 정책이행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및 민간 등 협력체계 구축

□ **관련 법령 제정(안)**

- **법령명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소득법**
- **취지 및 목적**
 - 고용중심적인 청년정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개념에서 청년문제를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
- **주요내용**
 - 청년정책 지원근거 마련 및 기본사회안전망 구축

〈 관련 입법 동향 〉

- ▷ 청년기본소득법안(김부겸의원 등 21인, '17.1.31)
- ▷ 청년기본법안(이원욱의원 등 10인, '16.8.24)
- ▷ 청년기본법안(신보라의의원 등 122인, '16.5.30)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국가책임보육 (보건복지부)

□ 현황 및 실태

○ 전국 어린이집 유형 및 이용자 현황 (’16. 12.말 기준)

구 분	소 계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등
어린이집 수	41,084	2,859	14,316	20,598	3,311
비 율(%)	100.0	7.0	34.8	50.1	8.1
이용 아동 수	1,451,215	175,929	845,663	328,594	201,029
비 율(%)	100.0	12.1	58.3	22.6	13.9

–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7.0%수준임(서울시 16.8%)

▶ 개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존비율이 높음(93.0% 수준)

※ 선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 프랑스 66%(’13), 스웨덴 83%(’13), 일본 41%(’14), 한국 7%(’16)

○ 정부 여성정책기본계획 공청회(’12.11.26, 여성가족부)

–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30% 목표 제시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국가책임보육 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의 출산·육아 부담 해소

- 영유아를 안심하고 믿고 맡기는 국가 책임보육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정부의 공보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민간시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의 30% 이상 필요

○ 부모들이 희망하고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

- 국공립 보육환경 만족도 4.28점으로, 비국공립(3.60) 대비 18.9% 높음
 - ▶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 분석 결과(2015. 서울연구원 연구)
- 국공립어린이집에 아동을 입소하기 위한 부모들의 대기자 수가 많음
 - ▶ 서울시 국공립대기자 수 : ’15년 124,182명 ➡ ’16년 6월 161,038명

○ 우수교사 확보, 책임 운영강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상향평준화 실시

작성 자 | 보육담당관 : 김혜정 ☎2133-5088 국공립확충팀장 : 임성진 ☎5127 담당 : 배동원 ☎5128

□ 건의사항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고지원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 증액 필요('16년 대비 축소 실정)
 - ▶ '16년 247억원(403개소), '17년 223억원(24억원 감소)
 - ▶ 서울시는 '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62억원 중 국고 151억원(9%수준)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현재 3~5세 아동은 보육교사 1인당 15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8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교사지원 필요

※ 아동 연령별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반별 정원(명)	3	5	7	15	20
보육교직원(명)	1	1	1	1	1

- 어린이집 보육교사 격무해소·휴가사용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필요

③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및 아동 연령별 발달특성에 맞는 실내공간 구성을 위한 시설 개선비 국고 지원

3

보편적 간병서비스 제공(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보건복지부)

□ 현황 및 실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운영 및 확산 경과

- '13. 1월 : 전국 최초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사업 추진 (서울의료원 90병상)
- '13. 7월 :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전국 13개 병원 도입 운영
- '15년 3월 ~ :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수가화로 전환 운영
- '15.12월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신설 : '16.9.30 시행

- 제4항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16. 5월 :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선정 (서울의료원)
- '16.10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217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 서울시 환자안심병원 병상수 확충 현황

2013년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80병상	380병상	555병상	687병상	825병상	1,000병상

※ '16.12월말 현재 5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서남, 보라매) 687병상 운영 중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환자 간병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 완화

- 환자 간병비 약 월 200만원 절감 효과 (240만원/월 → 45만원/월)

※ 1일 약 7~8만원의 간병비 중 본인이 약 2만원,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공공부문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간병지원 인력의 신규 고용 일자리 확대

※ 687병상('16년) → 7개 시립병원 1,000병상('18년)까지 확충시 총 202명의 간호인력 신규채용

작성 자 보건의료정책과 : 박 범 ☎2133-7505 시립병원운영팀장 : 이상화 ☎7516 담당 : 오재연 ☎7515

□ 건의사항

①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원급 이상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 의무화 필요

- 건강보험 수가화로 전환되고, 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도입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서비스 도입 병원이 '16.10월 현재 전국 11.8%에 불과

※ 전국/서울시 병원급 이상 병원 및 환자안심병원 도입 현황 ('16.10월 현재)

전 국		서 울 시	
병원급 이상 병원수 (%)	도입 병원수(%)	병원급 이상 병원수 (%)	도입 병원수(%)
1,838 (100)	217 (11.8)	274 (100)	42 (15.3)

②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지방 소재 병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보수 수준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지연
-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신규인력 확보 지원방안 마련 필요

※ '14년 간호사 면허소지자 32만3천명 중 활동간호사 비율은 44%에 불과

※ '14년 간호조무사 포함 인구 1천명당 임상간호사수 5.61명(OECD 평균 9.6명)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 취지 및 목적

- 국민의 간병부담 해소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적 확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민간 의료기관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제도화
-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간호취업교육센터' 설립 운영

○ **신구조문대비표 : 의료법**

현 행	개 정(안)
<p>제4조의2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u>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의2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②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u>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78조의2(간호취업교육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계속근무를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u>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간병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3. 간호·간병인력의 계속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4. 유휴 및 이직 간호·간병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5. 기타 간호·간병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취업교육센터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관련 입법 동향 〉

- ▷ ‘간호취업교육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용익, 안철수 의원 등 13명, '15.11.5) → 폐기
- ▷ 국가 차원의 ‘간호인력 개발원’ 구성 운영 방안 제안 → '16.9.22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 간호인력 양성 및 관리, 간호인력 취업 촉진, 간호인력 역량강화,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일 가정 양립, 간호인력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역할 담당

4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교육부)

□ 현황 및 실태

○ 의무교육 기간중 무상급식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 '11년 공립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2014년부터 초·중등 전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 (사립초등학교 제외)
- 그 동안 총 지원금액은 약 2조2천억원(누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

< 학교급식 지원 현황 >

지원대상	구 분	지원인원	예 산 액 (억원)			
			계	市(30%)	구(20%)	교육청(50%)
계		3,557천명	22,060	6,390	4,418	11,252
초, 중 전체	2016년	668천명	4,426	1,320	888	2,218
	2015년	705천명	4,548	1,364	910	2,274
	2014년	729천명	4,726	1,417	946	2,363
초, 중1~2학년	2013년	670천명	3,953	1,186	791	1,976
초, 중1학년	2012년	587천명	2,875	918	576	1,381
공립초 5, 6학년	2011년	198천명	1,532	185	307	1,040

○ 무상급식의 긍정적 효과 지속확대 필요 (서울시 무상급식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 산업연간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2011년 ~ 2014년)

* 총 투입예산 : 1조7,879억원

구 분	합 계 (단위 : 백만원, 천명)
생산유발효과	3,296,449
부가가치유발효과	1,375,813
취업유발효과 (연평균)	19.8
고용창출효과 (연평균)	7.0

-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 분석

① Gini 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

▶ 총소득 (2009) 0.371 → (2014) 0.300

작성 자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 ☎2133-4140 친환경급식기획팀장: 류연호 ☎4142 담당: 김창양 ☎4158

②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감소효과 발생

- ▶ 절대적 빈곤율 : (2009) 9.25% → (2014) 6.06%
- ▶ 상대적 빈곤율 : (2009) 13.66% → (2014) 9.09%

○ 무상급식 추진체계의 **전국적 통일된 기준 적용 필요**

- 시·도별 무상급식 대상 및 지원비율의 차등이 발생,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전국적 통일된 기준에 따른 무상급식 시행 필요

◆ 17개 시·도 무상급식 지원 현황('17년) : 시·도별로 **대상 및 분담비율**이 다름 (세종·경남·전북·전남) 초·중학교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지원, (대전) 초·중3만 지원, (경기·제주) 유치원 포함 초·중학교 지원 (나머지 10개 시·도) 초·중학교 지원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2017년 현재 정부의 지원이 전무함**
-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안(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신설)이 발의되어 공청회 등 관련절차 진행중임**

□ **건의사항**

- ① 무상급식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에 국가의 의무 구체적 명시
 - 학교급식법에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정부분(50%) 이상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건의
- ②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원범위, 금액 등이 편차가 있어 학생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전국적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
 - 무상급식 지원범위, 지원금액 등이 17개 시·도간 재정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도간 학생들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여 무상급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건의

□ **관련법령 개정(안)**

○ 법령명 : 학교급식법

○ 취지 및 목적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급식 대상, 경비부담 등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이하생략)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u>② 무상급식에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50%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한다.(신설)</u> ③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 관련 입법 동향 〉

- ▷ 노회찬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 수립
 - 급식운영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되, 식품비 50% 이상을 국가부담
- ▷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 식품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 부담
 -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
- ▷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 국가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상호 분담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읍면동 적용 (보건복지부)

□ 현황 및 실태

- 복지대상자 및 예산 지속적으로 증가, **인력 총원은 부족**
 - 서울시 복지 대상자는 1,480천명('11) → 2,574천명('13)으로 **73% 증가**
 - ※ 전국 : 13,573천명('11) → 20,569천명('13)으로 52% 증가 (출처 : 보건복지부, '13.5)
 - 이에 비해 복지담당 공무원은 3,674명('11) → 4,365명('13) 으로 **18%만 증가**
- 기존, 수요자 신청 기반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계**는 지속적 노출
 - 송파 세모녀사건, “떠나간 세모녀... 복지급여 신청만 했어도”(SBS 등, '14.2)
 - 사회복지공무원 연쇄자살, “사회복지사의 복지에는 왜 무관심”(한겨레 등, '13.4)
- OECD 기준 복지지출 최하위, **민간 자원 활용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필요**
 - '16, 대한민국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35개국 중 **34위**
 - '16, 공동체 결속 정도*는 OECD 38개 국 중 **37위**로 공동체 결속을 통한 주민복지 수준 향상이 절실한 상황
 - ※ ‘어려움 있을 때 도움 요청 할 친척, 친구 또는 이웃 있다.’ 응답비율 : 75.8%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복지부의 유사사업인 ‘행정복지센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준으로 강화

찾·동 vs 행정복지센터 차이점

구 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시)	행정복지센터(중앙정부)
사업특성	▸ 복지+건강+마을공동체+동행정혁신이 결합된 ➔ 입체적·시스템 복지 (복지생태계 완성)	▸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복지대상	▸ 어르신, 영유아, 빈곤위기가정	▸ 빈곤위기가정
총원('15~'17)	▸ 사회복지직 2,000명, 방문간호사 450명 / 인건비 자속지원	▸ 사회복지직 393명 / 3년 한시지원
방문차량지원	▸ 대당 2,200만원	▸ 대당 350만원

작성 자 | 자치행정과 : 유보화 ☎2133-5800 동혁신팀장 : 배중은 ☎5833 담당 : 김성훈 ☎5834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 필요**
 - 찾아가는 방문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위해 추가로 필요한 순증 인원은 “동당 6.5명”으로 전국 읍면동에 충원·배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요 성과

분야	시행 전('14.7~'15.6)	1년차('15.7~'16.6)	2년차('16.7~'16.12)
현장방문 건수	동당 월 57회	138회 (2.4배↑)	196회 (시행전 대비 3.4배↑)
복지 초기상담	동당 월 282건	553건 (96%↑)	399건 (시행전 대비 42%↑)
사업 인지도	'15.8월 : 29%	⇒ '16.9월 65% (2배↑)	
복지 담당 1인당 대상자 수	'15.7월 : 170명/인	⇒ '16.7월 115명/인 (35%↓)	

- **동별 필요 인력의 인건비, 지자체 부담 어려워 국비 지원 필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인건비는 100% 지자체 부담 중(시 75%: 구 25%)
 - 복지사무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으로 50:50의 비용 매칭이 원칙이므로 전 자치단체에 대해 인건비 보조필요
- 방문 복지와 함께 **보편적 건강관리 및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사업효과 제고

□ 건의사항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주민관계망 형성” 중심 찾·동 모델의 전국적 실행

찾·동의 “적극적 복지 융합” 모델

-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 ▶ 복지상담전문관 도입 및 동 단위 통합 사례관리
- ▶ 주민들 간의 촘촘한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조성
- ▶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강화, 동 행정혁신

▶▶ 복지 + 건강 + 마을 + 여성 + 동 혁신 융복합된 “서울형 복지모델”

- 필요 복지인력의 연차별 채용·배치 계획 수립
- 불필요한 행정낭비 유발하는 “동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 중단
- 주민자조모임·방문건강 서비스 적용, 읍면동 복지허브 시스템 재설계

- ② 필요한 적정인력 **기준인건비에 반영**, 인건비 **국비매칭**으로 정부 예산 반영
 -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 기준인건비 상향과 동시에 50% 국고보조 시행
- ③ 간호직 공무원 및 마을공동체 담당자에 대한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동 방문간호사 고용 안정을 위한 근거 마련
 - ▶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는 채용근거와 인건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지역공동체법**(행자부 준비 중) 제정 추진 시, 동 마을공동체 담당 채용 규정 마련

□ 현황 및 실태

- 100세 시대, 새로운 인생주기 등장 등 인구환경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지원 정책이 필요한 대규모 인구집단, 50+세대 등장
 - 50+세대(50~64세)는 전국 5,170만명 중 1,159만명(22.4%)
 -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 전국 720만명, 노인과 차별화된 특성과 욕구 보유
- 기존 일자리, 상담 등 산발적 지원정책은 있었으나, 50+세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은 미흡
 - 조기퇴직(평균 52.6세) 후 준비되지 않은 삶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공존

정책 지원 미흡으로 인한 노후준비 부족은
장래의 노인인 50+세대가 복지서비스만 받는 단순 수혜자로 전락

➡ 50+세대가 사회적 '집'이 아닌 '힘' 되도록 국가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50+세대가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동력이 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확립 시급
 - 50+세대를 위한 일자리,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필요
-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50+세대의 성공적인 인생2막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필요
 - 노인복지 정책과 시설은 많은데 비해, 50+세대의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 시설은 부족
-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를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역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기존에 시행되던 천편일률적 단순 어르신일자리와는 차별화되는 50+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필요

□ 건의사항

① 50+세대가 함께 인생2막을 설계할 수 있는 시설 확대

- 서울시 50+캠퍼스 사례와 같이 생애설계 상담, 맞춤형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인프라 확대

<50+캠퍼스 1호점,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16년 운영실적>

50+종합상담 (6,948명)	맞춤형 교육 (127개 과정 4,706명)	50+사회공헌 일자리 (10개 유형 719명)	커뮤니티 지원 (128팀 1,274명)
---------------------	----------------------------	------------------------------	--------------------------

- 50+캠퍼스와 같은 지원시설을 현재 「노후준비 지원법」 상 '지역노후 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운영비 지원

② 50+맞춤형 상담 및 생애설계교육 제공

(가칭) '중장년 자유학기제' 로 50대가 되면 누구나 체계적으로 인생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상담과 교육 의무화(확산)

-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동년배 50+컨설턴트 1,000명 양성(공공일자리)을 통해 50+세대를 위한 종합 상담 시스템 구축
- 서울시 '50+인생학교' 모델 등 지자체·기업 차원에서 생애설계 교육 지원 의무화

〈 관련 법률 입법 추진 현황 〉

- ▷ 법 령 명 :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 진행상황 : 2016.12.29 정부(고용노동부) 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 주요내용 : 일정규모(3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부과

③ 인생2막의 디딤돌, 50+사회공헌 일자리 10만개 창출

-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례와 같이 50+세대의 경륜과 역량으로 사회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확산
- 학교, 마을, 주거, 복지서비스, NPO 등 제2의 일자리 진출을 위한 디딤돌

□ 현황 및 실태

- 최근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가 복지대안으로 주목
 - －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정책 실험 시도
 - ▶ 핀란드 : '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천 명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67만원) 제공
 - ▶ 네덜란드(위트레흐트市) : 250명 대상으로 2년간 매월 960유로(115만원) 제공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기그경제(gig economy)의 부상, 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양상 변화
 - － 불평등 심화, 경제적 불확실성 확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임시 계약의 노동 형태 확산
 - － 어르신들의 근로능력감소로 인한 실소득 감소액 보정 필요

〈 기그경제(gig economy) 〉

- ▶ '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필요에 따라 섭외해 단기 공연을 진행했던 '긱(gig)'에서 유래한 용어로 그때그때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

-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년 등 고용불안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 산업화사회에 따른 절대 일자리 수 감소, 기업의 경력자·임시직 선호로 직업의 질 저하, 열정페이 요구 등 청년층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미흡
 - － 높은 청년실업률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 필요
 - ▶ 중앙-지방 협업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법제정을 통한 지원토대 마련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 시급
 - － 아동기 기본소득 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필요
 - ▶ '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24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 － 생산가능인구의 고용·경제적 불안정이 쏠세대로 확대 우려
 - ▶ 고용불안 → 소비·투자위축 → 불황 → 국가재정악화 → 공공부조 재정악화

□ 건의사항

- ① 우리시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세금 부담 가중과 근로의욕 저하, 現사회 보장제도의 축소 등에 대해 시민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 이상향적인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존재하나, 現사회보장제도와 조화, 재원조달 방안 등 현실적인 어려움 상존
- ② **‘생애주기별로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필요**
 -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에 수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구학적·생애주기별 보편수당의 확대
 - ▶ 아동기(아동수당), 청년기(청년수당), 노년기(노인기초연금) 등 근로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강화

구분	건의사항
아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기 기본소득 보전을 위해 아동수당 신설(가정양육수당 + 한부모수당 ⇒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미만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내외로 수당 지급 (단, 아동 수에 따라 차등지급) • 기존 가족양육수당(10~20만원), 한부모 아동양육비(12만원) 등을 아동수당으로 통합 지원
청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II(청년)을 분리 후, 현금지원을 포함한 사업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중 청년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목표로 즉각적 초기개입을 위한 청년특화 지원 사업 필요 ▶ EU 등 해외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한국형 청년정책 기본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등 청년기본정책을 위한 단일법령 제정 • 효과적 정책이행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및 민간지원체계 정비
어르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기초연금 지급보장(생계비 소득산정제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고려, 추가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부담 • 서울시 기준, 65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16.12월) 77천명에게 월 204,010원 지원시 연간 1,895억원 추가 소요

〈 관련 입법 동향 〉

- ① 아동분야
 -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발의(‘16.10.7,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아동수당 지급
 -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 0~23개월 영아의 경우는 현행 가정양육수당 15~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4~35개월의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

〈 관련 입법 동향 〉

- ▷ 아동수당 30만원 도입(국민의당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 만 6세에서 12세까지 월 3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260만명, 연 9조 2천억원)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17.1.11,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② 청년분야
 - ▷ 청년기본소득법안 발의('17.1.31,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 ▷ 청년기본법안(이원욱의원('16.8.24), 신보라 의원('16.5.30))

□ 관련 법령 개정(안)

〈 ① 아동 분야 〉

- 법령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 지급관련)
- 취지 및 목적
 -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를 위해 0세 이상 18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2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14조의2(아동수당) ① 국가는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0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아동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청년분야 〉

- 법령명 : 청년기본소득법안 제정(김부겸의원 대표발의)
- 취지 및 목적
 -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 주요내용
 -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루 있도록 청년기본소득액 지급

〈 ③ 어르신분야 〉

- 법령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초연금 지급보장관련)
- 취지 및 목적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42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기초연금법」 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해소
- 주요내용
 - 현재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생활조정수당 등은 현재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무기여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 역시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및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 마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③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연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제외한다.</u>

8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교육부)

□ 현황 및 실태

○ 소득수준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

– 세계 2위(1위 미국)로 비싼 등록금,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 1위

※ 출처 : 2015년 OECD 교육지표 중, 학비상위 3개국

국가명	등록금		1인당 GDP ^(14년 기준)	GDP 대비 등록금 부담율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미 국	22,189달러	8,202달러	54,679달러	40.58%	15.00%
한 국	8,554달러	5,152달러	28,739달러	29.76%	17.92%
일 본	8,263달러	4,773달러	37,540달러	22.01%	12.71%

▶ 고등교육비 「정부 : 민간 부담 비율」이 OECD 평균은 8:2이나, 우리나라는 3:7임.

– 등록금 이외에도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주거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추가 소요

○ 학자금 대출 규모 지속 증가 및 청년 실업과 맞물려 학자금 미상환자 급증

▶ 학자금 대출 규모 : 2조 4,189억원('12) → 3조 1,964조('15)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7.2배 급증 : 1,104명('12) → 7,912명('15), 통계청

○ 정부는 대학등록금 총 14조원('11년 기준) 중, 7조원의 장학금으로 '명목상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나, 등록금 부담 여전(교육부 보도자료, '16. 2.16)

– 저소득층(기초, 차상위)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생들은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연간 국공립 151만원, 사립대 474만원으로 여전히 반값 이상 부담

※ 대학등록금 총 14조원 = 장학금 7.1조원(정부4+대학3.1) + 학생·학부형6.9조원

– 국가장학금의 받는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1.5%('15.2학기)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반값 이상을 지원 받는 학생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많지 않음

대학생들의 요구

○ 대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1위 취업, 2위 비싼 등록금으로 국가장학금 제도 등으로 등록금 부담률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 ('15년, 대학생연합 설문조사 中)

○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온지 10년째”로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2만명”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16.10.7. 고려대 등 서울시내 총학생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中)

작성 자 | 조직담당관 : 김정호 ☎2133-6720 | 시정연구팀장 : 구재성 ☎6740 | 담당 : 이은희 ☎6746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실질적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규정(제11조)은 등록금 인상 억제 효과는 있으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없음.
 - 정부의 소득 수준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명목상 반값등록금은 장학금 7조원 중, 4조원만 정부 부담이고 3조원은 대학 부담으로 대학의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
- 국공립대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책무 담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
 -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치는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의 연간 800~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서울시 추진 현황

- '12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연간 등록금을 204만원('16, 인문사회계열 기준) 수준으로 낮추어 서울지역 사립대의 1/3수준
 - ▶ 서울대 4,975천원/년, 고려대 7,151천원/년, 연세대 8,074천원/년(인문사회계열, 16년)
- 실질 등록금 50% 인하로 학생·학부모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규모 '11년 31억원(1,489명) → '15년 4억원(369명) 수준으로 감소

□ 건의사항

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 재정 확보의 제도적 장치 마련

- '17년 국가장학금 예산 동결에서 보듯이, 제도적 장치 없이 매년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등록금 인하에 따른 보전 등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불투명하므로 안정적 고등교육 투자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GDP 대비 1.1%) 제도 마련

② 정부가 지역여건, 교육여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기준액과 그에 따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여 사립대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

- 등록금 상한 기준액을 중위소득 월액('17년 기준 447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검토
- 등록금 상한제로 감소한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은 확충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확보

③ 저소득층을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록금 부담 제로화 및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책 마련

〈 관련 입법 동향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 2004610, 서영교 의원 등 10인, '16.12.26.제안)
 - 정부가 지역여건, 교육여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의 기준액 및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
 -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안번호 : 2004609, 서영교 의원 등 10인, '16.12.26.제안)
 -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등록금 해결을 위해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정 추진
- ※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규모는 GDP대비 0.7%수준으로 OECD평균 1.1%에 못미침('13년 기준)

9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사무 역할 재정립 (보건복지부)

□ 현황 및 실태

- 복지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조건의 기본적인 복지를 누려야 함에도,
 -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인해 자치단체간 복지 불균형 발생
 - ▶ 〈노숙인 1인당 예산〉 서울시 13백만원 vs 대구시 9백만원
 - ▶ 〈고교생 무상급식〉 서울시 외 5개 지자체 지원 vs 인천시 외 10개 지자체 미지원(개인부담)
- 복지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복지대상자의 이동·집중화
 - ▶ 노숙인 지원이 많은 서울시로 노숙인 집중 (서울 3,708명 vs 대구 1,197명)
-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없는 복지사업 지방이양은 재정 부담 가중 ('05~'14)

(2014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 행		이양 전 국고보조 적용시		추가부담액 (A-B)
	분권교부세	지방비(A)	국비	지방비(B)	
922,309	128,398 (13.9%)	793,911 (86.1%)	415,633 (45.1%)	506,676 (54.9%)	287,235

* '14년 기준 지방이양 이전('04년) 국비 지원율(45.1%) 대비 분권교부세 비율(13.9%) 감소하여 서울시 2,782억원 추가부담(총사업비의 86.1% 서울시 부담)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동등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 필요
- 확대되는 복지 수요를 지방정부에게만으로도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매칭시비 및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서울시 재정부담 가중〉

- ▶ 정부 국고보조 사업 증가에 따른 국비매칭 시비 부담 증가
 - 지방세 : 1조 4,861억원 증가('12년 12조 6,397억원 → '16년 14조 1,258억원)
 - 매칭시비 : 1조 6,632억원 증가('12년 1조 8,552억원 → '16년 3조 5,184억원)
- ▶ 최근 4년간('13~'16년) 시 예산 평균증가율은 4.9%인 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12.2%

작성 자 | 복지정책과장 : 신중우 ☎2133-7310 | 복지정책팀장 : 조영창 ☎7312 | 담당 : 이광훈 ☎7325

□ 건의사항

① <복지사무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 중앙은 큰 틀 / 지방은 틈새 복지수요 발굴

- <중앙> : 1) 전국 **공통적인 복지의 큰 틀과 기준** 마련

2) 시대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를 반영한 **지방의 신규 우수사업 전국 확산**

▶ (서울시) 50+세대 지원사업 시범실시 → 중앙정부 건의 → (중앙정부) 전국확대 및 국비지원

- <지방> : **중앙에서 여건상 챙기지 못하는 틈새 복지수요와 신규 복지수요 발굴**

② <2005년 지방이양 복지사업 67개 중앙 환원> -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

-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전국적·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

※ 참고 2005년 지방이양 복지사업 목록

구분	산정항목	대 상 사 업
경상적 수요 (51)	노인복지비 (10)	경로당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운영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노인복지회관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당활성화
	장애인복지비 (18)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장애인 체육관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그밖의 복지비 (22)	아동시설 운영 결식아동급식 가정위탁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모자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업무부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노숙자 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공공보건인력개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비 (1)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비경상적 수요 (16)	일반수요 (8)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공보건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특정수요 (8)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현황 및 실태

- 장애유형별로 다른 욕구 폭발을 임시방편으로 대응, 장애인 복지 예산의 총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형별로 불만이 누적
 - 5년간 서울시 장애인예산 총 70% 증가 : 3,742억원('11) ⇒ 6,361억원('16)
 - 지난 2년간 연속되는 유형별 단체 시위로 해당분야 예산 총 200억원 증가
-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장애인 지원계획 부재로 집단행동 유발



저상버스설치시위 ('16.6)



발달장애인 지원 촉구 삭발 투쟁('16.6)



활동보조 확대 농성 ('15.12)



탈시설 촉구 농성 ('15.8)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가족 중 장애인(발달) 1인 발생 시 평균 13시간 돌봄 전담
⇒ 생업 포기, 심리적 갈등 등으로 가족 해체의 위기에 내몰림

▶ 자립생활 보장으로 돌봄 부담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장기·체계적 국가 책임제 실현

- 부족한 돌봄 복지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 가중
 - 주돌봄 부담자가 부모인 경우 : 발달장애 68.8%, 자폐성장애인 91.2%
 - 발달장애인 가족 중 기초수급가구 24%로 서울시 전체 가구 3.9%에 비해 6.3배 높음
 - 이혼 사유가 장애 자녀인 비율(별거) 7.1% (장애인 18세 미만 부모의 경우 10.7%)
-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미흡
 - 장애인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로 전체 인구(66%)의 절반에 불과
 - 시설 수급 위주 전달체계로 인해 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반면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건의사항

국가 차원의 “장애인 자립·돌봄 보장 체계” 도입

①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유사한 새로운 사회보험 방식 보장 체계 구축

- 장애인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시 전국적으로 현행보다 4조원 추가 예산 필요
- 필요한 추가 예산은 건강보험, 복권기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한 후 기금으로 적립

② 당사자주도 서비스 선택후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총량제” 도입

-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후 신청
- 국가(비용부담자)는 신청된 ‘개인별 서비스 총량제’를 심사·승인 후 총량 지원

③ 복지지출이 일자리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서비스 인력 양성

- 재활, 교육, 돌봄 등 확대된 서비스수행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자격제도 등) 확립
 - ▶ 재정 지출이 연 4조원 늘어남에 따라 연간 88.9만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지출 1조당 약22.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관련 입법 동향 〉

-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 양승조 의원(더불어, 충남 천안시병) 대표발의, 현재 소관위 심사 중
- ▷ 장애인 기금 조성, 장애인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표준소득보장 금액 지급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

1 「원전하나줄이기」 전국화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및 실태

- 에너지사용량의 지속적 증가로 자원의 고갈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의한 기후변화 가속 우려

▶ 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5.에너지경제연구원)

(단위 : 천TOE)

구 분	'10	'11	'12	'13	'14	'15
최종 에너지 소 비 량	195,587	205,863	208,120	210,247	213,870	218,608
신재생에너지 생 산 량	6,856	7,583	8,850	9,879	11,537	13,292

-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질적 에너지사용량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수단이 필요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경기도 “에너지비전2030”, 충청남도 “2020 지역에너지종합계획”, 제주도 “2030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등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원전하나줄이기」 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효율화, 절약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원전하나줄이기 단위사업 현황

분 야	계	에너지 분산형 생산	효율적 저소비구조	좋은 에너지 일자리	에너지 나눔공동체
과제 수	23	5	9	4	5
단위사업	88	19	34	17	18
세부사업	103	20	48	17	18

- 「원전하나줄이기」 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전국적 에너지생산·소비시스템의 효율화구조 구축
 - 지역별 적정 사업의 선별적 추진, 전국적 고효율 에너지시스템 조성 유도

작성 자

환경정책과 : 정환중 ☎2133-3510 원전총괄팀장 : 김성연 ☎3523 담당 : 노정현 ☎3254

□ 건의사항

- ① **우수 에너지정책의 공유와 지역간 협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에너지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내실화 도모
 - 지방자치단체 참여 에너지정책사업 발굴 및 확산으로 정책효과 제고
 - 지역별 활용 가능한 요소들을 조합한 지방자치단체간 에너지협력사업 유도

- ②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매뉴얼 전국적 보급, 정책수용성 확대**
 - 지역별 정책의 선별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매뉴얼” 전국 보급 및 확산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체 제작 중('17.3월 ~ '17.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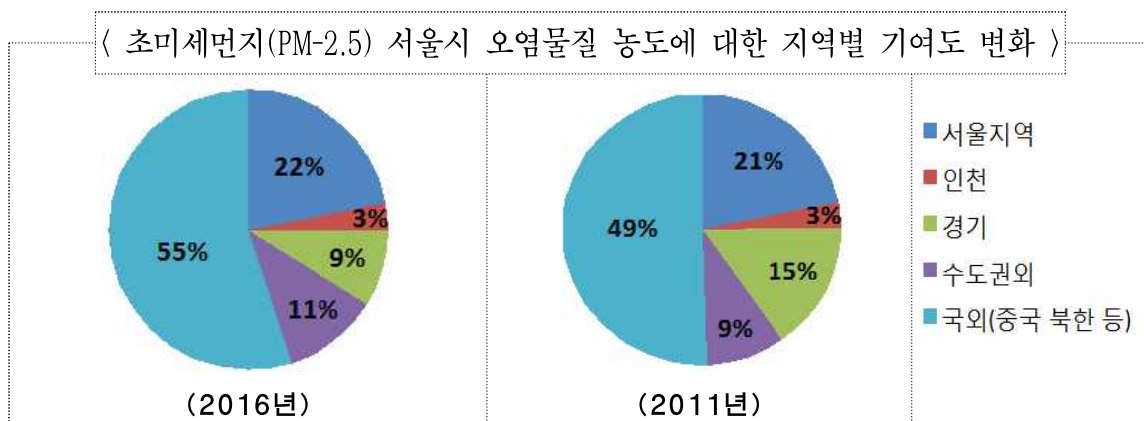
2 수도권 외 지역 대기오염 영향권역 지정

(환경부)

□ 현황 및 실태

-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제정)이 제정·운영 중
 -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 등 규정
- 수도권 외 타지역에서 수도권에 미치는 대기환경 영향이 증가 추세에 있어 수도권 외 지역 오염원 관리 절실
 - － 서울지역 대기질에 미치는 지역별 기여도 분석결과 수도권외 지역비율이 2011년 9%에서 2016년 11%로 증가
 - － 특히, 충청도 지역 소재 화력발전소의 수도권 대기오염 기여율¹⁾은 미세먼지(PM-10) 3~21%, 초미세먼지(PM-2.5) 4~28% 로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 마련 필요(2016. 5월 감사원 지적사항)

※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기여율²⁾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수도권 외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수도권 영향권역의 대기질 관리강화 필요

작성 자 대기관리과장 : 정미선 ☎ 2133-3630 대기개선팀장 : 이병철 ☎ 3632 담당 : 박동순 ☎ 3633

1) 자료출처 : 충남지역 대규모 점오염원의 초미세먼지 기여도 분석, 아주대 김순태, 2016
2) 자료출처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서울시 2016년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나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도권 외 “영향권역”을 지정하여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함
- 대기환경오염원은 일정권역에서만 한정하여 관리하기에는 대기환경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에 대해 관리영역을 확대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령이 필요함

□ 건의사항

- ①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강원, 충청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을 “영향권역”으로 지정
- ②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위반 시 총량초과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 화력발전 배출 감축규제기준 마련
 - 수도권 대기질 관련 연구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외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영향권역”으로 지정
- ③ 수도권 외 “영향권역”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감축효과 도모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취지 및 목적 : 강원, 충청 등 수도권 외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관리영역 확대
- 주요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정의)에 “영향지역”의 정의 조항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p> <p>1.~ .6.(생 략)</p> <p>7.(신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p> <p>1 ~ 6.(현행과 같음)</p> <p>7. <u>“영향권역”이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u></p>

3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환경부)

□ 현황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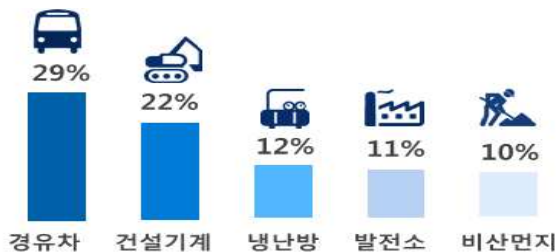
-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오염원으로 먼지관리가 특히 중요하나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내용에는 노후되어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규제 조치가 없음**

— 현행 건설공사장(1,000㎡ 이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정별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는 규정만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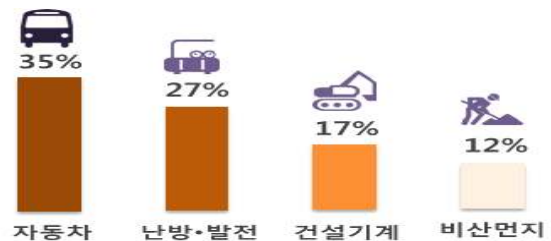
-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2%로 경유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건설기계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

➔ 자동차 등 연소과정에서 배출영향이 크므로 ‘경유차, 건설기계 등’ 관리 필요



*기타 배출원: 사업장 9%, 생물성연소 5%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13 국립환경과학원 < 수도권 기여율 >



*기타 배출원: 생물성연소 7%, 자연배출 2%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 '11년 안양대·수원대 합동 < 서울시 기여율 >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사장 평가 내용에 노후 건설기계 반입을 자제토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는 미흡**

작성 자 대기관리과장 : 정미선 ☎ 2133-3630 저공해사업팀장 : 황태익 ☎ 3649 담당 : 정충구 ☎ 3651

- 현행법령으로는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 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에 관한 계약조건을 반영’ 할 예정이나(17년 상반기 시행)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에만 한정되어 전반적인 건설기계에 대한 규제에 한계
- 2019년까지는 서울시 공공부문 건설공사장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긴 하나 민간부문 건설공사장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규정마련이 시급

건의사항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의
저공해화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의무 이행하도록 강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저공해조치 이행 의무화 조항 신설

관련 법령 개정(안)

- 법 령 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취지 및 목적 :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조치 의무규정 신설
- 주요내용
 - 비산먼지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의 저공해화
조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의무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10.(생략)	(생략)	1.~10.(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그 밖에 공정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축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라.(현행과 같음) <u>마. (신설)</u>	11.그 밖에 공정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축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라.(현행과 같음) <u>마.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축물해체공사장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저공해화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u>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

1

공공임대주택을 OECD 이상(재고비율8%) 이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 현황 및 실태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
 - 소득양극화, 고령화 등 1~2인가구 증가에 따라 저렴주택 확대필요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은 저성장시대에 더욱 중요
- 철도·유수지 등 극히 제한된 공공시설부지(사실상 국유지)에 대해서만 **공공주택사업시 법적 상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특례 적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부지
: 제40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로 한정
- 호당 평균 매입가격(2억 원) 대비 국비보조 및 기금융자 비율(약 40%), **표준건축비 인상('16년 5%) 등에 따라 재정부담 지속 증가**
 - ※ 재원부족으로 '15~'17년 주택도시기금 3,346억 원 차입 및 이자 부담 중
-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수행해야할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임에도 **각종 규제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
 - 투자심사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사업추진 지연
 - 관련법상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작성자 임대주택과장 : 임인구 ☎2133-7050 임대계획팀장 : 최원석 ☎7057 담당 : 이화섭 ☎7058

□ 건의사항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확충〉

- ①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위한 용적률 완화
 - 법령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
 - (도정법)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함
 - (국계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함
 - 기대효과 : 공공재정 투입없이 임대주택 확보
- ② 임대주택 복합화 사업 확대를 위한 용적률 등 완화
 - 법령명 : 공공주택 특별법
 - 취지 및 목적
 - 노후 공공건물 부지 등에서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복합화 사업 활성화
 - 노후 공공건물 신축시 임대주택 복합개발을 통한 지자체 재정부담 최소화
 - 주요내용
 - 지자체 공유재산상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용적률 등 완화 적용토록 개정
 - 기대효과 : 도심내 소규모 공유지 활용한 자발적 행복주택 활성화
- ③ 역세권 지역 청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법령명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취지 및 목적
 - 역세권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필요 시 무주차 건물 건립)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통해 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시 기금·보조금 지원 현실화〉

① 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 현실화

- 법령명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제2항
- 주요내용 : 매입사업 확대를 위해서 서울지역의 국고지원금 상향
 - 현행 정액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지역별 매입금액 차이를 반영하여 정률 지원으로 변경
 - 서울지역 국고지원금은 경기도의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최소 75% (호당 180백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②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지원

- 커뮤니티 시설 설치비 지원
 - ▶ 영구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노인 가구 증가로 주택을 경로당으로 변경 필요 증가
 - ▶ 시설 개선비 및 주택 변경에 따른 임대료 지원 필요하며, 노후 시설 개선시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등 리모델링 필요
-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시설지원비 현실화

〈규제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임대주택 공급〉

① 공공주택사업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배제(조항 신설)

- 법령명 : 공공주택 특별법
-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 건립절차 간소화로 원활한 공급 유도
 -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투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용 배제토록 개정

② 장기안심주택 제3자 선순위 대항력 인정

- 법령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요내용 : 주택도시기금외 지자체 재원도 선순위 대항력 확보
 - 지자체 재원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는 사업도 대항력이 인정되게 개정

2 지방정부 협업 강화를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국토교통부)

□ 현황 및 실태

○ 민간전월세 주택 세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전국대비 서울의 저소득층이 민간임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전국 : 자가(54%) 대비 전월세(46%)

▶ 서울 : 자가(40%) 대비 전월세(60%)

⇒ 특히,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의 전월세 비중은 70.3% 차지

○ 세입자와 임대인간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미흡하고 증가하는 전월세 비중에 비해 세입자 보호관련 제도는 미비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제 주거비는 지역별 전세가격 및 주택수급 상황·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역별 사정에 맞는 **전월세시장 즉시 대응체계 강화 필요**

○ 노숙인,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복지영역의 탈시설화 흐름에 따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모델인 ‘지원주택’의 필요성 지속 제기

- 기존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사회적 경제 주체의 영세성, 토지담보력 부재 등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에 제한

- 서울시는 자체 정책자금인 사회투자기금을 활용, 사회주택에 융자 중이나, 100억원 규모의 단기(5년)상환으로 주택(건축)자금으로 부적합
- 반면,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은 임대료 제한이 없지만 택지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외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

작성자 주택정책과장 : 송호재 ☎2133-7010 주택정책팀장 : 송광남 ☎7012 담당 : 김태진 ☎7019

□ 건의사항

〈지역맞춤형 전월세 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

- ① 전월세주택의 표준적정임대료 수준 공시권한 지방에 부여
 - 표준적정임대료 정보 정기 공시, 전월세가격의 적정수준 사전 인지 필요
 - 계약당사자가 전월세 가격의 적정수준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여 사후적 분쟁 발생 및 규제를 최소화
- ②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의 지방 이양
 - 지역별 주택 공급 및 멸실량의 추정 등을 통해 전세난(역전세난) 예측
 - 신규주택의 초기전세가격 및 가격 상승률의 상한 제어
 - 현행 월차임산정률 및 보증금 증액상한률 수준의 시도 결정권 부여
- ③ 가격 안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제도로서의 시장작동을 위한 제재조항 신설
 - 사전적 표준적정임대료의 공시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거래 적발시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 ④ 순수월세 시장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월세신고제 의무화 추진
 - 현행 실거래 신고제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순수월세 시장에 대한 계약자료 신고를 의무화,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수립의 기본 구축

〈지역밀착형 지원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기금·보조금 지원〉

- ① 지원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
 - 법령명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공특별 시행령) 지원주택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운영방법 및 절차는 시행규칙 및 지침(또는 조례)에 위임
(주택건설기준) 입주자의 특성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커뮤니티 시설 건립

② 사회주택공급시 주택도시기금 지원

- 법령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주요내용 : 사회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택지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 공공토지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특례조항 마련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준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세입자 권익강화를 위해 임차인 단체 지원〉

- ① 세입자 단체(협회) 구성을 장려하고, 활동 지원을 통해 세입자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지원 근거 명시
 - 관련 법에 선언적 의미로라도 세입자 단체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설립과 운영목표 제시
- ② 세입자 단체에 법적 자문, 전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설립·운영에 정부 지원의 근거 마련

〈저소득 세입자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바우처 전면 실시〉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17년 1인가구 1,652,931원) 43%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 세입자 가구(약 10만가구) 지원을 위해 주택바우처 지원 필요
 - 서울시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약 1만가구를 대상으로 월 5~7.5만원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사업 실시중

□ 현황 및 실태

-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각종 지방세 부담 등을 통해 국가공기업인 LH와 차별적으로 규제하여 지방자치제, 지방분권화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특히, 임대사업 비중이 많고 사업규모가 큰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기존주택 매입시 LH와 지방세 부담 등 차별
 - 기존주택 매입시 지방세 부담

구분	지방공기업(SH)	국가공기업(LH)	비고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감면(50%)	적용법규는 다르지만 차별없음
재산세	감면조항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감면(50%)	차별

- 공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시 취득세 부담

구분	지방공기업(SH)	국가공기업(LH)
현물출자	면제 조항 없음 (적용 : 공유재산법)	취득세 면제 (적용 : 국유재산법)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실시
 - LH공사 등은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 총사업비의 범위가 크고, 심사 제외 가능
 - ▶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1,000억원, 공공기관 부담금액 500억원 이상
 - ▶ 예비타당성 제외: 공익목적 또는 국가 정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제외
- 임대주택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공기업간에 상이한 반면, 내용연수 변경이 불가능하여 제약규정인 지방공기업 시행규칙의 합리적 개정 필요
 - LH공사 50년, 대전도시공사 50년, 경기, 인천, 부산도시공사 40년, SH공사 30년
- 현행 공사채 발행승인기준이 국가공기업(LH)과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여, 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있어 규제의 합리적 완화가 요구됨

작성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획조정처장: 조한보 ☎3410-7011 미래전략부장: 천성희 ☎7056 담당: 김현대 ☎7057
담당: 문상만 ☎7059

□ 건의사항

〈지방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철폐〉

- ① 기존주택 매입 및 현물출자시 재산세 부담 차별 해소
 - 법령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지 및 목적
 - 주요내용 : 조세 부담 완화 및 LH와의 세부담 불균형 해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개정하여 기존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1호 개정하여 현물출자 취득세 면제

-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선
 - 서민 주거안정과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지표 개선
 -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추진을 위해 경영평가지 패널티제도 개선 필요
 -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장기사업추진 제고를 위한 지표 개선
 - 단기채무의 장기차입금 전환 및 현금성 자산의 과다보유를 유도하고 있는 현행 제도 개선

- ③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대상 기준 완화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의 신규 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을 LH공사 등 국가공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 ④ 지방공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사유 개정
 - 지방공기업이 준수해야 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기재된 정당한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시행규칙에 추가신설

- ⑤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 개선
 - 지방공사채 발행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
 - 사채 발행한도, 임대보증금 부채비율 제외, 부채비율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맞춤형 정책 실현의 역할 강화〉

① 주거급여 조사기관 확대

- 지역단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이 가능토록 지방에 주거조사 권한 이양
 - 주거급여법상 주택조사를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바, 현재 LH공사에만 부여되고 있는 조사 권한을 타 기관에도 확대 추진

② 지방공기업의 임대주택리츠 AMC(자산관리회사) 경영 허용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업 경영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제3항 제2호 개정
- 리츠 주택건설사업시 자산관리회사인 지방공사에서도 자체 감리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 병행

③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

- 수선상태를 ‘선 진단 후 수선’하는 방식에서의 수선체계 개편
 - 입주자 계약시점, 커뮤니티 시설 희망용도 수요조사 시행 제도화
 - ▶ 수요조사 내용 : 시설정보(면적, 위치, 단지특성), 희망사용 시설 및 용도
 - 기존 관리규약에 ‘커뮤니티 시설 표준관리규약’항목 신설

④ 민간임대특별법 임대사업자로 지방공사 참여

- 민간주도의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사업자 (SH공사 등)의 참여 제한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실질적 민간 지원방안 마련

**도시재생으로
도심활력 제고**

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 현황 및 실태

- 최근 4년간 서울시 도시재생 투자액 대비 **국비 지원비율 4%에 불과**
 - 주택도시기금('15.7. 개편) 도시계정 비율 총 사업비의 0.2~ 0.3%에 불과, 지방자치단체 대상 융자상품 부재
 -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부득이 국공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해 양여 등 확보 어려움**
- 서울시는 지역특성상 공사비,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도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10%로 낮고 지원대상을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 한정
 - 기반시설 공사비 기준단가를 2010년 기준으로 일률적 적용
-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추진위·조합의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비용에 대해 국고 미지원**
 - 특히 조합 사용비용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지자체 재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국고지원이 필수적임

□ 건의사항

〈도시재생 지원규모 확대 및 재생기금 설치근거 마련〉

- ①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도시재생 지원규모 및 범위 확대
 -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계정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역시 민간부동산투자회사 외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다양한 상품개발
 - 도시재생 초기 공공지원의 중요성을 인식, 사업계획 준비과정에서부터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도시재생 기능 확대

작성 자	재생정책과장 : 여장권 ☎2133-8608	재생기반팀장 : 백광진 ☎ 8624	담당 : 박민구 ☎ 8636
	주거재생과장 : 국승열 ☎2133-7155	주거재생정책팀장 : 김창규 ☎ 7164	담당 : 이승우 ☎ 7183
	주거사업과 : 박기범 ☎2133-7210	주거사업총괄팀장 : 윤옥광 ☎7216	담당 : 장길홍 ☎7217
	재생협력과 : 진경식 ☎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 고현정 ☎7205	담당 : 이원규 ☎7206

② 도시재생기금 설치근거 명시 등 재원확보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재원구조와 운용특성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외 도시재생기금의 설치근거 명시, 지자체 여건에 따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확보토록 관련법령 개정
 - ▶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특별회계와 선택적·병존적 설치근거 마련
 - ▶ (재원)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배분기준에 관한 관련법령 개정
 - 과밀부담금 → 국가(지특회계) 귀속분 이관
 - 국·공유지 매각대금 → 새로운 재원으로 편입

③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시 국공유지 무상양여 규정 신설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비 지원 확대〉

① 기반시설의 국고 보조금 지원 비율 조정 및 대상 확대 관련 도축 법령 개정

- 국비 지원비율 확대 : 10~50% → 30~70%
- 국비 지원대상 확대 : 도로, 공원, 주차장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추가

② 실제 설계단가 적용을 위한 지침개정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국비 지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도정법 제16조의2 개정 건의

□ 현황 및 실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실제적 인센티브 부족 → 대부분 공공예산 투입
 - 한정된 공공예산으로 민간부문 참여 등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등 한계 발생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도시재생법에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사항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해당 법령에 규정이 없어 적용불가
- 건축규제 완화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과 차이가 없으며, 저층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건폐율 완화 등 필요

-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법제화의 틀이 마련되었으나, 기반시설 비용 부담 및 의사결정 지연으로 활성화에 장애
 - 사업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체를 주민(20세대 미만)이 부담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또한 의사결정시 주민동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 행정절차 복잡
- 집수리(보수) 공사는 신축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영세한 공사업체간 틈새 시장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상거래 시행
 - 전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건설한 업체는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신축 공사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집수리(보수) 공사는 부가세 과세
 - 업체 미등록 등으로 현황 파악(약 1만2천개 추정(붙임1) 전화번호부 등재기준) 및 관리·지원 한계
 - 공사계약 미체결 및 A/S 미흡, 하자 발생 등으로 불만 초래하고 있어 부가세 면제요건을 완화하여 집수리(보수)업체 양성화 유도

작성 자

재생정책과장 : 여장권 ☎2133-8608	재생전략팀장 : 한희진 ☎ 8619	담당 : 김중현 ☎ 8635
재생사업기획처장 : 조준배 ☎3410-7317	저층주거지원부장 : 이원철 ☎7330	담당 : 윤현호 ☎7333
주거환경개선과장 : 유철호 ☎2133-7240	주거환경사업팀장 : 김지환 ☎ 7253	담당 : 이동호 ☎ 7257

□ 건의사항

<지역특성과 재생사업 유형 등을 고려한 현실적 규제완화 추진>

①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근거규정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지방세특례의 제한)
<p>제3조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p> <p>1. 소득세법</p> <p>.</p> <p>25. 종합부동산 세법</p> <p>26. 도시재생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신설)</p>	<p>제4조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p> <p>·지방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 3년 이내 한시 적용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p> <p>*도시재생을 위한 지원항목(신설)</p>

② 부담금 감면·면제 조항 신설

- ▶ 도시재생특별법에 개별부담금을 직접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부담금 면제 관련 유사법률(참고)

도시재생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p>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③ 건축규제 완화

- ▶ 건폐율 완화

<p>- 건폐율 완화 범위 : 확대 (일반주거지역)</p> <p>→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을 넘을 수 있도록 변경</p> <p>- 완화조건 : 도시재생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완화 조건 제시 필요</p>

- ▶ 용적률 완화

<p>- 용적률 완화 자체로는 실효성이 낮음(조례 기준 초과, 부설주차장 확보 불가 건축물 다수 분포)</p> <p>→ 도로(4m)확보, 일조권,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소규모 블록건축과 함께 검토 필요</p>

-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p>- 주차장 기준 완화는 공용주차장 건설 시에만 적용가능</p> <p>-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설치 기준 완화 : 주거환경 악화 및 주차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p> <p>- 공용주차장에 대한 공공지원, 공공/민간협력, 민간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모델 개발</p>

○ **사용·수익허가 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개정**

- 민간이 공공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 행정재산 : 공유재산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일반재산 : 공유재산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수익계약 시 공공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참여 유도

▶ 수익계약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인센티브 지원〉

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주민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 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주민 스스로 도로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

② **주민합의체의 법인격 부여 또는 조합구성에 대한 자율성 부여**

- 토지등소유자가 다수(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합의체도 조합성격의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또는 조합원이 원할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 부여가 필요

〈집수리 보수공사 부가세 면제〉

-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받은 자 또는 법인세법
사업자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집수리(기존건축물 보수)
공사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황 및 실태

○ 주민역량강화 사전단계 법제화 필요

- 주민의 공감대 및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성화구역을 지정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계획수립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활성화사업이 지연됨
- 이에 서울시는 구역지정전 준비단계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지사업을 '16년부터 운영으로 금번 2단계 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주민참여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주민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에 차질이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주민설명회 등이 중단되어 사업에 차질** 발생

< 공직선거관리법 위반대상 정리 >

-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법령에 의하지 않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 불특정 다수를 대상,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 등은 위반대상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마중물사업이후 주민 자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운영·관리해 나가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며, 사실상 **도시재생의 최종성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주민자력재생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일명 : 지역재생기업(CRC))에 대한 **법령, 연구, 지원제도 등이 현재 없는 실정**이며,
-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상 “마을기업”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지침”에 따른 “마을기업”과 동일한 명칭으로 차별성이 없어 혼돈을 주고 있음

작성 자

주거재생과장 : 국승열 ☎ 2133-7155 주거재생정책팀장 : 김창규 ☎ 7164 담당 : 이승우 ☎ 7183

마을기업육성사업지침상 “마을기업”	도시재생특별법상 “마을기업”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u>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u>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u>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u> 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u>생활환경을 개선</u> 하고 <u>지역공동체를 활성화</u> 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 건의사항

① 도시재생활성화법에 활성화구역 지정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이 가능한 규정 신설

- ▶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성상 사전 주민역량 강화가 필수이며,
- ▶ 또한 주민역량강화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공동체 유지 및 도시재생 공감대확산이 가능함

【신구조문대비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 행	개 정 안
법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법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 또는 <u>도시재생활성지역 지정이전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공동체활성화 사업</u> 은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② 지역재생기업관련 법령, 지원제도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재생기업”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 지원제도 마련**
- ※ 지원(예) : 공공기관 우선구매시 가점,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지원, 세제지원** 등

- 지역재생기업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차별화
 - ▶ 우선 도시재생특별법의 “마을기업”에 대한 별도 명칭 제정 필요

【도시재생특별법상 “마을기업”이 포함된 내용 현황】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4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제도 마련 (교육부)

□ 대학 현황

- (지역-대학) 대학의 물리적 확장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상충
 - 대학 내 상업시설, 기숙사 증설로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와 결부되어 갈등
- (지역-학생) 대학가 고유의 문화 부재
 - 대학 내 편의시설 이용 및 취업경쟁으로 지역에서 대학만의 문화 향유하는 여유 실종
- (학생) 취업난과 늘어나는 학비 부담, 대학주거 불안정
 - 청년실업률 : 9.8%(‘16년 기준 / 전체 실업률 3.7%의 2배)
 - 서울 기숙사 수용률 : 13.8% / 평균보증금 1,418만원, 월세 48만원(‘15년 기준)
- (대학-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절벽으로 대학 입학정원 감축
 - 고교 졸업생 추이 : ‘13년 56만 → ’23년 40만(16만명 감소)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사상최대 청년 실업률(16년 기준 9.8%), 주거불안정, 대학생 졸업유예, 대학문화 쇠퇴 등 대학가의 청년문제와 지역의 활력 침체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됨.
-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학의 창의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 핵심목표 : [창업육성] +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행(‘16년~25년 / 60개소 / 1,520억 / 공모방식)
- 지역창조형(종합형)·프로그램형(단위사업형) 사업방식 구분 추진
 - ① 지역창조형(종합형) : 대학 클러스터 지역 연계가 강한 대학중심으로 종합적 재생 추진 가능 지역
⇒ 안암동 우선사업 시행(‘16년~19년 / 100억 / 171,290㎡) / 2017년 3개소 선정예정
 - ② 프로그램형(단위사업형) : 대학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학지역 단위사업
⇒ 1단계 13개 사업 시행(‘17년~19년 / 년 5억~10억) / 2단계 17개 사업(‘18년 이후~)

작성 자 캠퍼스추진단장 : 임우진 ☎2133-8424 캠퍼스타운조성팀장 : 장양규 ☎8428 담당 : 김기우 ☎8429

□ 제도개선 방안

① 교육부의 평가제도 개선 :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 대학평가제도 평가지표에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항목 신규 포함

②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유도

⇒ “대학의 사명” 법조항 신설 : 대학은 연구·교육·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을 포함한 법조항 신설

〈 일본사례 〉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지역사회문제에 지자체의 재정적, 인력적 대응한계가 발생하고 대학은 대학생 수 감소에 대한 공부문과 연계한 협력방안 모색 필요

▶ 2005 : 국가정책과제로 선정, 대학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 2006 :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역할 확대**

⇒ 대학의 사명 : (기존)연구,교육 + (신설)지역공헌

▶ 2013~현재 : **국책사업으로 제도화**, 대학-지역사회 협력 보조금 지원
대학-지역 협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개정

③ 중앙정부 차원의 대학의 지역협력 사업 지원

⇒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부분 확대 시행

〈 일본사례 〉

◇ **地(知)의 거점 정비 사업 시행(대학 COC사업)**

▶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인재 육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 등에 기여

▶ **대학당 최대 5,800만엔(5억 5천만원), 최대 5년간 지원**

▶ 2013년 약 217억원, 2014년 약 320억원 지원

※ 대학 COC사업 : Center Of Community

5 도시재생에서 지방공사의 적극적 역할 강화 (국토부 등)

□ 현황 및 실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재생사업의 실행주체로 지방공사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적 한계로 역할 미비

- 지속가능한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 지역기반 재생사업 실행주체 필요
- 민간의 토지를 활용하는 민관협력사업이 증가하지만 토지소유권의 임의적 매각, 담보권 설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부재
- 지방공사의 위탁사업 개발범위를 공유재산으로 한정, 국공유혼재지역등에서는 재생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현행법상 최고가 입찰방식으로만 토지를 매각할 수 있어 현상설계 등을 활용한 창의적인 도시재생기법 적용 곤란
- 정릉스카이 등 소규모 재난 위험지역 정비시 사업성 부족으로 조기 정비 곤란

□ 건의사항

〈지역 재생회사 육성을 위한 중개기관 도입〉

- 지방공사가 중개기관으로서 지역재생회사의 자금조달·이주대책·사업발굴·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 “지역재생회사”란 노후주거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노후주택의 개량·정비사업, 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관리·운영,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노후주거지 재생에 기여하는 주거관련 비영리회사로 정의함

작성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획조정처장: 조한보 ☎3410-7011 미래전략부장: 천성희 ☎7056 담당: 김헌태 ☎7057
담당: 문상만 ☎7059

〈지방공기업에 토지신탁권한 부여〉

- 공익성을 확보한 지주-공사 간 공동시행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이 토지신탁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국유재산, 지방공사 위탁개발 참여 허용〉

- 지방공사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참여 허용토록 국유재산법 개정

〈지방공사 소유토지의 매각방법 다양화〉

- 공사소유 토지 매각 시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의 처분에 한해서 현상설계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추가
 - 개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절차 없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만 수립된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의 처분에 한해 현상설계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추가

〈소규모 재난위험 열악지역 조기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 조합과 공동추진하는 정비사업 공사채발행 허용
 - 재난위험 및 열악지역 재생사업과 같이 사업성은 낮으나 공공 개입의 필요성이 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유지 출자사업 등 사업성 양호한 사업을 매칭하여 추정사업 이익률 산정해서 공사채 발행
- 주택호수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재난위험 주택의 사업성 부족시 국·공유지 무상양여
 - 재난위험 주택 등을 포함한 열악지역의 사업장으로써 비례율이 80%이하인 사업장에 한해 국·공유지 무상양여 필요
- 재난위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상 특별건축구역 적용
 -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적용 대상 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재난위험시설·열악지역에 한해서 규모 제한 규정 배제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현황 및 실태 (공공기여 관련 규정)

- 사전협상제도에 의한 옛.한전부지(현대자동차) 개발에 따른 막대한 공공기여 금액(1조7천억원)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사용하고자 했으나,
- 국토계획법령상 공공기여의 제공범위가 해당 자치구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필요 (자치구 → 市전체)
 - 대규모 부지 개발에 따른 부영향은 자치구 밖까지 광범위하게 미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는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만 가능함
 - 또한, 특별시·광역시 경우 기반시설이 자치구 범위를 넘어 동일 생활권까지 연계되어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市전역까지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필요
- 이와 동시에, 기반시설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구역내 비용납부 및 임대주택, 기숙사 등 공공기여시설 제공 다양화 필요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는 공공기여를 비용으로 제공하지 못해, 사업시기와 기반시설 설치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오히려 기반시설 적기 확보 곤란
 - 공공기여 제공방법이 기반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기반시설 이외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의 확보 곤란

건의사항 : 국토계획법 개정

- 지역균형발전 위해 타 자치구에도 공공기여 활용 가능토록 **국토계획법 개정**
 - ① 특별시·광역시로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해당 자치구 → 서울시 전역)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 허용 (구역 밖은 이미 허용)
 - ③ 기반시설 외 임대주택 등 공공성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 제공 허용

□ 관련 법령 개정(안)

○ 국토계획법 개정(안) 주요내용

- 대규모 부지 개발시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내지 제15호 규정 일부를 법률로써 규정
 - ▶ 대규모 부지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대규모 시설이전지 등

①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자치구→서울시 전역)

- ▶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여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내 기반시설이 확보·사용 근거 마련

② 공공기여 제공방법 확대 (구역내 비용납부 및 임대주택 등 제공 허용)

- ▶ 기반시설 외 공공성 있는 시설의 제공 허용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

7 중소 유휴토지 활용을 통한 지역 중심지 육성 (국토교통부)

□ 현황 및 실태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 1만 m^2 이상 유휴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민간개발(투자)을 통한 활성화가 가능하나, 적용 대상지가 미미한 실정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3호 및 영 제43조 제3항, 영 제45조 제2항
- 1만 m^2 미만 유휴토지 중, 소생활권 중심지 육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고 민간개발(투자)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 지역간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발기회가 상실되는 문제점 발생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1만 m^2 미만 중규모 부지 개발실현으로 소생활권 중심지역 육성 도모
 - 대규모 부지(1만 m^2 이상)에 비해 중규모 부지(5천 m^2 ~1만 m^2)의 개발여건이 억제되어 있어 탄력적 개발곤란(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불가 등)
 - 소생활권 중심지역 육성에 필요한 용도도입과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규모 부지(5천 m^2 ~1만 m^2) 개발실현 근거 필요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 대상 확대필요(1만 m^2 이상→5천 m^2 이상)
 - 중규모 부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이 소유·개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투자기회 상실

□ 건의사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한 면적 확대 : 1만 m^2 이상 → 5천 m^2 이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역 중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면적규정을 현행 1만 m^2 이상에서 5천 m^2 이상으로 확대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취지 및 목적
 - 소생활권 중심지역의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중규모(5천 m^2 이상) 유희토지의 개발여건 완화
- 주요내용
 -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중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를 1만 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5천 m^2 이상으로 개정

8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국무조정실)

□ 현황 및 실태

- 4차 산업혁명의 혁신지·일자리 창출 중심지로서 도시 재부상
 -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산업구조의 틀이 변화되며, 창의적 인재가 모여들고 교류하는 도심형 혁신거점 조성 필요
- 서울시의 세계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기존 공장의 업종 첨단화와 집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서는 동일한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이 가능하나,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지정이 불가함

□ 건의사항

-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으로 첨단지식산업 전문인력 신규 고용 창출(국토교통부)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서울의 첨단지식산업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서울의 제조업 기반회생 및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함
 - 또한,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서울의 산업기반을 견고히 하여 국가 전체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작성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획조정처장: 조한보 ☎3410-7011 미래전략부장: 천성희 ☎7056 담당: 김현대 ☎7057
담당: 문상만 ☎7059

지역개발 현안과제

1

국가개혁공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프로젝트

(청와대, 경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 현황 및 실태

- '09년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거대한 중앙분리대”, “역사성 미흡”이라는 사회적 논란 지속
 - “월대, 해태상” 복원 미흡, 보행 단절로 찾아가기 어려운 광화문광장
- 최근 1,600만 시민의 촛불 문화제를 통해 광장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핵심공간으로 의미 확대
 - 개장후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서울시에서는 시민 중심의 열린 보행광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플랫폼으로 「광화문포럼」을 구성하여 운영 중('16.9.~'17.8.)
 - 역사성, 상징성, 이용성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쟁점 논의 중

〈 광화문포럼 구성 논의 중 〉

- ▷ 역사, 도시, 교통, 건축, 조경, 시민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49인)과 시민그룹을 중심으로 '광화문 포럼(16.9~17.8)'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8월까지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임.
- ▷ 2005년 “광화문역사광장 조성 기본방향(문화재청)”, 2010년 “국가상징거리조성 종합계획(국토교통부+서울시)”을 기 수립한 바 있음.

광장 현황(주간)



광장 현황(야간)



시민 촛불 문화제



작성자 | 역사도심재상과 : 양병현 ☎2133-8485 | 도심정책팀장 : 김용민 ☎8487 | 담당 : 최종구 ☎8489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광화문광장은 600년 역사속에서 제1의 국가 상징공간이었음
 - 경복궁 앞길로서의 육조거리, 3.1운동, 4.19혁명, 2002년 월드컵 응원 등 국가적 민주화 운동 및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
- 최근 촛불민심을 담아낸 광장민주주의 장소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국가 개혁의 핵심공간임
 - 서울시의 광장이 아닌 국가의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광장으로의 발전 필요
- 국가의 역사성과 시민성을 담아내는 광장으로의 재구조화 사업은 국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해야 함
 - 서울시 중심의 논의구조 확대, 국가의 전폭적 지지 필요

□ 건의사항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핵심인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중앙정부 협조
 - (경찰청) 세종대로 및 주변지역 교통개선안에 대한 교통규제심의회가 안되면 사업추진 불가하므로 범정부차원의 협조 필요
 - (청와대) VIP 이동동선 및 경호대책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추진시 행정적 지원
 - (문화재청)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월대복원 및 해태상 이전, 의정부터 복원시에 행정적 지원

2

온전한 용산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도입

(국무조정실)

□ 현황 및 실태

- 그간 용산공원은 단일부처 차원에서 공원설계 중심으로만 추진
 - 용산공원특별법 상 주관부처 국토부, 부처산하 의사결정 기구 설치
- 그간의 과정에서 용산공원 조성관련 근본문제 도출, 이슈화
 - 미군잔류부지 등 국가공원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쪽 공원으로 경계설정
 - 정확한 부지조사, 정보공유, 의견수렴 없는 성급한 공원설계 진행 등
- 단일부처 소극적 대응, 근본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 부재
 - 일방적 공원설계는 중단되었으나, 포럼 등 형식적 의견수렴 확대만 제시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온전한 국가공원조성을 위해서는 공원경계 재설정, 조성 프로세스 재정립 등 범국가 차원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나
- 현행 단일부처 차원 추진체계로는 진정성 있는 근본문제해소 한계
 - 현재 추진체계에서 국토부는 기존 주어진 반쪽경계 내의 공원조성 성과달성 차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

□ 건의사항 : 특별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추진체계 도입

-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용산공원 관련 의사결정기구 설치
 -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단순 공원설계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근본이슈에 대한 논의와 결정, 실질적인 쟁점 조정 실행
- 공원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온전한 공원경계 설정
 - 미군잔류부지, 부처별 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설정된 현재 반쪽짜리 공원 경계를 미래적 관점에서 온전한 공원조성 의지와 상징성을 담아 재설정
- 국민 참여에 기반한 공원조성 추진
 - 투명한 정보공개, 진정성 있는 국민참여 수단과 절차를 통한 조성 의무화

작성 자 | 도시계획과장 : 최진석 ☎2133-8305 용산공원전략팀장 : 홍현탁 ☎8450 담당 : 김홍렬 ☎8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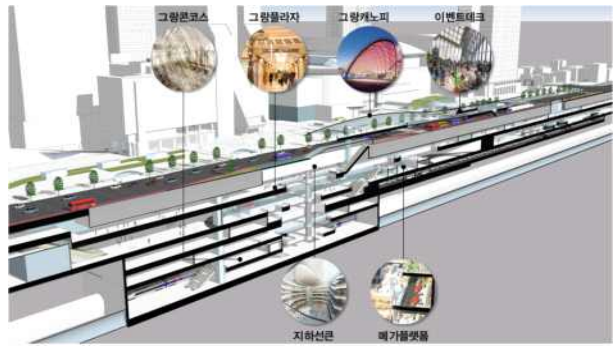
3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사업규모 : 지하 6층, 연면적 150,391㎡(연장 630m/폭 70m/깊이 51m)
※ 삼성역 남측 철도분기구간 320m 별도
- 주요시설 : 광역복합환승센터(철도, 버스, 공항터미널 등), 시민 편의공간 등
- 사업기간 : '15. ~ '23
- 총사업비 : 1조 2,389억원(국비 3,835/시비 5,696/민자 2,858억원)



<조감도 - 횡단>



<조감도 - 종단 >

○ 추진경위

- '14. 4. 1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발표
- '15. 7~'16. 1. : 관계기관 TF 회의(6회, 서울시, 국토부, 철도공단, 강남구 등)
- '15. 7.31 : 서울시장 - 국토부장관 면담
- '15.11. 6 : 행정2부시장 - 기재부 2차관 회의(한강 T/F회의)
- '16. 5. 2 :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구상 발표
- '16. 7.21 :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16.10.31 : 서울시 - 국토부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

작성 자 동남권사업조성반장 : 김용학 ☎2133-8260 조성사업팀장 : 이정화 ☎8255 담당 : 송병훈 ☎8269

□ 건의사항

건의 배경

- ◆ 본 사업은 서울·경기 동남권의 대중교통 HUB를 조성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동탄/위례신도시 등 대형개발 사업의 선제적 교통대책으로서
- ◆ 사업의 적기 추진과 통합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철도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행정절차의 적기 이행 필요
 - 철도계획 : 삼성동탄선, GTX-A 및 GTX-C(KTX 의정부 연장 포함) 등 국가철도사업과 위례신사 경전철(서울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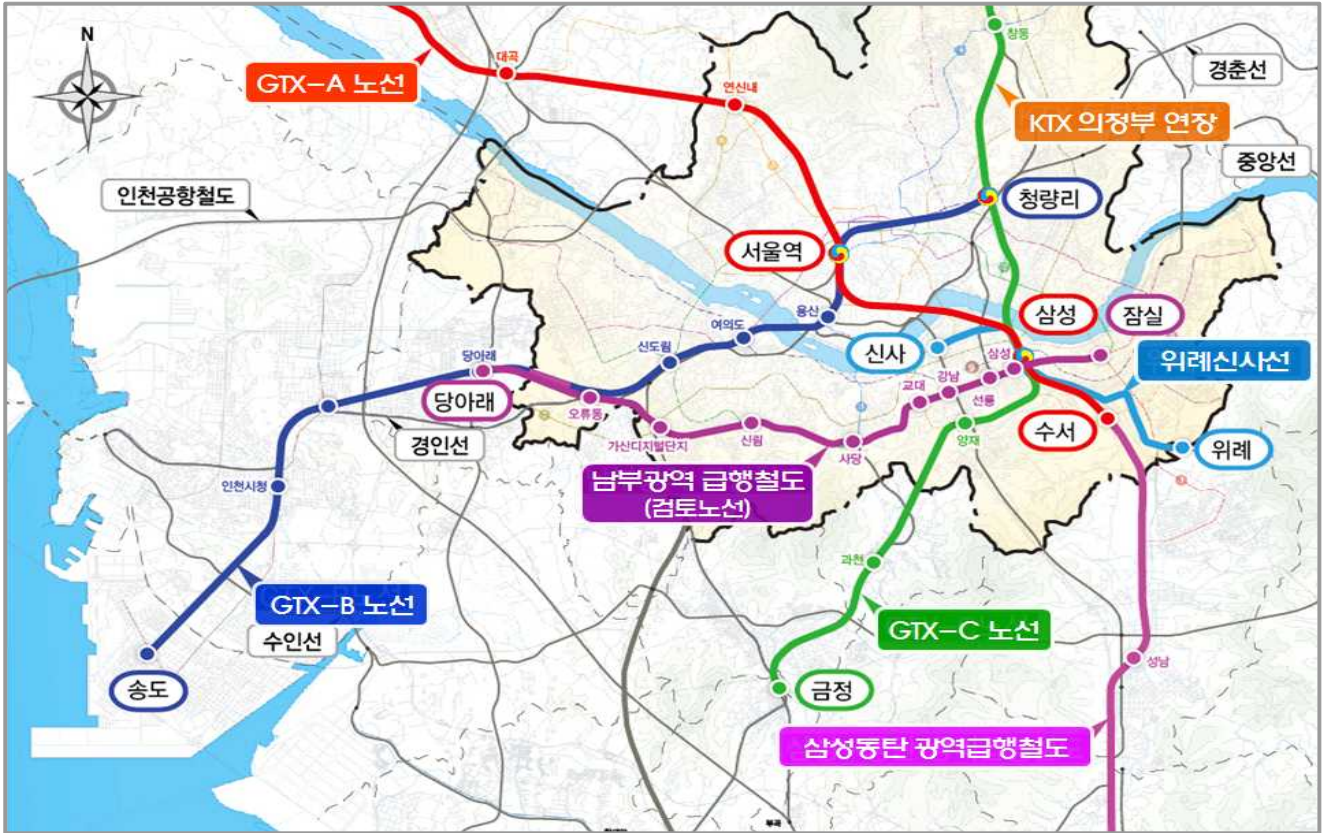
① 국가 철도사업(GTX-A·C)의 조속한 확정(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민자적격성조사 중인 GTX-A 노선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GTX-C 노선에 대한 철도계획을 '17. 5월 완료 예정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과 '17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해서는 '17년 상반기 철도사업의 확정 필요
- 국가철도사업의 확정과 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적기 국비분담분 확보가 가능

② '17년 설계착수를 위한 재정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 적기 이행 협조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 '17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 타당성조사(행자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국토부) 등 관련 절차의 '17년 상반기 이행 협조 필요

□ 철도계획



□ 추진현황 - 5개 노선 14조 194억원

사 업 명	사업구간	연장 (km)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추진 현황	비고
삼성동탄선	삼성역~동탄역	39.5	15,547	'14~'21	- 1공구 : 설계중('17.12월 착공) - 3,5공구 : 설계중('17.6월 착공) - 2,4공구 : 착공('16.10월, T/K)	재정
GTX-A	킨텍스~삼성	37.4	35,788	'17~'23	민자 적격성 조사중 ('17.상반기 완료 예정)	민자
GTX-C (KTX 의정부 연장)	의정부~금정	47.9	41,720 (3,500)	'18~'25	예비타당성조사 중('16.1~'17.12)	민자
위례신사선	위례역~신사역	14.8	14,253	'17~'25	- 민간제안(17. 1.24) - 적격성검토 준비중	민자
남부광역급행 (검토노선)	당아래~잠 실	30.3	32,886	-	검토중	민자

4 잠실운동장 일대 MICE 복합공간 조성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 제안자 : (가칭)글로벌복합미스 주식회사(한국무역협회 외 16개사)
- 면적 : 344,605㎡ (재정 69,600㎡ 제외) / BTO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 2조 4,918억원 (전액 민자) ※ '16.1월 불변가격 기준
- 건설기간 : 6년 / 운영기간 : 50년
- 시설개요

구분		연면적(㎡)	비고
시설면적 합계		1,062,354	
본 시설	전시·컨벤션	303,426	전용면적 120,000㎡
	야구장	120,651	관람석 35,000석
	스포츠 콤플렉스	57,125	관람석 11,000석
	마리나/수영장	4,769	마리나 계류시설(1,545㎡, 70척 선박)
부속시설	업무시설	217,045	뉴트레이드타워 70층
	문화·상업시설	202,150	
	숙박시설	157,188	특급호텔 600실, 비즈니스호텔 600실

□ 건의사항

건의 배경

- ◆ 본 사업은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사업으로서
- ◆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민자적격성조사의 조기완료 및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

① 민자적격성조사(PIMAC) 조기 완료(기획재정부)

-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자적격성조사(PIMAC)의 '17년 중 조기 완료

작성 자 : 동남권사업조성반장 : 김용학 ☎2133-8260 민자유치팀장 : 김일호 ☎8271 담당 : 백대열 ☎8272

②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기구 및 무역기업,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사무소 등을 국제회의시설과 하나의 단지로 배치할 경우 국제회의, 국제전시회 등 활성화 기대
-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을 위해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에 업무시설을 포함하도록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취지 및 목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에서 부대시설은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시설’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국제기구 및 무역기업,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사무소 등을 국제회의시설과 하나의 단지로 배치하여 국제회의, 국제전시회 등을 활성화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국제회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를 개정하여 부대시설에 업무시설을 포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① ~ ④ (생략)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5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기획재정부)

□ 사업개요(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807-1번지 일대
- 면 적 : 67,420m² (18필지)
- 소 유 자 : 경찰청 49,085(73%), 서울시 12,071(18%), 노원구 6,260(9%)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도봉면허시험장 주변지역 여건
 - 국토교통부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확정('16. 4.)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17. 3.)
 - ▶ 면허시험장 이전 후 역세권 복합상업용지로 개발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에 의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위상이 격상
 - 면허시험장과 인접한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4호선 연장공사 및 남양주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이 2021년 완료 예정임

□ 건의사항

건의 배경

- ◆ 현 시험장 부지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7개 광역중심 중 하나인 동북권 생활권의 전략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중심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측면에서 부적합한 시설이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저해요소로 작용됨
- ◆ 동북권의 중심지 기능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지역임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주관을 경찰청(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요구
 - 국유지 개발 및 기관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주관 요청

작성 자 동북권사업반 :한병준 ☎2133-8275 동북권발전기획팀장 : 오대중 ☎8281 담당 : 강대양 ☎8284

6 양재 R&CD혁신지구 육성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 서울시 R&D혁신역량 현황 및 실태('15년 기준)

- 서울시는 산·학·연이 고루 집적, 전국 최고 R&D역량 보유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연구개발비	13.22%	37.5%	12.93%
연구개발인력	15.78%	31.32%	20.57%
연구원	15.86%	34.4%	20.79%
연구개발조직	22.39%	21.22%	24.46%

※ 출처 : 2015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통계표), 미래창조과학부

- 양재R&CD혁신지구는 자생적 대·중소 R&D기업이 집적

- LG, KT,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연구소
- 양재2동 280여개 중소R&D기업
- 보건환경연구원, 농협식품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공공연구기관 입지
- ※ R&CD : 활발한 연구활동이 가능한 창의적 인재유입과 구현을 위한 'Connection, Company, Community, Culture'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해외 주요 국가·선도기업들은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준비수준은 45개국 중 25위
 - (미) 스마트아메리카 프로젝트, (독) 인더스트리 4.0, (일) 일본재흥전략 등
 - ※ 스위스(1), 싱가포르(2), 미국(5), 홍콩(7), 일본(12), 중국(28)
-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제도적 한계 보완 필요
 -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 제한
 - ▶ 해외대학(사립학교법 제3조), 국내대학(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유치 제한
 - 우수 대학·연구소·기업 유인 인센티브 미흡
 - ▶ 토지임대기간 30년 내외로 한정 (현 지침 : 최대 50년)

작성 자 | 경제정책과장 : 김태희 ☎ 2133-2010 | 경제정책팀장 : 최관규 ☎ 5212 | 담당 : 박은숙 ☎ 5214

□ 양재 R&CD혁신지구 육성 계획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도기지로 육성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강남구 개포동 일대
- 대지면적 : 약 380만 m^2

○ 사업내용

- 민간·공공 가용부지 활용 R&D기업 지원공간 확충
-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촉진 등 기업 지원방안 마련
-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민간의 개발·투자·일자리 창출 확대

□ 건의사항

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협조 (미래창조과학부)

-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중심의 4차산업 혁명의 선도기지로 양재 R&CD혁신지구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 현행 미래부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상('16.1.) 신규지정시 수도권외 지역중심 검토

⇒ 현행 연구개발특구 법률상 지정요건(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의 효과를 명확히 하여 유수의 외국대학 유치 근거 마련

2 우수 대학·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토지 임대기간 확대(기획재정부)

- 세계적인 4차산업 혁명 거점 조성을 위해 유인책(인센티브) 필요

※ 뉴욕 루즈벨트 아일랜드는 국제공모를 통해 세계 우수 대학·기업 유인

토지 186 m^2 를 99년 무상 임대조건, 코넬대-테크니온 이스라엘공대 선정

양재R&CD캠퍼스 조성계획

-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현 양곡도매시장
- ◇ 대지면적 : 32,095 m^2
- ◇ 조성계획(안)
 - 창업인큐에이킹 센터 : 국내외 우수 첨단성장산업 연구소·기업 유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 전시·체험·컨벤션시설 : BTB를 위한 기업 홍보관, 시민체험실
 - 복합문화공간 : 영화관, 쇼핑몰 등
- ※ 부지가 인접한 양곡유통센터, 한국화물터미널(구 파이시티) 부지 연계 개발 검토

③ 대·중소 R&D기업 지원시설 건립 (기획재정부)

○ 양재 R&CD혁신지구 내 기재부 부지 활용 기업 지원시설 건립

– 대·중소 연구소 집적지 중간에 위치하여 협업, 네트워킹 공간 조성 가능



- 위치 : 서초구 우면동 140
- 면적 : 4,268.98㎡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특이사항 : 20여가구 무단점유

④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비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이전위치 : 염곡동 329
- 사업기간 : 2017~2021
- 사업비 : 524억원

※토지매입 423억 원, 건축비 등 101억원



< 조감도(안) >

○ 부지 조성계획(안)

구분	층별	면적(㎡)	조성계획
양곡 도매 시장	지하	833	▶전기 기계실, 부대시설(식당, 매점) 등
	지상 1~2층	5,148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창고, 양곡홍보 전시관, 쌀 요리 체험관 등
	기타	6,019	▶진출입로, 화물 차량 동선 확보 등 기타 부대시설
기타 부지	1~2층	18,850	▶ 도시농업 체험 학습장 , 농수산 직판장(농산물 물류센터),

○ 국내 유일 양곡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및 역할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절차 : 매년 초 시장시설현대화사업 대상 공모 선정
- 유형 : 농안기금에서 최대 70%지원(보조금 30%, 융자 40%)

농림축산식품부 의견('17.3.7 유선협의)

- ◇ 식량정책과 : 시장이전 사유가 서울시 정책추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국비지원 부정적
- ◇ 유통정책과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한정 국비지원. 법정도매시장으로 지원대상 아님

7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및 실태

- 홍릉 내 농촌경제연구원 지방 이전('15년도) 후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서울시에서 서울바이오허브(R&D 앵커)를 조성 중에 있으며,
- 서울바이오허브를 중심으로 홍릉일대 및 서울의 연구기관, 대학·병원·기업의 핵심 역량을 결집한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음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세계적으로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생태계 조성 등 국가별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바이오 중기('16~'18) 육성 전략(미래부),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복지부) 등 발표
- 정부는 스타트업 중심의 홍릉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지방의 우수 클러스터(시험인증시설, 생산지원 등)와 연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역량 집중이 필요함

□ 우리시 추진현황 및 계획

- (1단계)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
 - 위치·규모 : 동대문구 회기로 117-3, 건물 3개동 9,564㎡
 - 주요시설 : 기업 입주공간(20), 공용연구장비실, 산학연 협력, 세미나실 등

건물명	개관시기	면적	주요시설
본관	'17.7월	3,852㎡ (지하1/지상4)	• 컨퍼런스룸, 컨설팅룸, 세미나실(5), 스타트업 살롱, 기업 입주공간(4), 운영사무실, 나눔부엌 등
신관	'18.1월	2,912㎡ (지하1/지상5)	• 개별·특수랩이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12), 공용 연구장비실, 회의실, 나눔부엌, 체력단련실 등
별관	'18.8월	2,800㎡ (지하2/지상4)	• 기업 입주공간(4), 세미나실, 시민소통·코워킹 공간 등

작성자

산업거점조성반 : 김선수 ☎2133-4820 바이오산업팀장 : 이남숙 ☎4831 담당 : 김태훈 ☎4833

－ 주요 사업내용

- Biotech 중심의 우수기업 발굴 및 최적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 입주기업 콘테스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원스톱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 비즈니스 파워 네트워킹 ‘의기투합(醫企投合)’ 운영
 - ▶ 지식공동체, 미니포럼 기반 네트워킹 비즈데이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창업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시스템 개발
 - ▶ ‘통합솔루션 상담존’ 및 All-In-One 멘토 컨설팅 서비스, Biotech 콘서트 등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바이오허브 운영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 허브 멤버십 제도 운영, 홈페이지 고도화, 컨퍼런스 개최, ‘디너 토크 데이’ 운영

○ (2단계) 서울바이오허브 내 테니스장 부지 등 공공부지 활용 개발

- － 조성규모 : 홍릉 일대 3개소, 연면적 33,000㎡
- － 주요시설 : 기업 입주공간, 인증시험 및 R&D 지원시설 등

□ 건의사항

- ① 서울바이오허브 및 KIST, 대학보육센터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홍릉 일대에 분사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별 기업 집적시설 개발 계획 지원(주변지역은 대부분 주택가로 민간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S&T 이노베이션 센터’ 건립 조속 추진(미래부)
 - ※ 현재 KIST는 뇌과학, 의공학, 로봇기술 개발 등 융·복합 연구 개발 및 기업, 대학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음(*창업센터, 창작공작소 운영)
 - * IT, NT, BT 등 38개 벤처기업이 입주중이나 협소(3,912㎡)
- ② 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형 펀드 조성·운영(보건복지부)
 - － 서울 바이오펀드 2호 조성 추진 중으로 정부 참여를 통한 초기투자 강화
 - ▶ 조성안 : 서울시 150억, 정부 150억, 민간 100억/투자·회수 : 8년
- ③ 정부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 지원 및 시험인증 시설 분소 홍릉유치 지원
 - ▶ 예시) 한국전기연구원(의료기기),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지원센터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취지 및 목적 : 해외 우수 대학 유치로 글로벌 R&CD혁신지구 육성
- 주요내용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조항 신설

현행법	개정안
(신설)	<p>(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p> <p>③국가는 내국인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에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서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p> <p>(검토 후 추가 가능)</p>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경전철분담금은 신도시 개발사업이 있는 타 시·도의 경우 개발사업자 (SH, LH)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나, 개발이 완료된 서울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확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건설보조금 국비지원 비율도 타 시·도의 경우는 60%인 반면, 서울시는 40%로 차등 적용
 - 서울시의 경우 38%(분담금 20%+지방비 18%), 타 시·도의 경우 12% 부담하게 됨
 - 서울시 도시철도는 수도권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광역철도 역할을 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지속적인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나, 현행 지원기준으로는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예산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 ※ 광역철도 건설비 분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3개노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시행·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시행이 원칙으로 일관성 유지 필요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만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로 추진한다고 내용을 부기한 반면, 위례과천선, 원종홍대선 노선은 사업시행 주체에 대해 별도 부기사항은 없음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의거 광역철도사업의 시행·운영주체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일관성 없이 추진

※ 광역철도사업 시행·운영주체 (지침 제3조)

1.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및 기존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시행·운영**
2. **기존선 개량형** : 기존의 국가철도망으로서 **국가가 시행**. 다만, 한정된 지역내에서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운영**
3. **신설형** :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시행·운영**하되, 지자체가 시행 요구시 **지자체가 시행·운영**

※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은 지자체가 시행·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4호선(진접선)은 국가가 시행중이며, 5호선(하남선)과 8호선(별내선)은 지자체(경기도)가 시행하고 있음

□ 건의사항

○ 경전철 분담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가도 공동부담하고, 서울시 국비재원분담 비율 상향 조정(40% → 60%)

- 타 시·도와 재원분담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분담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여 재정악화가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도 공동으로 부담할 것을 건의

◀ 경전철 민자사업 재원분담 조정(안) ▶

구 분	민간투자	건설 보조금				
		계	분담금	국고	지방비	
현행	50%이상	50%이내	20%	12%	18%	
조정 (안)	분담금 확보시	50%이상	50%이내	20%	18%	12%
	분담금 미확보시	50%이상	50%이내	-	30%	20%

○ 그 동안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특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로 지정·고시('16.6.27)된 3개 노선은 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해 반드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방안으로 광역철도 사업추진 필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시행시 국가가 70%, 서울시 30% 부담하나, 서울시 시행시 국가, 서울시가 각각 50%씩 부담
 - ※ 경기도 등 타 지자체 시행시 국가와 지자체간 분담비율은 70:30로서, 서울시와 타 지자체간 형평성 등 고려 필요
- 수도권 광역철도는 경기도, 인천 주민 등이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 향상과 서울 접근도로의 교통혼잡 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9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국토교통부)

동부간선도로 현황 및 실태

- 80년대 말 택지개발에 따라 중랑천(국가하천) 내 건설된 임시도로로 철거되어야 하는 시설물
-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되어 교통통제 등 교통대란 발생
- 서울과 수도권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지만 평균 통행속도 24km/h로 도시고속도로 기능 상실
- 매연, 소음, 염화칼슘 등 하천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 영향



개선방안

- 지하도로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 동부간선도로는 수도권 남북교통로로 국가와 서울시가 협업을 통해 해결 필요 <지하화 사업개요>

구 분	민자터널	재정 터널
기 능	장거리 통행(삼성~월계)	지역간 단거리 통행(군자~월릉)
규 모	▶ 대심도 터널 : 4~6차로, 13.9km ▶ 소형차, 설계속도 80km/h	▶ 지하일반도로 : 4차로, 8km, ▶ 전차종, 설계속도 70km/h
추정사업비	1조 2,553억원	7,935억원



작성 자 도로계획과장 : 하종현 ☎2133-8060 도로정책팀장 : 이승석 ☎8062 담당 : 정용훈 ☎8065

**정책 협조 및
정부 건의**

1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현황 및 실태

○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지하철의 상당수가 개통된지 20년을 경과하여 본격적으로 노후화 진행 중

－ 현재 철도교량, 지하철도터널 등 서울시 지하철 시설물의 36%는 30년 경과, 10년 후에는 54%, 20년 후에는 92%로 확대

※ 노선별 경과연수 : 1호선 42년, 2호선 36년, 3호선 31년, 4호선 31년

－ 14개 시도의 지하철 8,320량 중 2,989량(35.9%)이 차령 20년 경과

운 영 사 (단 위 : 량)	계 (비중, %)	20~24년	25~29년	30년 이상
서울메트로	1,184 (60.6%)	718	466	0
서울도시철도	834 (51.6%)	834	0	0
코레일	671 (27.1%)	624	47	0
부산교통공사	300 (34.2%)	84	132	84

○ 무임수송 손실 등 재정악화로 지하철 운영 지자체와 운영사의 노후시설 안전투자가 축소·지연되어, 추후 대형재난 발생 우려

－ 최근 5년('12~'16년)간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무임수송 손실은

15,605억 원에 육박하며, '16년 기준 운영사 당기순손실의 93% 수준

※ 고령화 가속화('16년 13.5% → '40년 32.3%)로 무임수송 손실 역시 확대 전망

－ 노후화가 심화된 1~4호선에 전체 운행중단 사고의 63%가 집중되는 등 노후화로 인한 대형재난 발생의 전조가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 및 운영사의 재정악화로 안전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음

－ 중앙정부는 지자체 운영 지하철과 달리, 코레일 운영 지하철에 대하여는 연평균 962억 원 상당의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

※ 서울시는 '05년 이후 12년간 지속적으로 무임수송 손실의 국고보조 요청 중

작성 자

교통정책과 : 이상훈 ☎2133-2210 교통재정팀장 : 박종복 ☎2232 담당 : 김선국 ☎2236
재정관리담당관 : 박영현 ☎2133-6860 재정협력팀장 : 엄기숙 ☎6879 담당 : 김민환 ☎6880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오작동 시 대형재난 발생 우려 있어, **현행 안전 기준에 맞추어 신규 건설 수준의 재투자 필요**
 -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도시철도 건설 규칙」 및 「철도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재난·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개통된 시설로 대규모 개량·보수 필요
 - 열차추돌, 차량 고장 등 노후차량 안전사고 빈발하여 노후차량 교체 시급
 - ※ '13년 이후 철도 사망사고 4건, 1~4호선 운행장애·사상사고 등 24건 발생
 -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안전보강 소요가 7조 원에 달하는 등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으로는 근본적 해결 불가, 임시방편식의 보수·보강만이 가능
-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악화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 및 지원 필요**
 - 무임수송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비용부담
 - ※ 노인 무임수송은 전두환 前대통령에 의해 지방자치 이전 중앙정부 주도로 실시
 - 무임수송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중앙정부 보전 필요
 - * '12년 기준 자살·우울증 감소,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복지재원 절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의료비 감소 등 2,270억원(유정훈) 또는 3,361억원(최진석)

□ 건의사항

- ① 대형재난 방지 및 국민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 국고보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은 40%, 그간 지원실적 없음
 - '18년 노후시설 개선 420억 원, 노후차량 교체 646억 원 등 지하철 안전투자 예산의 40% 수준의 국고보조 필요
- ②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
 - 무임수송 관련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코레일 선례, 입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법」 만 개정하는 것이 타당

- 기 제출된 3개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중 충분한 국비지원 확보, 복지부·보훈처의 무임수송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황희 의원 (안)을 기본으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 필요

※ 황희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개정안('17.3.20 황희 의원 대표 발의)

- 취지 및 목적 : 공익서비스비용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자가 부담
- 주요내용 : 공익서비스의 정의 및 비용부담, 국토교통부 장관 사전협의 규정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_____.</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p> <p>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p> <p>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의 전액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p> <p>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p> <p>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각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서비스 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 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⑤ 공익서비스 비용의 확정, 예산확보, 지급,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의3(운임감면 법률의 제정·개정시 사전 협의)</p> <p>관계 기관의 장은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 관련 입법 동향 >

법 령	제안자/제안일	주요내용	소관부처
노 인 복 지 법	이헌승의원등15인 (2016.11.17.)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보건복지부
	남인순의원등12인 (2016.11.22.)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장 애 인 복 지 법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명시	보건복지부
	이헌승의원등16인 (2016.11.17.)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남인순의원등12인 (2016.11.22.)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 한 법 률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5.18민주유공자 예 우 에 관 한 법 률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도 시 철 도 법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
	이헌승의원등15인 (2016.11.17.)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황 희 의원등 10인 (2017. 3.20.)	공익서비스비용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자가 부담	

첨 부 1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계획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사업비	총계	1,355,200	643,238	66,368	60,000	155,000	105,000	105,000	220,594	
	공채사업	440,000	440,000	-	-	-	-	-	-	
	국비	234,238	0			62,000	42,000	42,000	88,238	
	재정사업	시비	340,481	101,619	33,184	30,000	46,500	31,500	31,500	66,178
	운영기관	340,481	101,619	33,184	30,000	46,500	31,500	31,500	66,178	
① 지상역사 개선	사업비	164,983	24,983			40,000	20,000	20,000	60,000	
	물량	8역	1			2	1	1	3	
② 자취지주공개량	사업비	11,777	11,777							
	물량	1식	1식							
③ 근차지점고개량	사업비	21,247	20,091	1,156						
	물량	1식	공사	공사						
④ 분기기 개량	사업비	58,501	12,001	3,818	3,700	5,800	5,800	6,000	21,382	
	물량	389틀	81	25	26	40	40	40	137	
⑤ 레일체결장치 개량	사업비	8,651	8,651							
	물량	-	35,008							
⑥ 전차선로 개량	사업비	91,066	30,806	12,766	10,877	19,154	1,270	1,270	14,923	
	물량	404km	61	79	63	90	10	10	91	
⑦ 송배전설비 개량	사업비	66,154	23,526	10,970	4,300	4,300	1,622	8,337	13,099	
	물량	1,246.6km	372.3	174	191	90	41.40	135.8	242.1	
⑧ 변전전력설비 개량	사업비	156,641	43,139	18,806	10,105	23,399	15,822	17,337	28,033	
	물량	33개소	11	3	2	5	3	3	6	
⑨ 전기실 개량	사업비	79,269	11,762	11,446	10,283	15,331	10,898	5,023	14,526	
	물량	211개소	61	27	40	35	25	7	16	
⑩ 본선환기시설 개량	사업비	29,578	5,848		3,990		4,620	4,840	10,280	
	물량	131대	31		19		20	20	41	
⑪ 연동장치개량	사업비	17,910	17,910							
	물량	24	24							
⑫ 전선로 개량	사업비	96,562	5,590	506	6,700	24,244	17,286	11,899	30,337	
	물량	2,015km	55	설계	119	479	369	254	739	
⑬ 레도회로장치 개량	사업비	12,130	8,230	3,900						
	물량	1,773대	1,298	475대						
⑭ 자갈도상개량	사업비	83,277	19,400	3,000	8,449	9,000	9,000	12,000	22,428	
	물량	33.95km	12.1	1.05	2.8	3	3	4	8	
⑮ 터널내송환설비 설치	사업비	14,022			1,596	2,280	2,280	2,280	5,586	
	물량	61.4km			7	12	13	13	16.4	
⑯ 2호선 열차무선개량	사업비	22,774				500	6,260	16,014		
	물량	1식				1식	1식	1식		
⑰ 광전송시스템 개량	사업비	21,134				10,992	10,142			
	물량	1식				1식	1식			
⑱ 열차신호장치 개량	사업비	54,530	54,530							
	물량	68량	68							
⑲ 기자역사·차량 설비개량 등	사업비	344,994	344,994							
	물량	1식	1식							

첨 부 2

서울시 노후 전동차 현황 및 신규차량 구매계획

전동차 보유 및 연도별 도입 현황

○ 보유현황 : 1,954량(평균사용연수 16년/'89~'10년 도입)

도입년도	차령(년)	도입량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기대수명
합 계		1,954량	160	834	490	470	
장기(20년 이상)사용차량		1,184량	64	500	150	470	
평균사용연수		16.9년	19.4	17.3	11.3	21.2	
1989년	26	142량	64	78			2014년
1990년	25	126량		67	59		2015년
1991년	24	198량		175	23		2016년
1992년	23	134량		80	54		2017년
1993년	22	202량		60	14	128	2018년
1994년	21	310량		20		290	2019년
1995년	20	72량		20		52	2020년
소 계		770량	96	334	340		
1998년	17	20량	20				향후 교체
1999년	16	40량	40				"
2002년	13	36량	36				"
2005년	10	54량		54			"
2007년	8	70량		70			"
2008년	7	210량		210			"
2009년	6	270량			270		"
2010년	5	70량			70		"

신규 전동차 구매사업 세부 추진일정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구 매 량 (620량)				50량	150량	110량	174량	86량	50량
1차 사업 (2호선 200량)	발주/계약	설계/제작	제작/시험	도입	도입				
2차 사업 (2호선 224량)			발주준비	발주/설계	제작/시험	도입	도입		
3차 사업 (2,3호선 196량)						도입	도입	도입	도입
					발주/계약	설계/제작	60량	86량	50량

※ 전동차 설계 · 제작 : 30개월 이상 소요(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 등)

□ **국비지원 근거 : 도시철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법 】

제2조(정의)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4조의 별표 1에 도시철도 건설 사업 국고 보조 기준 보조율

사 업	기준 보조율(%)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현황 및 실태

- `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주도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 `10년 5·24조치와 `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어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도 급속히 축소됨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이 정치적 제약**을 받음.

입법·국가 정책화 필요성

-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유연히 참여하고, 남북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동질성 회복과 통일비용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음

건의사항

- ①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의 절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② 지자체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는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특례)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 1호~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8. (생략) 〈신설〉	제8조(기금의 용도) ----- ----- 1. ~ 8. (현행과 같음) 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3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기 및 경영평가 개선 (행정자치부)

□ 현황 및 실태

-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불이익 처분 불가피
 - 성과연봉제 권고안('16. 5.)에 따라 '16년 도입 강행, 미도입 기관에는 패널티 적용
 - * 성과연봉 미도입 지방공기업 패널티 불이익 처분 : '17.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3점 감점

⇒ '경영평가 권한'과 '예산편성기준'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경영권 및 지자체 자율권 침해

- **【성과연봉제】** 중앙정부의 도입강행에 따른 근로자 집단반발로 사회적 갈등 초래
 -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따른 근로자 집단반발

- 1) 근로기준법 제94조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 2) 현재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류중
 -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2016카합 50368, '17.1.31)

- **【경영평가】**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자치권 침해 및 재정부담가중
 - 평가주체 : 행정자치부(141개 - 광역 46(공사 34, 공단 12), 기초 95(공사 24, 공단 71))
 - * '15년 이전 - 광역지자체 공기업(행자부), 기초지자체 공사·공단(광역지자체) ⇒ 2016년 - 행자부로 평가일원화
 - 재정부담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자체, 공기업), 만족도평가(해당공기업) 등

- * 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 2016년부터 경영평가 일원화 등의 명목으로 **출연금 신설**
- 2) 2017년 경영평가 비용추계 : 357백만원 (출연금 290백만원, 만족도 67백만원)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① 성과연봉제 : 성과연봉제 폐기, 법 강화

- 성과연봉제와 같은 임금체계의 변경은 노사간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국가는 노동개혁 미명하에 근로자의 임금 삭감 및 경영평가 불이익을 앞세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음

작성 자 공기업담당관 : 박진영 ☎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 김숙희 ☎677 담당 : 차미영 ☎6772

- 국가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감독해야 하는 국가가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것은 분명한 헌법 위반 행위**라 할 것임.
- 특히,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사회통합과 화합을 도모해야할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바, **반드시 ‘성과연봉제’는 폐기** 되어야 함.
- 나아가, 이러한 국가의 일방적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세계적인 기업들도 **성과연봉제를 점차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GM의 경우 2003년 모든 사무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가 임금격차 증가 및 협업부족으로 2014년 4월 다시 연공급제로 전환
-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을 1~5등급으로 나눈 후 최하등급직원을 내보내는 제도가 있었으나, 조직내 유능한 직원과 함께 일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로 2013년 11월 폐지
-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기존 연간 8만 시간을 성과 평가에 소요, 구성원 간 협력 저하 및 높은 이직률 등 문제로 2012년 전통적인 성과제 폐지
- 글로벌 컨설팅사 딜로이트가 기업 1,70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는 이미 성과관리제를 수정했거나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절반이 넘는 58%의 기업은 성과관리제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

② 경영평가제도

- 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을 평가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하여 ‘성과연봉제’ 강행과 같은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평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관하여야 함.
 - 특히, 지방공기업을 경영평가를 이유로 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출연금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재원이 국가의 정책재원으로 악용되고 있음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침해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이 명시되어 지자체 경영평가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3조에 따라 지자체는 설립·감독 책임이 있는 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며,
 - 특히,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의 통합적 관리차원에서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은 반드시 필요

* <현행>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행자부), 지방출자출연법 - 출자·출연기관(지자체)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제도의 한계
 - 지역의 특수성 등 행정환경, 주민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수요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공기업을 획일화된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문제가 있는 바,
 - 공공성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복지증진 공헌도 등을 반영하여 지역단위 평가가 타당함.

4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정부 추진

(국가보훈처)

□ 현황 및 실태

-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3.1운동 100주년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뜻깊은 해를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기념사업 추진 필요
 - 기념시설 건립, 조형물 설치,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금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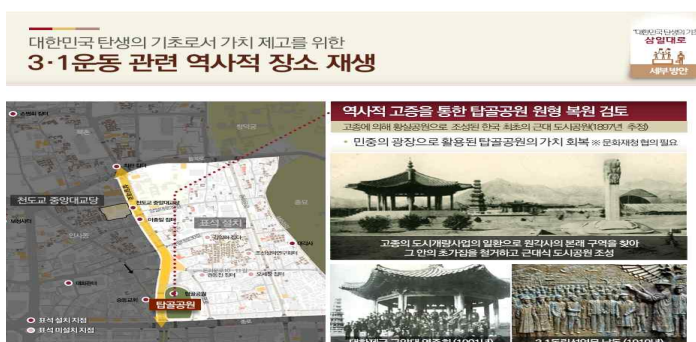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금년부터 서울시는 3.1운동·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을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근간인 3.1운동 100주년이라는 민족사적인 해라 백년대계의 국가발전과 민족통합으로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① 탑골공원 인근부지에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 탑골공원 북문 쪽에 위치한 기재부 소유 부지를 활용,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낙원동 213-1번지 외 7필지) 무상양여 또는 교환, 서울시 건축비 부담
 - ▶ 최초의 근대 도시공원이자 3.1독립선언문이 낭독된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삼일대로 주변 3.1운동 관련 거점들과 연계하여 3.1운동 기념 대표 공간 조성



작성 자 복지정책과 : 신종우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조영창 ☎7312 담당 : 빈재석 ☎7313

②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앙정부 차원의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강화 정책마련

-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서울시립대 독립유공자 후손의 시립대 등록금 면제 범위확대를 전국 국공립대학으로 확대 요청(현재 : 2대손 ⇒ 변경 : 5대손)
-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할 후손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전국의 독립유공자의 묘소나 가옥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통해 환경 개선 공사 지원
- 전국단위의 독립유공자 후손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개선을 위한 용역 실시

③ 3.1운동 100주년·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대형 기념 조형물 설치 건의

- 프랑스 파리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설치,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설치되었음
- 우리나라도 3.1운동과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의 대형 기념 조형물 설치 필요 ※ 파급력을 감안할 때 서울지역에 우선 설치 검토

④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민과 학생 대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과
관련된 교육강화

-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학습프로그램 개설·운영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 취지 및 목적

-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 교육지원 범위가 자녀와 손자녀로 한정되어 있음
- 독립유공자는 일제강점기(1910~1945) 동안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현 시점에서 손자녀는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상태임. 따라서 독립유공자 후손교육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

○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후손 교육지원 대상자를 2대손에서 5대손까지로 확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제15조(교육지원) ① 동일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5대손까지

붙임	서울시 3.1운동 100주년·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 내역
----	------------------------------------

□ 3개 분야 15개 사업, 총 113억원

구분	사업명 및 사업내용	'17년 예산
	합계	113억
기념 시설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역사문화재과) - 서대문 구의회 부지에 임정 기념관 건립을 통한 독립운동 유적 클러스터 조성	70억
	○ 안국역 항일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 (교통정책과) - 인사동 및 북촌 관광객, 지하철 이용객에게 항일 독립운동 역사교육 체험공간으로 활용	20억
	○ 독립운동가 추모를 위한 '만인보의 방' 설치 운영 (서울도서관) - 고은 시인 만인보 시집에 언급된 독립운동가들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기념공간 설치	3억
	○ 100주년기념 3.1운동 대표가로 조성(역사도심재생과) - 탑골공원 등 삼일대로 주변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3.1운동 대표가로 조성	2억
	○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역사도심재생과) - 탑골공원 북동측 기획재정부 부지(구)재활용센터부지에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
	○ 남산 '국치의 길' 조성사업 : 일제 남산침탈 흔적을 설명하는 표석 설치 (공공재생과)	0.5억
	○ 딜쿠샤 복원 : 3·1 운동을 최초로 알린 테일러의 가옥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복원 (역사문화재과)	2.5억
시민 참여 및 교육	○ 3·1운동 100주년 310명 시민위원회 및 33인 운영위원회 구성 (복지정책과) - 시민과 전문가들의 협치를 통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발굴 및 추진	3억
	○ 서울시민 독립군 학교 개설 및 체험학습 운영 (복지정책과) -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항일 운동 강의 및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2억
	○ 여의도 공원 C-47기 활용 독립운동 교육 프로그램 확대 (복지정책과) - 임시정부 요원 환국시 사용했던 C-47 수송기를 활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운영	2억
	○ 2017년 나라사랑 교육 (복지정책과)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1억
	○ 바른역사 아카데미 (복지정책과) - 민족정기 선양, 애국정신 함양,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지원	2억
	○ 대한민국 100년 뿌리알기 강좌 개설 (평생교육정책관) - 기존 「시민대학」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 진행	1억
예우 강화	○ 독립운동가 묘지 등 환경개선 지원 (복지정책과) - 독립 운동가들의 묘소 및 가옥 등의 실태를 파악 후 노후된 시설에 대해 개선 공사 지원	1.5억
	○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시립대 등록금 면제 확대 (서울시립대) - 현재 : 독립운동 유공자 2대손 ➔ 확대 : 독립운동 유공자 5대손	1억
	○ 독립 운동가 후손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복지정책과)	1.5억

5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국가보훈처)

□ 건립 개요

- 부 지 :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
【소재지】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면적】 5,695㎡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5,000~6,000㎡)
【건립예산】 신축 : 695억 / 리모델링 : 342억

- 서울시 추진 현황 -

- 기념관 건립 전제조건인 구의회 이전 '17.11월까지 완료 예정
- 청사 이전비(220억) 전액 시가 부담기로 결정하고, 150억 집행 완료

□ 기념관 건립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임시정부의 합법적 위상에 걸맞는 '국립'시설로 중앙정부가 건립·운영
-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개관

【중앙정부(기재부·국가보훈처) 입장】

- 1] 건립주체가 될 민간단체를 보훈처에 등록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건립 추진
- 2] 건립부지는 시가 건립주체가 되는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제공
임정기념관은 국가사업, 국립시설이 아니므로 부지의 국·시유지 교환은 불가
- 3] 기념관 건립 후, 국가와 서울시가 각각 운영비의 50%씩 부담

□ 건의사항

- ① 시유지인 기념관 건립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 하여 국유화 추진
- 시유지에 국립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법적 장애요인 제거
-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촉구

작성 자 역사문화재과 : 정상훈 ☎2133-2610 역사문화재연구팀장 : 허대영 ☎2629 담당 : 정빛샘 ☎2630

6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자치부)

□ 현황 및 실태

- 국제사회의 세계화 흐름에 따른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중요성 증대**
 - 정부와 정부 간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개념 도입
 - ▶ 「공공외교법」 제정 : 2016. 2. 3.
- 국제기구 유치 등 공공외교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강조**
 - 「공공외교법」에서는 지자체의 ‘공공 외교활동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의무 규정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
 - 12.11월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 유치현황과 추가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처·지자체간 유치프로세스 공유 및 업무협력 필요성 제시
 - ▶ 국제기구가 집결되어 있는 제네바, 비엔나, 방콕 등은 모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력과 지자체의 공동노력에 기인함을 적시
- **지자체는 이러한 국가정책에도 부합되는 국제기구 유치 등 공공외교를 적극 시행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미비로 시행에 어려움**
 -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국제적 위상이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 오히려 국제기구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 등 부처간 엇박자로 추진동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

‘17. 3월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 감사원은, 서울시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등 국제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며 “주의요구” 통보 ※ ‘16년도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시 지적

작 성 자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순기 ☎2133-5300 국제기구팀장 : 남궁늘 ☎5273 담당 : 이동준 ☎5304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국제기구 유치, 교류·협력 활성화는 국가(중앙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추진을 제약하는 입법미비 개선 필요**
 -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국제기구 유치 등 **공공외교 업무 특성을 고려한 법 해석기준 정비 필요**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음’ 규정을 국제기구 관련 업무특성 고려 없이 일률 적용
 - 서울시는 국제기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였으나,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법령’의 범위 해석에 있어 ‘자치법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나치게 제한적 해석
 -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14년도 제정)

□ 건의사항

- ①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 또는 현행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개선
 - ▶ 예) 「공공외교법」상 지자체가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 등
- ② **업무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재정립 등**
 - 행자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에서 ‘법령’의 범위에 자치법규(조례, 규칙) 포함
 - ▶ 국제기구 유치 등 정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석기준 개선
- ③ **지자체의 국제기구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편성목(310)/통계목(02) 국제부담금 지원 대상에 ‘지자체 유치 및 협력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방안 등

<2017년 기준>

연번	국제기구	지원내용	근무자 (내/외국인)	기구설립목적	
1	정부간 기구	유엔인권 사무소(서울)	운영비(임대료)	6(3/3)	인권 증진 및 조정,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등
2		유니세프 서울사무소	운영비(임대료)	3(3/0)	국제아동구호
3		세계은행 서울연락사무소	운영비(임대료)	4(4/0)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경제적 지원
4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비(임대료)	12(6/6)	아시아 헌법재판소 간 정보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5	준정부 간 기구	세계도시전자 정부협의체	운영비, 사업비	10(5/5)	세계도시간 전자정부 국제교류 협력 강화
6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비, 사업비	10(3/7)	지구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의 가시적 성과 달성 등
7		시티넷	운영비,사업비	10(5/5)	아·태 지역의 개별도시 및 기관을 연계한 다자간 협력
8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운영비,사업비	5(4/1)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간 국제적 연대를 통한 해결 등
9		아시아-유럽간 국제연구망	운영비(임대료)	15(15/0)	유럽-아시아간 초고속 국제연구개발망(TEIN)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10	국제 비영리 단체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본부	운영비(임대료)	3(3/0)	아·태 지역 법률 네트워크 지원 및 관련 회의 진행
11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운영비(임대료)	15(14/1)	생태계보전과 공해방지, 자연자원의 지속적 이용 추진
12		IIPAC 조정중재센터	운영비(임대료)	3(3/0)	조정중재전문가교육 실시 등
13		유엔협회 세계연맹	운영비(임대료)	15(15/0)	국제협력 및 UN홍보 등
14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비(임대료)	7(7/0)	국제중재시설 인프라 역할로 국제중재사건 유치
15		칼폴라니연구소	운영비(임대료)	3(3/0)	사회적경제 연구

7 대도시권 간선도로 개선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 현황 및 실태

- 도로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혼잡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비(국비)를 지원토록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광역시의 동지역에 한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의 경우, 2,5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인구들이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도로로 교통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서울시내 도로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현재 서울시는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17년 예산 1,274억원을 시비전액으로 편성하여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투자예산	
			'16년	'17년
1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규모(사업비) : 연결로 설치 4개소(431억원) 기능 : 내부순환로 연결도로	30	57
2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규모(사업비) : 연결로 L=1,383m(474억원) 기능 : 올림픽대로 연결도로	12	50
3	신림~봉천터널	규모(사업비) : 폭4차로, L=5.58km(5,507억원) 기능 : 남부순환로 우회도로	137	256
4	서울제물포터널	규모(사업비) : 폭4차로, L=7.53km(1,096억원) 기능 : 국회대로 우회, 올림픽대로 연결	100	270
5	월드컵대교 건설	규모(사업비) : 폭6차로 L=1,980m(2,589억원) 기능 : 서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연결	270	350
6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규모(사업비) : 폭4차로, L=453m(685억원) 기능 : 가마산로 우회, 서울디지털단지 연결	90	160
7	서초역~방배로간 도로	규모(사업비) : 폭6차로 L=1,280m(1,648억원) 기능 : 남부순환로 우회	170	131
계			809	1,274

작성자

도로계획과장 : 하중현 ☎2133-8060 도로정책팀장 : 이승석 ☎8062 담당 : 정용훈 ☎8065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광역시로 한정하는 것은 모순**
 - 교통혼잡도로 통행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하는 것은 서울시민 뿐만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을 주요 경제·사회의 중심지로 생활하고, 서울 주요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요자들에게 교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임.
 - ※ 2015년 서울 교통혼잡비용 :9조 4,353억원(광역시 혼잡비용의 4.8배)
- 서울시는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연간 1,000억원 가량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나, 재정여건 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17.1.17 개정된 **도로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지원기준도 개정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교통혼잡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개정된 만큼 광역시에 한정된 지원기준도 개정되어야함.

□ 건의사항

-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市)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도로**'로 확대 건의
 - 광역시 동지역에 있는 도로 →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있는 도로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도로법 시행령 제6조 2항
- 취지 및 목적
 - 대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개선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도로로 확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u>광역시의 동(洞)지역</u> 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 ③ ~ ④ (생략)

〈 관련 입법 동향 〉

- ▷ 2016 11. 23. 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3808)
 - 발의자 : 김경수, 권철승, 김영춘, 김정우,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서형수, 손혜원, 어기구,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이정미, 조배숙, 황주홍 의원(16인)
 - 발의내용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은 통행속도, 교통체증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값(이하 이 조에서 “교통혼잡도”라 한다)이 매우 높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으로 확대

□ 서울대공원 동물원 현황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일원
 - 규 모 : 2,462천 m^2
 -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 동물보유현황 : 292종 3,067수 (동물사 : 89개동 30,819 m^2)
 - 천연기념물 : 19종 164수, 멸종위기종 : 128종 1,099종
 - 입 장 객 : 연평균 270만명
 - 기 능
 - 멸종위기종 복원, 종 다양성 연구 등 국가 대표 동물원 역할 수행
 - 압류동물 위탁사육 등 정부역할의 일부를 서울대공원이 수행
- ※ 해외 국립동물원 현황 : 미국, 영국, 호주, 남아공, 말레이시아, 인도, 스리랑카, 칠레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역사〉

- ▶ 국가에서 관리하던 창경원 동물원이 1984년 서울대공원이 개원하면서 이전되어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운영관리 중
 - 1909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창경원 동물원을 정부(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였으며,
 - 1970년대 관람객 증가 및 동물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동물사 증축 및 신규 동물을 수용하려 하였으나, 창경궁이 중요한 문화재이고 사적지라는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창경원 동물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형성
 -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72년에 북한산 뒤 송추계곡 온릉에 국립동물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984년 서울대공원 개원으로 창경원 동물원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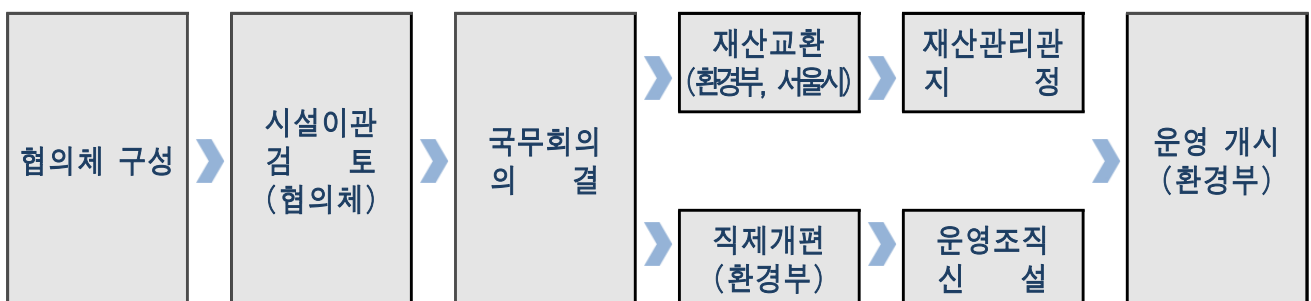
□ 입법·국가정책화 필요성

- **동물자원의 보전, 관리, 연구 등 생물자원 정책은 국가 업무(환경부)임**
 - 국가 관리 시설인 창경원 동물원을 서울대공원(동물원)으로 이전(1984)
 - 현재까지 동물자원의 보존, 복원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나, 전문인력 부족 및 재정 등의 문제로 원활한 기능 수행 곤란
 - **국가 운영을 통한 전문성 극대화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 필요**
 - 환경부 산하 관련기관(국립생태원 등)과 동물원의 연계를 통하여 종 보전, 멸종 위기종 복원 등에 대한 전문인력 투입 및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수행 필요
 - **우리나라 토종동물 보존을 위한 국가 주도적 차원의 역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 중인 토종동물이 거의 없어 해외로부터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
 - CITES 등 국가적 규제에 따라 지자체 수준으로는 해외 서식 중인 우리나라 토종동물(호랑이, 스라소니 등) 도입에 제한
- ※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 건의사항

- ① 환경부의 정부 정책과제로서 “서울동물원 국립화” 채택 건의
- ② 환경부-서울시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설 이관에 대한 제반사항 논의
 - 시설 이관을 위한 국·공유 재산 처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검토
- ③ 시설 이관에 따른 운영 조직 신설 및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 이행

〈서울동물원 국립화 절차(안)〉



9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불량공중선 정비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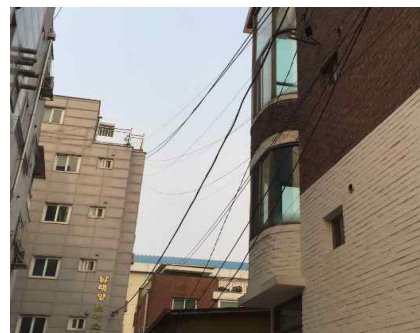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 국토해양부)

□ 현황 및 실태

- 통신사의 소극적인 정비와 사후관리 부재로 도심내 공중선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
 -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권한이 미래부에만 있어 지자체의 통신사 제재 수단 부재로 사후관리 미흡
 - 공중선은 허가대상이나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중선의 폐선방치 및 재난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 미래부 주관, 통신사 자율정비로 지난 4년간('13~'16)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정비효과 미흡
 - 통신사는 정비비용 등의 문제로 최소한의 정비만 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사 변경 시 폐선 방치 및 신규 공중선이 재난립됨



인입선의 방사난립



전주에서 직접 인입
(건물간 연결설치 미준수)



한전주 통신주 병행설치

작성 자

보도환경개선과장 : 서관석 ☎2133-8100 보도안전팀장 : 강종훈 ☎8142 담당 : 정진웅 ☎8121

□ 건의사항

① 공중선 시정명령권한 지자체 부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공중선 관리의 최일선인 지자체(자치구)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사후관리 도모
- 또한, 지자체(자치구)에서 통신사에 소요비용을 받아 공중선 정비사업을 직접 발주하고 통합 정비하는 방안 모색
- 개정(안) : 시정명령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

현 행	개 정(안)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은 _____ _____ _____

② 공중선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건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

- 공중선 점용료 부과를 위한 부과기준 마련 건의 → 폐선 제거 등 체계적 관리 도모

▷ '12년 입법추진 되었던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재추진

: 점용료 = 공시지가 × 요율 × 길이 × 기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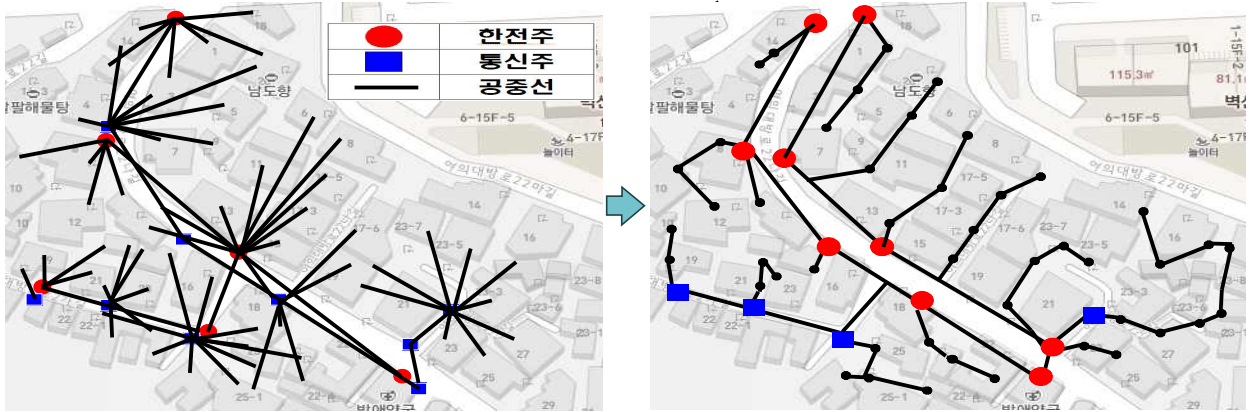
적용 예 : 우리시 공중선(지름 10mm) 1m 점용 시 : 490원

③ 인입선 설치 기준(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대책마련

- 인입선의 건물간 연결설치 준수를 위한 건물주 협의대책 마련(인센티브 지급 등)

④ 병행 설치된 한전주·KT통신주 공동이용 추진 건의

- 2기의 전주에 따로 설치된 공중선을 1기에 통합하여 정비효율 향상 도모
- 전주 공동이용 시 점용료 감면 등 유도방안 검토 요청



☞ 2기의 전주는 1기로 통합하고, 방사된 인입선은 건물간 연결설치하여 정비효율 향상

